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괄 운영

Ι.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 3 ·· 3 ·· 3 ·· 4
Π.	공통 운영사항 1. 기본계획 수립 2. 수행기관 선정 및 지정 3. 사업계획 수립 4. 참여자 모집 및 선발 5. 노인일자리 담당자・팀장・안전전담인력 운영	14 15 17 18
	6.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7. 대기자 관리 ···································	29 34 34 37
Ш.	주체별 주요역할	44 48

제2장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사업운영

1	목적 및 정의	58
	운영개요	
3.	참여자 및 수요자(수요처)	61
4.	운영방법	63

제3장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사업운영	영
	1. 목적 및 정의 ··································	76 79
제4장	민간형 사업운영	
	I. 공동체사업단 1. 목적 및 정의 2. 운영개요 3. 참여자 지위 및 의무 4. 운영방법 5. 사업단 관리 II.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1. 목적 및 정의 2. 운영개요 3. 운영방법	96 96 98 101 108 117 117
제5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I. 추진 개요 II.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 III.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위탁 IV.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 V. 기타 사항	
제6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식	

구 분 ③ 총괄운영		2024년(개정)		2025년
		업단)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	서비스의	업단)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제공 등을 목적으로 <u>하며 참여하는</u> <u>이상인</u> 사업단
		〈 노인역량활용사업 〉		〈 노인역량활용사업 〉
	유형	세부 사업내용	유형	세부 사업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보육교사 보조,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 하교 및 귀가지원, 급식 지원 등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등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등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한부모시설 등 돌봄 서비스 보조 및 지원 등 초등학교 아동 돌봄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실버장애인돌봄 서포터즈, 장애인 보호시설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장애인 이동보조및 활동보조등 시설이용 노인 서비스 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 등 노인맛춤돌봄서비스 업무보조등 시니어 금융업무지원, 소비피해예방, 취약계층교화자원, 시니어 학대패해 아동자라이,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나눔자원관리,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시니어 푸드뱀크 매니저, 어르신 건강리다 등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및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보조 및 지원 등
사업내용	공공전문 서비스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시니어 소빙안전지원, 바디안전순찰대, 시니어 안전보건 가이드, 시니어 차안지킴이, 시니어 산림복지서비스 안전지기, 에너지 품질안전 파수꾼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산재신청 안내, 공항 출입국 관리, 도서 대여, 공공정보 수집 및 구축지원, 우체국 행정업무 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국립공원 관광객 안내 자원(시니어 탐방 플러스), 시니어연금가이드, 에너지 품질안전 파수꾼, 시니어 자살예방 상담원, 노인일자리 방역 행정지원, 맑은물 지킴이, 시니어 공공의료- 복지, 서비스 가이드, 시니어 119안전센터 서포터, 농업정책가이드 등 미디어 전문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매니저, 보행로 정보수집 전문가, 시니어 교통안전 데이터 조사단	공공전문 서비스	안전예방, 시니어 취업상담, 공공기관 등 행정 업무 지원, 공공정보 수집 등 대국민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및 노인일자리 홍보 등
	노인 일자리 및 <u>노인</u> 사회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지원
	기타	•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기타	•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 공동체사업단 〉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	제공 등을 <u>이상인</u> 사 • (공동체사(운영하고자 및 사회홀	업단 수행기관) 공동체사업단을 설립한 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당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통해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기본계획 수립	• 시·도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군·구 시행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도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군·구 시행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수행기관 선정 및 지정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 전년도 점검 결과 등 결격 사유가 없고, 실적 우수 등 사업의 계속 추진이 적격한 경우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으로 재지정 가능 ※ 전년도 수행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라도 민간위탁수행기관 지정 신청 및 위탁계약 체결 절차는 준수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 전년도 점검 결과 등 결격 사유가 없고, 실적 우수 등 사업의 계속 추진이 적격한 경우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으로 재지정 가능 돌 운영안내에서 정하지 않은 수행기관 사업 위탁 관련 사항은 시·군·구별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름 (단,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는 매년 작성 필요)
사업계획 수립	공동체사업단 수행기관에서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를 노인 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 1차 심사, 시·도 2차 심사,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3차 심사 및 승인 후 사업 추진 ※(신설) 필요 시 신규사업은 3차 심사단계에서 현장점검 진행	공동체사업단 수행기관에서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를 노인 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 1차 심사, 시·도 2차 심사,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3차 심사 및 승인 후 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시·도) 및 보건복지부(한국 노인인력개발원)는 사업계획 심사 시,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적정성 확인 필요 필요 시 신규사업은 3차 심사단계에서 현장방문 진행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은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나신청서 제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서와 선발 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사고·고·구 및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기타 해당활동 관련 자격증, 장애 증빙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가 공익활동 참여 신청 시연금지급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자가공시가(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 ** (신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 가능(세부기준 위 지침 참고) 마커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 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서와 선발 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사고・구 및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장애 증빙 서류 사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가 공익활동 참여 신청 시연금지급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자가 공시가(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 ** 참여 신청자가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기유공자확인서(해당자에 한함)를 수행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함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선발점수 부여)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관련서류 및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선발점수 부여 (노인공익활동사업) 차상위 계층 여부 및 소득 인정액 점수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자격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 선발기준표에 세대구성·활동역량·참여경력 점수를 부여한 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필히 입력 (노인역량활용사업) 차상위 계층 여부 및 소득 인정액 점수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자격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 선발기준표에 활동역량(의사소통역량, 신체활동 능력, 사무역량)·공적수급 여부·세대구성·신규참여·인성역량·대인관계역량 판단점수, 유관자격증 확인 점수, 직업적경험 점수, 장애 유무* 점수를 부여한 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필히 입력 (공동체사업단) 차상위 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점수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자격정보 연계를통해 확인하고, 선발기준표에 경력·세대구성·공적 지원 수급 여부·활동역량·신규참여·장애요무*점수를 필히 입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선발 시 5점 가점 부여(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제출) ** (신설) ※ (신설)	 (선발점수 부여)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관련서류 및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선발점수 부여 (노인공익활동사업) 차상위 계층 여부 및 소득 인정액 점수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자격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 선발기준표에 세대구성・활동 역량・참여경력 점수를 부여한 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필히 입력 (노인역량활용사업) 차상위 계층 여부 및 소득 인정액, 장애 유무* 점수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필히 입력 (노인역량활용사업) 차상위 계층 여부 및 소득 인정액, 장애 유무* 점수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자격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 선발기준표에 활동역량(의사소통역량, 신체활동 능력, 시무역량)・ 공적수급 여부・세대구성・신규참여・인성역량・대인관계역량 판단점수, 유관자격증 확인 점수, 직업적 경험 점수, 취업지원 대상자** 점수를 부여한 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필히 입력 (공동체사업단) 차상위 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 장애 유무* 점수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자격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하고, 선발기준표에 경력・세대구성・공적 지원 수급 여부・활동역량・신규참여・취업지원 대상자** 점수를 필히 입력*「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선발 시 5점 가점 부여(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자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시가점 비율에 따라 10점 또는 5점 가점을 부여하되,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보여하되,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보여되었지만 전용(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선발된 참여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 불가 ※ 도급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사업단 신청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해당 없음
	•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선발기준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 - 선발기준표 점수의 고득점자(선발대상자)가 활동 지역과의 거리,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참여가 어려워 후순위자를 선발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고득점자 미선발 사유 입력 등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성과관리에 반영 ※ (신설)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선발기준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 선발기준표 점수의 고득점자(선발대상자)가 활동 지역과의 거리,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참여가 어려워 후순위자를 선발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고득점자 미선발 사유 입력 등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성과관리에 반영 ※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여부 (참여, 대기, 탈락 등)를 결정하여 통지, 단,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해 전년도에 조기 신청하는 경우 통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TE				
		표) 노인공익활동사업	(선발기준	
	- 노인공익활	발동사업 	- 노인공익활	활동사업
	고려요소 합 계	변경내용	고려요소	변경내용
		• 100(105)	합계	• 100 <u>(110)</u> • <u>7 E+(0)</u>
	세대구성	<u>・ 신규</u>	세대구성	(가족이 아닌 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
	폐지수집 노인 가점(5점)	_* (5점)	폐지수집 노인 가점(5점)	• 폐지수집 노인(5) 명시 *'24년 지자체에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 조사 명단에 포함된 폐지노인 기준, 수행기관 에서 지체 발굴한 경우 지자체 보고 후 전수 조사 명단에 등록하여 가점 부여
	- 노인역량홀	용사업	- 노인역량홀	용사업
	고려요소	변경내용	고려요소	변경내용
	합 계	• 100(120)	합 계	• 100(130)
	세대구성	 경제적 능력 無 동거 경제적 능력 有 동거 등 신규 	세대구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 기타(가족이 아닌 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
	장애인 채용 가점(5점)	• <u>장애 有</u> • 장애 無	장애인 채용 가점(5점)	• <u>장애인</u> • 해당없음
	신규	<u> </u>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최대 10점)	• 취업지원 대상자(10) 신설
	폐지수집 노인 가점(5점)	<u>* (5점)</u>	폐지수집 노인 가점(5점)	• 폐지수집 노인(5) 명시 *'24년 지자체에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 조사 명단에 포함된 폐지노인 기준, 수행기관 에서 지체 발굴한 경우 지자체 보고 후 전수조 사 명단에 등록하여 기점 부여
	- 공동체사업	 단	- 공동체사업	
	고려요소	변경내용	고려요소	변경내용
	합 계	• 100 <u>(105)</u>	합 계	• (근로)115 • (도급)110
	세대구성	• 신교	세대구성	• 기타(가족이 아닌 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
	장애인 채용 가점	 장애인 채용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국가보훈 등록증 사본 등 수행기관 담당자 제출 	장애인 채용 가점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u>시본, 국가</u> 유공자 시본 등 등 수행기만 담당자 제출
	신규		취업지원 대상자 <u>가점</u> (최대 10점)	• 취업지원 대상자(10) 신설 * <u>도급사업단 참여신청자 해당없음</u>
	폐지수집 노인 가점(5점)	* <u>(5점)</u>	폐지수집 노인 가점(5점)	페지수집 노인(5) 명시 *'24년 지자체에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 조사 명단에 포함된 폐지노인 기준, 수행기관 에서 지체 발굴한 경우 지자체 보고 후 전수 조사 명단에 등록하여 가점 부여
	• 수행능력과 신처	활동 능력의 선발점수가 0점인 경우 사업참여 제한	2) 활동역: 사업함 3) 공동체 신청자 4) 취업지: 장애인 10점)(※ 취업지 (보훈 등 중상 취업지 ※ 취업지	수가 동점인 경우, 신규 참여자를 우선 선발 량 중 수행능력과 산체활동능력의 점수가 0점인 경우 여 제한 가능 사업단 중 "도급" 계약으로 운영되는 사업단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해당 없음 원 대상자 가점 비율에 따라 10점, 5점 부여하되, 가점 중복 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한 적용(최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 원대상자: 가점 비율이 확인되는 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명서 제출(국가유공지확인원, 국가보훈등록증 사서류 인정불가) 미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선발된 참여자 수는 정인원의 30% 초과불가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지원기준) 12개월, 월 <u>2,061천원</u> 이내에서 시·도별 탄력 운영 ** 1인당 <u>2,787천원</u> 초과 집행 불가, 퇴직자 등으로 인한 예산잔액 발생 시 반납	시·도별 탄력 운영
	(기타사항) - 각시·도에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단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는 기초 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공통교육-기본과정」을 반드시이수 ※ (신규) ※ (신규)	(기타사항) 각시·도에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기초 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공통교육(기본과정 또는 경력과정)을 반드시 이수 산규 담당자는 기본과정 이수, 전년도 기본과정 수료자는 경력과정 이수 권장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택교육 권고
노인일자리 담당자 운영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배치기준 -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노인 150명당 1명 배치- 공동체사업단: 참여노인 120명당 1명 배치-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노인 100명당 1명 배치-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지자체 보조): 참여노인 100명당 1명 우선 배치 ※ 시·군·구의 경우는 시·군·구에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1명씩 배치하여 참여자 선정 기초자료 제공및 지역 내 사업 총괄자원 기능 • (자격 및 근무조건) - (자격)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공개모집)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채용 시 자격조건 등부가기준은 지자체및 수행기관에서 별도 적용 가능 ※ 필요시 공개모집 절차 생략 가능(무기계약직 전환 등)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 담당자 배치 기준 -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노인 150명당 1명 배치 - 공동체사업단: 참여노인 120명당 1명 배치 -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노인 100명당 1명 배치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지자체 보조): 참여노인 100명당 1명 우선 배치 ※ 시·군·구의 경우는 지방비 자부담 등으로 시·군·구에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1명씩 배치하여 참여자 선정 기초자료 제공 및 지역 내 사업 총괄지원 가능 • (자격 및 근무조건) - (자격)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공개모집) ※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 시 자격조건 등 부가기준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서 별도 적용 가능 ※ 무기계약적 및 정규적 등 전환 시 공개모집 절차 생략 가능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공통교육-기본과정 개요 노인일자리 담당자 공통교육 개요 □ 교육기간 : 당해 연도 1.1 ~ 12.31 □ 교육기간 : 2024.1.1.~2024.12.31 □ 교육대상 : 2024년도 노인일자리 담당자 □ 교육대상 : 당해 연도 노인일자리 담당자 (시도 및 수행기관)* (시도 및 수행기관)* * 정보시스템의 '교육 사용자 유형'에 '담당자'로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의 '교육 사용자 유형'에 '담당자'로 등록된 경우, 공통교육(기본과정 또는 등록된 경우, 「공통교육-기본과정」이수 필수 경력과정) 이수 필수 * 신규 담당자 및 전년도 기본과정 마수료자는 기본과정 이수. 그 외 담당자는 경력과정 이수 권장 □ 교육운영 □ 교육운영 - 교육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교육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교육내용 : 노인일자리 업무수행을 위한 - 교육내용 : 노인일자리 업무수행을 위한 공통교육 공통교육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필요시 일부 과정은 대면 교육으로 운영 * 필요시 일부 과정은 대면 교육으로 운영 □ 과정개요 □ 과정개요 - 공통교육-기본과정 교과명 차시 교과명 차시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3차시 3차시 의 이해 의 이해 사업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 사업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 4차시 4차시 이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이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5차시 5차시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 노인의 이해 4차시 • 노인의 이해 4차시 참여자 • 노인 <u>상담실무</u> 참여자 • 노인 상담실무 3차시 3차시 이해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이해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3차시 3차시 • 근로기준법의 이해 4차시 • 근로기준법의 이해 4차시 6차시 • 노인일자리사업의 인사노무 • 노인일자리사업의 인사노무 6차시 • 수행기관 안전사고 예방교육(기본) 3차시 직무 • 안전사고 예방교육 4차시 지므 식무 이해 • 수행기관 안전사고 예방교육(심화) •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3차시 이해 •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 운영 2차시 4차시 • 청렴교육 3차시 • 청렴교육 3차시 •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서 작성법 3차시 •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서 작성법 3차시 총 총 소계 소계 48차시 44차시 - (신설) - 공통교육-경력과정 차시 교과명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3차시 공통 운영 실제 3차시 노인공익활동사업 운영 실제 경력 • 노인역량활용사업 운영 실제 • 공동체사업단 운영 실제 3차시 과정 3차시 • 재무회계 및 보조금관리 에센스 3차시 • 안전보건관리 에센스 <u>6차시</u> 총_ <u>소계</u> 21차시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수행기관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 인건비, 퇴직적립금(기본급 기준), 고용부담금 예산은 국비 지원	「기간제법」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 기간이
	• (신규)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고용승계)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수행기관에 고용된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함
사업단 팀장 운영	<u>전담인력)</u> 의 현장업무 지원·보조	(수행업무) - 노인일자리 실무자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현장 업무 지원·보조 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 안내, 스트레칭 및 참여자 건강상태 체크, 활동 중 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 지원 등 노인공익활동사업 중 실외 활동에 한해 활동 전(매일) 참여자 사전안전점검회의 실시, 월 1회 이상 수행기관에 결과보고서(회의록)를 제출하고 시급한 개선사항은 수행기관에 즉시 개선 요구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시업에 중복 참여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활동(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활동(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노인일자리를 포함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 <u>(신설)</u>	(기타) 시도, 시군구는 매년 상·하반기의 점검 결과 (부정수급 및 환수실적 등)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 필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상반기 점검 결과는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 (e나라도움)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 (개인정보보호 교육)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 ※ 개인정보보호 <u>종합포털</u> (http://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 교육 교재, 전문 강사 등을 활용	• (개인정보보호 교육)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배움터 (https://edu.privacy.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 교육 교재, 전문 강사 등을 활용
	• <u>(신설)</u> • <u>(신설)</u>	(추가소명) 소명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당초 소명 요청 의도와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소명 요청 (불성실 소명 조치) 추가소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개발원은 해당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기관을 관할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
	〈 개인정보 오·남용 표준 징계 기준 〉 ※ 비고	〈 개인정보 오·남용 표준 징계 기준 〉 ※ 비고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개인정보 고의 유출·부정 이용으로서 각종 범죄 약용 등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고의 유출·부정 이용으로서 각종 범죄 약용 등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열람, 무단 이용, 유출한 경우	다.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열람, 무단 이용, 유출한 경우
	3.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미치는 영향, 수사 중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功績), 뉘우치는 정도,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계 종류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3.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미치는 영향, 수사 중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功績), 뉘우치는 정도,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계 종류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4. 징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된 경우 행정처분(주의, 경고)을 권고하여야 한다.	(삭제)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예산운영	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 원칙 ※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지급 확인서 구비 ※ (신설)	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 원칙 ※ 금융거래가 불기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지급 확인서 구비 ※ 수행기만은 현금 지급 현황을 공문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보고, 추후 변동 사항은 월 단위로 보고
주체별 주요역할 - 지방자치단체	《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 *** *** *** *** ** ** ** ** ** ** **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 *** *** *** ** ** ** ** ** ** **
	참여자 안전사고 조치 관리 누락 사망 및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사망 기관 및 중대한 사고 발생현황 보고서 미제출 경고 (신규)	참여자 안전사고 조치 관리 누락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 미제출 경고 중대한 사고 조사 시 활동현장 모니터링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위험성 평가 미실시 등 참여자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 <u>(신설)</u>	※ 수행기관은 수요처가 서비스 신청 시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별 주요역할 - 수행기관 (시·군·구 포함)	• 수행기관(시·군·구 포함) 비치대장 (중략) - 해당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에서 활동 중인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행기관(시·군·구 포함) 비치대장 (중략) - 해당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에서 활동 중인 참여자에 대한 함께 가려 되었다.
	참여자에 대한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일체 ※ 해당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타 기관에서 활동 중인 참여자의 경우, 노인일자리정보시스 템에 해당 정보 등록 후 관련 서류는 파기	참여자에 대한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일체 ※ (삭제)
주체별 주요역할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 발원)	-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 ① 사망 또는 중증 상해 안전사고 발생 사업의 안전사고 유형·원인 및 경위 ② 안전사고 사전 예방·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적절성에 관한 사항 ③ 참여자의 피해보상 청구 절차 준수 여부 ④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한 안전사고 등 확인 결과에 따라 참여자의 활동 중단 또는 사업 중단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사망 또는 중증 상해 안전사고 발생 사업의 안전사고 유형·원인 및 경위 ② 안전사고 사전 예방·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대응 조치에 대한 시의성·적절성에 관한 사항 ③ 참여자의 피해보상 청구 절차 준수 여부 ④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한 안전사고 등 확인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공공형(노인)	- 공익활	동사업)					
	통하	• 혹한기(12~2월), 혹서기(<u>7~8월</u>)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u>10시간</u>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 단축하여 운영 가능하며,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활동비 지급					
		(공공형(공	임익활동) 세부 프로그램)	>		〈 공공형(공	당익활동) 세부 프로그램 〉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운영개요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봉사	•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 지원활동, 시니어 유기동물 토 매니저 등		77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봉사	•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지원활동, 시니어 유기동물 보호센터 매니저, <u>시니어 위생지원단</u> 등
	공공 시설 봉사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봉사	•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커피 새활용 사업, 종이팩 재활용 사업, 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사회 자원순환 봉사	활성화 순환단,	광 생 황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봉사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커피찌꺼기 새활용 사업,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 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시니어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 등 지역사회 자원순환 봉사
참여자 및 수요자(수요처)	- (신 비양 서비 ※ 지 생	수요처 - (신청대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소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수요처 신청이 가능 (예: 어르신 그룹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공동생활 가정 등)			수요처 - (신청대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 노인·장애인들이 공동 으로 생활하는 장소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수요처 신청이 가능(예 : 어르신 그룹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공동생활 가정 등)		
운영방법	수행기관은 참여자 활동방법, 안전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필수 6시간) 등 실시 교육시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 교육시간에 대한 활동비 지급 시 활동비 지급 기준 준수 참여자 활동교육을 제외한 간담회(회의, 평가회 등) 문화활동, 발대식 등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6시간) 네 대한 : 회 등),	필 등 - 교 활 ※ 참	2한 소양교육 실시 육시간은 활동 동비 지급 / 당여자 교육 및	대자 활동방법, 안전수칙 등 활동에 라, 직무교육, 안전교육(필수 6시간) 당시간으로 인정, 교육시간에 대한 시 활동비 지급 기준 준수 간담회(회의)는 활동시간으로 인정되며, 식·평가회 등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 노인	 !공익활동사	 업 부대경비 집행 시 유의	사항 〉	〈 노인	 민공익활동사	업 부대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
	항목		유의사항		항목	4	유의사항
부대경비 활용	회의비	문구 및 등으로 ※ 대관 ※ 동일 별도 기부 고행	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 집행 가능 료는 실비 별도 집행 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운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 가능(단, 활동비가 지급되는 교육 비 내 식비 편성 불가)	과 구입 H더라도 시간을 비 모두	회의	문구 및 등으로 ※ 대관· ※ 동일 별도 구분· 가능 * 단, 활 회의비 * 원활한	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현수막,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집행 가능 료는 실비 별도 집행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시간을 운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 집행 등 지하는 지급되는 교육 또는 회의 운영 시 내 식비 편성 불가 회의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1원 이내) 집행 가능
		'				'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항목	유의사항	항목	유의사항
	교육 참가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u>10만원</u> 이내에서 집행 가능	교육 참가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u>15만원</u> 이내에서 집행 가능
	노인 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 인력) 제 수당	노인공익활동사업 부대경비 총액 중 인당 2.787천원(확정내시 인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에 한해 지급 가능 그 외 노인공익활동사업 부대경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사회보험료 부족분,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 (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신설)	노인 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노인공익활동사업 부대경비 총액 중 인당 2.829천원(확정내시 인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에 한해 지급 가능 그 외 노인공익활동사업 부대경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사회보험료 부족분, 경력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2025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안) 경력 신규 2년 미만 4년 미만 경력수당 50천원 이내/월 ※ 수행기관의 장은 기관예산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경력수당 집행기능(단, 해당 수행기관에서의 연속된 경력에 한해 산정)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	(참여자 안전관리 철저) 참여자 활동 전후 이동 시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활동 중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활동 전 안전교육 (6시간 이상) 실시 등 관리 철저 (신설) (신설) 수행기관은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리고 처리내용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 사업운영 → 사고발생 현황 메뉴 참조		- 참여자 활동 (6시건 - 사업단 인전전 ※ 활동 경우 • 수행기 알리고 ※ 노인 메뉴	중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활동 전 안전교육 난 이상) 실시 등 관리 철저 난 안전관리 자가진단(담당자) 및 활동 전 성검 회의(참여자)를 통한 사전 위험요인 확인 장소가 실외인 사업은 필수로 작성하되. 필요한 실내 활동 사업에도 활용 가능 관은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는 처리내용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일자리정보시스템 → 사업운영 → 사고발생 현황 참조
	포함) 개발:	중 사망 및 중대한 사고 발생 시 7일(공휴일) 이내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 원)에 공문을 송부하고 조치계획 및 내용 등을 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7일(· (한국	중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u>사고발생일로부터</u> 공휴일 포함) 이내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남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을 송부하고 조치계획 내용 등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 사회서비스형	!(노인역량활	용사업)				
	60세 이상 프로그램	t 참여 가능한 노인역량활용사업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한 노인역량활용사업 프로그램 유형		
운영개요	□ 취약계층 : □ 시니어 컨· □ 디지털 전· □ 안전관리자 □ 공공행정입 □ 노인 일자	 문서비스 디원	□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 시니어 컨설턴트 □ 디지털 전문서비스 □ 안전관리지원 □ 공공행정업무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장애인 서비스 지원(실버장애인돌봄 서포터즈, 발달장애인 활동매니저, 장애인직업적응지원단)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유아 언어발달촉진 지원) □ 노인 관련 시설 지원(경로당 급식지원사업)			
	- (참여자 임금 연차수당 † ※ 단, 노인의 신 금지, 근로계9	무시간) 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 ()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 별도 지급 신체적 능력 고려하여 일 8시간 근무 초고 양사상정해진 근로시간 외연장 및 휴일근로 (시~익일 06시) 불가	(참여자 근무시간) 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 (참여자 임금)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지급 ※ 단, 노인의 신체적 능력 고려하여 일 8시간 근무 초과 금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불가하며, 이에 따른 급여는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집행 불가			
	• <u>15개 유형</u> , 프로그램	신규사업 10개 추가 및 명칭변경	• <u>삭제 2개,</u> 프로그램	명칭 변경 3개, 신규사업 16개 추가		
	(소분류) 보육시설	프로그램 내용 • (신설)	(소분류)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지원	프로그램 내용 •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신설) • (신설)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늘봄학교 지원사업 • 특수학급돌봄매니저		
프로그램 유형	장애인 서비스 지원	• (신설) • (신설)	장애인 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활동 매니저 • 장애인직업적응지원단		
	노인 관련 시설 지원	• (신설)	노인 관련 시설 지원	• 경로당 급식지원사업		
	취약계층 공익 증진 서비스	• (신설) • (신설)	취약계층 공익 증진 서비스	• 무연고 및 취약계층 장례동행 • 시니어 주거복지 지원단		
	안전관리 지원	(신설) (신설) 시니어 안전보건 가이드 에너지 품질안전 파수꾼	안전관리 지원	• 응급안전안심지킴이 • 자동심장충격기관리단 • (삭제) • (삭제)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프로그 (소분류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 (소분		프로그램 내용	
	공공행 업무지		 시니어 산재가이드 국립공원 관광객 안내 지원 (시니어 탐방 플러스) 시니어 공공의료 복지서비스 가이드 (산설) (산설) (산설) (산설) (산설) (산설) (산설) (산설) 	공공형 업무자		시니어 산재·복지 가이드 시니어 탐방 플러스 시니어 공공의료 가이드 산림자원보존사업단 생명나눔(장기기증·헌혈)서포터즈 생태도센트 전통시장 시니어 지원단 파크골프 러닝메이트	
	디지! 전문서!		<u>• (신설)</u>	디지 전문서	_	• 지역문화 기록가	
	※ <u>(신설</u>	<u>)</u>				인역량활용사업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은 별도 안내에 따름	
참여자 지위 및 의무	-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 근로계약 기간,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휴(무)일, 사업·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월 급여 등에 관한 사항		- 근로계 <u>계산병</u> 종사하	-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 근로계약기간, <u>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u> <u>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u>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			
	※ 참여자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u>간담회·</u> 문화 활동·발대식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 참여자 교육 및 간담회(회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문화활동 · 발대식 <u>· 평가회</u>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운영방법	수행기관은 재해 발생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알리고 관련 내용을 노인일자리정보 시스템에 입력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 사업운영 → 사고발생 현황 메뉴 참조 ※ 활동(근무) 중 사망 및 중대한 사고 발생 시 7일(공휴일 포함) 이내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 개발원)에 공문을 송부하고 조치계획 및 내용 등을 노인 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공무원 시스투 ※ 노인일 메뉴 ※ 활동(로부트 (한국.	실에게 발자리 [:] 참조 근무) (년 7일((노인인	알리고 관련 내용을 노인일자리정보	
	〈 노인역	량활용		〈 노인역	〈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		
	항목		유의사항	항목		유의사항	
부대경비 활용	회의비	문구 등일 ※ ※ 본 구 집	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현수막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으로 집행 가능 내관료는 실비 별도 집행 당일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15기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시간을 1분·운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 1행가능(단, 급여가 지급되는 교육 운영 시 1의비 내 식비 편성 불가)	회의비	是 号 ※ 等 · · · · · · · · · · · · · · · · · ·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현수막, 구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으로 집행 가능대관료는 실비 별도 집행동일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시간을 구분·운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집행가능* 1. 급여가 지급되는 교육 또는 회의 운영 시 및 인비 내 시민 편성 불가	
						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000원 이내) 집행 가능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항목	유의사항	항목	유의사항	
	교육 참가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u>10만원</u> 이내에서 집행 가능	교육 참가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u>15만원</u> 이내에서 집행 가능	
	노인 일자리 담당자 (구 <u>전담</u> 인력) 제 수당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총액 중 인당 2.787천원(확정내시 인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에 한해 지급 가능 □ 고 외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사회보험료 부족분,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 (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신설) 	노인 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총액 중 인당 2.829천원(확정내시 인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에 한해 지급 기능 그 외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사회보험료 부족분, 경력수당*, 연치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2025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안) 경력	
● 민간형(공동;	 체사업단	·)	-		
목적 및 정의	• (정의)	·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등을 목적으로 하 <u>는</u> 사업단	제공 등 사업단 • (공동) 운영하 및사회)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등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하는 노인이 둘이상인 단 체사업단 수행기관) 공동체사업단을 설립 나고자 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함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중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곳	
운영개요	<u>〈신설〉</u> • <u>(신설)</u> • <u>(신설)</u> • <u>(신설)</u> • <u>(신설)</u>	! !	제공하 • 공동차 • 노인어 제공 2 • 그 밖이	건〉에 의한 상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에 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일 것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계획 또는 서비스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에 공동체사업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 <u>(신설)</u>	※ 한 개 사업단에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혼재 불가
참여자 지위 및 의무	 근로계약 시 -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휴(무)일,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시간당 급여 등에 관한 사항 ※ 월 지급 임금의 환산 시간급 임금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기준금액 (24년 9,860원) 이상 	- 근로계약 시 - 근로계약 시 명시사항 -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 시간 등에 관한 사항 ※월 지급 임금의 환산 시간답 임금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기준금액 ('25년 10,030원) 이상
	도급계약 시 • (신설)	도급계약 시 • 사업계획 심사 시, 도급사업단으로 승인 받은 사업단 참여자는 모두 '도급계약'으로만 운영 필요. 한 개 사업단에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혼재 불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u>(일요일</u>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함
운영방법	기관 내 경조사 관련 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 □ 경조사 관련 증빙서류(혼인신고서, 청첩장, 시망확인서 등)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고 결근을 승인받은 경우 근무한 것으로 봄 - (결혼) 본인 5일, 자녀·손자녀 5일 - (사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및 배우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손자녀는 5일	기관 내 경조사 관련 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 □ 경조사 관련 증빙서류(혼인신고서, 청첩장, 시망 확인서 등)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고 결근을 승인받은 경우 근무한 것으로 봄 □ (결혼) 본인 5일, 자녀·손자녀 3일 □ (사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손자녀는 5일
	※ 전년도 계속참여자 및 반제품 제조 및 납품의 경우. 사업별 직무교육 시간을 2시간까지 단축 가능 ※ (신설)	※ (삭제) ※ 참여자 필수교육 및 간담회(회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문화활동·발대식·평가회 등은 근로시간 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활동(근무) 중 사망 및 중대한 사고 발생 시 7일(공휴일 포함) 이내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 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을 송부하고 조 치계획 및 내용 등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활동(근무) 중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공휴일 포함) 이내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을 송부하고 조치계획 및 내용 등을 노인 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운영과 관련 운영규정'을 • 필수규정 :	서는 아래 필수규정을 포함하여 사업 현한 제반 사항 등을 명시한 '사업단 아면하여 시행 ① 참여자 업무 유형 및 세부내용 계 및 시간 ③ 임금자급 기준 ④ 수익금 등	운영고 운영구 • 필수구 ② 산	관에서는 아래 필수규정을 포함하여 사업 사 관련한 제반 사항 등을 명시한 '사업단 구정'을 마련하여 시행 구정 : ① 참여자 업무 유형 및 세부내용 업단 총회 구성 및 운영 ③ 근무 체계 및 ④ 임금지급 기준 ⑤ 수익금 관리기준 등
		내 담당자 제 수당」항목에 한하여 타 사업 I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통합	(노인	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항목에 한하여 타 사업 공익활동사업, 노인역랑활용사업) 부대경비 통합 가능. <u>단. 공동체사업단 간 통합사용 불가</u>
	〈 공동체사업	업단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 공동	체사업단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항목	유의사항	항목	유의사항
사업단 관리	문 등 ※ [※ 5 호의비 =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현수막, 구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으로 집행 가능 내관료는 실비 별도 집행 동일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시간을 구분·운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 집행가능(단, 급여가 지급되는 교육 운영 시 회의비 내 식비 편성 불가)	회의비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현수막, 문구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 가능 ※ 대관료는 실비 별도 집행 ※ 동일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시간을 구 분·운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 집행가 능* * 단. 급여가 지급되는 교육 또는 회의 운영 시 회의비 내 식비 편성 불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 집행 가능
		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육 참가 시 1인당 연 <u>10만원</u> 이내에서 집행 능	교육 참가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u>15만원</u> 이내에서 집행 가능
	후 후 ※ 5 6 • 그 성한 이나 노인 일자리 담당자	동체사업단 사업비 총액 중 인당 2.787천원 정내시 인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집행 병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50%)), 퇴직적립액 인상분에 한해 지급 가능 외 연 267만원 중 인건비로 사용 가능한 한액(언 250만원)을 제한, 17만원의 5% 내록 활용 사회보험료 부족분,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 (단, 시간 외 수당 제외) <u>시설</u>)	노인 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공동체사업단 사업비 총액 중 인당 2.829천원 (확정내시 인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후 집행 광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60%)), 퇴직적립액 인상분에 한해 지급 가능 그 외 연 267만원 중 인건비로 사용 가능한 상한액(연 250만원)을 제한, 17만원의 5% 이내로 활용 사회보험료 부족분, 경력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2025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만) 경력수당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 취업 지원(취임	 업알선형)				
예산지원 기준	- 1인당 연간 15만원, 수행기관별 사업물량은 최소 100자리 이상 · 지자체별 미배정 물량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배정 가능 ※ (신설)			연간 15만원, 수행기관별 시업물량은 최소 다리 이상 체별 미배정 물량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가능 이상 동일기업 내 장기취업유지자의 경우 위탁 네 50%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예산 등으로 지원	
	- <u>(신설)</u>			면도에 취업알선하여 동일기업에 고용유지 있는 참여자 중 12·24·36·48개월 이상 중인 참여자는 장기취업유지자로 실적 인정 내용 기록한 후 취업(장기취업유지자) 처리	
	※ (신설) ※ (신설)		※ 장기취업유지자의 실적기준일(12, 24, 36, 48개월 등 경과시점) 이후 등록 가능하며 1인당 위탁운영비 50%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예산 등으로 집행가능 ※ 장기취업유지자 실적은 2024년 이후 참여자에 한하며,		
취업기준	- (신설)	(1144)		4대보험 가입사업장 참여자 중 참여신청서 상 행정 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해 참여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취업자의 실적 증빙은 4대보험 가입사업장의	
	<u>(C2)</u>		경우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한 사업장의 경우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별도증빙 등록 가능		
	<u>※ (신설</u>		※ 근로계약서, 기업 취업확인서 또는 공문, 급여명세서 (대표직인), 취업노인 통장사본 등 취업 및 보수를 확인 가능한 근거자료 1개		
	(4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지자체보조) 사업비 집행시 유의사항 〉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지자체보조) 사업비 집행시 유의사항 〉		
	항목	유의사항	항목	유의사항	
운영방법	회의비	•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현수막, 문구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 가능 ※ 동일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시간을 구분·운 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 집행가능 ※ 대관료는 실비 별도 집행 * (신설)	회의비	•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현수막, 문구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 가능 ※ 동일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시간을 구분·운 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 집행가능* ※ 대관료는 실비 별도 집행 * 단, 급여가 지급되는 교육 또는 회의 운영 시 회의비 내 식비 편성 불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 집행 가능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항목	유의사항	항목	유의사항	
	노인 일자리 담당자 (모 전담 인례) 제 수당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비 총액 중 인당 2.787천원(확정내시 인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에 한해 지급 가능 그 외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사회보험료 부족분,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 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신설) * (신설)	노인 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비 총액 중 인당 2.829천원(확정내시 인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에 한해 지급 가능 • 그 외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사회보험료 부족분, 경력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2025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안) 경력 신규 2년 미만 4년 미만 3명 100천원(만)) 경력수당 등 50천원 10대/월 ** 수행기관의 장은 기관예산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경력수당 집행가능(단, 해당 수행기관에서의 연속된 경력에 한해 산정)	
	교육 참가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u>10만원</u> 이내에서 집행 가능	교육 참가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u>15만원</u> 이내에서 집행 가능	
◉ 노인일자리지	원기관의	설치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하를 사업단 및 일자리수를 고려하여 지원액 증감 및 일자리수를 고려하여 지원액 증감			원 이상 지원 권장, 다만, 관리대상 사업단 실자리수를 고려하여 지원액 증감 가능	
◉ 노인 일자리	및 사회	l활동 지원사업 관련 서식(변경 및	신설)		
공통	(변경) 사업 위탁관리 계약서(공익활동·역량활용·취업 지원(취업알선형)(예시) (변경) 사업 위탁관리 계약서(공동체사업단)(예시) (변경)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예시) (변경) 노인일자리 담당자 근로계악서 (변경) 노인일자리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변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설) 현금 지급 현황 보고 양식(예시)				
노인공익활동사업	(신설) 현금 지급 현황 보고 양식(예시) (변경)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수요자용) (변경)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신설) 노인공익활동사업 안전 점검 회의록(예시) (변경)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구 분	2024년(개정)	2025년	
노인역량활용사업	• (변경) 노인역량활용사업 선발기준표 및 지표 • (변경) 노인역량활용사업 근로계약서(예시) • (변경) 월별 임금지급대장(예시) • (변경) 노인역량활용사업 급여명세서(예시) • (변경) 노인역량활용사업 임금 현금지급 확인		
공동체사업단	(변경)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동체사업단) 사업계획서 (변경) 공동체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 (변경) 공동체사업단 근로계약서(예시) (변경) 월별 임금지급대상(예시) (변경) 공동체사업단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 (변경) 취업 지원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	집·이용·제공 동의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괄 운영

I.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Ⅲ. 공통 운영사항Ⅲ. 주체별 주요역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함

2 사업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3 용어정의

- (수행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 (직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주요 명칭 변경사항

2024년(기존)				
구분	유형			
공공형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ප්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민간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개정)			
구분	유형		
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		
사회서비스형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민간형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노인친화기업·기관		

- *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법 제 10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에 따른 "취업 지원"을 말한다.
- ** (시니어 인턴십) 노인일자리법 제 10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른 "현장실습훈련을 위한 지원시업"을 말한다.

4 사업내용

구분	유형	주요내용	예산 지원형태	활동성격	관련법령
고 고 등	노인공익활동사업	도인이 취약계층 시원 및 시역사회 공익승신 활동 시사제 (사회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저할 수 있는 사업 경상보조		봉사 (사회 활동)	법 제15조
사회 서비 스형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자체 경상보조	근로	법 제16조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민간경상보조		
민 간 형	공동체 사업단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u>하며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인</u> 사업단	지자체 경상보조	근로 (일부 <u>도급)</u>	법 제12조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법 제10조
	현장실습 훈련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노인의 일자리 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근로	법 제10조
	노인친화기업·기관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법 제13조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취업 지원(취업알선형)(민간경상보조),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노인친화기업·기관은 별도 운영안내 참고

1 노인공익활동사업

- (사업정의)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 (사업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는 참여 가능
 -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추진방식) 지자체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수행기관*
 -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 (사업내용)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유형	세부 사업내용		
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 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 활동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2 노인역량활용사업

- (사업정의)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사업대상) 65세 이상
 - ※ 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추진방식) 지자체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수행기관*
 -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 (사업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타

유형	세부 사업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한부모시설 등 돌봄서비스 보조 및 지원 등 • 초등학교 아동 돌봄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보조 및 지원 등
공공전문서비스	• 안전예방, 시니어 취업상담, 공공기관 등 행정업무 지원, 공공정보 수집 등 대국민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및 노인일자리 홍보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지원
기타	•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3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사업정의)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노인 일자리
- (사업대상) 60세 이상
- (추진방식) 민간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기업·기관 등
- (지원내용)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4만원×5개월 지원(연간 최대 1인당 170만원)

4 공동체사업단

- (사업정의)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u>하며 참여</u> 하는 노인이 둘 이상인 사업단
- (공동체사업단 수행기관)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중 지방자치 단체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곳
- (사업대상)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추진방식) 지자체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수행기관*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 (사업내용)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유형	세부 사업내용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운송		
기타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화·서비스 제공	

5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 (사업정의)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사업대상) 60세 이상
- (추진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수행기관*
 - 민간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수행기관(매년 공모로 선정)
 -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 (지원내용) 수행기관에 사업비 지원(참여자 인건비 지원 없음)

6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 (사업정의)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사업대상)
 - 참여기업: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참여자: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 제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 (추진방식) 민간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수행기관 → 기업 등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 (지원내용) 참여기업→인건비 지원, 수행기관→사업비 지원
 ※ 지원내용은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별도 운영안내 참조

7 노인친화기업·기관

- (사업정의)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 노인 채용 기업 :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 (사업대상)
 - 참여기업: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및 단체 등
 - 참여자:60세 이상 노인 중 사업특성 적합자
- (추진방식) 민간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기업 등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3억원 지원
 - ※ 지원내용은 노인친화기업・기관 별도 운영안내 참조

5 예산지원 기준

구 분		활동비 (월)	부대경비* (연)	참여 기간	합계 (연)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290천원	180천원	평균 11개월	3,370천원	
사회서비스형 (노인역량활용사업)		634천원	2,124천원	10개월	8,464천원**	
민간형	공동체사업단	2,670천원		연중	2,670천원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	(지자체보조)150천원	연중	150천원	

^{*}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의 경우 사업비로 활용

^{**} 주휴 및 연차 수당 연 1,585.5천원 포함

[※] 각 사업별 국고보조율은 50%(서울 30%)



공통 운영사항

진행단계 및 역할주체

주 요 내 용

1단계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지자체

□ 보건복지부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5년)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매년) 및 시·도별 예산배분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 통보(매년 12월 31일까지)

□ 광역 시·도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 군·구별 시행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 연도별 시행계획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시·군·구 균등 방식의 사업량 배분은 지양하고 사업수행능력 및 노인인구 수, 사업추진 수요(의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배분
- 시·군·구별 사업량, 노인일자리 담당자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 통보

□ 기초자치단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군·구별 시행 계획 수립 및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 지자체시행계획서

- 지자체 시행계획서

2단계 수행기관 선정

지자체

□ 기초자치단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수행기관 심사·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선정된 수행기관별 사업량 및 예산, 노인일자리 담당자 등 배분
- 수행기관 선정 심사 기준표
- 사업위탁관리 계약서 등

3단계 사업계획 수립

□ (수행기관)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 사업계획 수립 및 정보시스템에 단위 계획서 등록
- 등록 계획서에 대한 심사 신청

지자체 및 수행기관

□ (지자체)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

-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시·군·구(1차), 시·도(2차) 심사 및 승인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승인 완료된 사업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사결과 분석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계획서
- <u>공동체사업단</u>지원 신청서

진행단계 및 역할주체

주 요 내 용

• (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시군구(1차), 시·도 (2차),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3차 심사 및 승인 * 필요시 공동체사업단 신규사업은 3차 심사단계에서 현장 방문 진행

4단계 사업추진 준비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공개 모집 원칙, 사업유형별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 (노인공익활동사업)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를 통해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진행
-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 모집 실시 및 참여자 선발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통보(단,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해 전년도 조기 신청할 경우 30일 범위에서 기한 연장 가능)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에 적합한 자를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채용

□ 수요자(수요처) 등 개발 및 선정

- 참여자 활동이 가능한 수요처 개발 및 선정, 서비스 제공 협의 등
- 수요자(서비스대상자) 발굴 및 선정
- 참여자-수요자(수요처) 간 협약서 작성 지원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내 수요자 및 수요처 현황 필수 등록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선발기준표

- 노인일자리 담당자 근로계약서
- 개인정보동의서
- 서비스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협약서

5단계 사업시행

□ 소양 및 활동(직무)교육 실시

-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교육
- 12시간 이상, 안전교육 6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 (노인역량활용사업) 소양·안전·직무교육
- 소양교육 5시간 이상, 안전교육 6시간 이상, 직무교육 6시간 이상 실시
- (공동체사업단) 소양·안전·직무교육
- 소양교육 2시간 이상, 안전교육 6시간 이상, 직무교육 4시간 이상 실시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필요시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없는 수요처에 취업알선된 참여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제공

수행기관

진행단계 및 역할주체

주 요 내 용

□ 활동(근무)관리 및 활동비(임금) 지급

-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관리 및 활동비 지급
- (활동관리) 현장 수시 방문, 유선확인 등을 통해 활동 진행 사항 확인
- (활동비 지급) 수요자(수요처)와 참여자 매칭, 참여자로부터 활동일지(수요처 확인) 수령 후 활동비 지급
-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 근무 관리 및 임금 지급
- (근로) 근무현장을 방문하여 출근부 확인(서명 또는 도장), 근무 일수·시간 확인 후 개인별 임금 지급
- (도급) 납품량 확인 후 참여자 개인별로 도급에 대한 보수 지급

□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 (부적격자 관리) 참여자의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 건강보험 자격 변동, 장기요양 등급 사항 등 점검
- (부정수급자 관리) 활동(근무)일지 허위작성, 주민번호 도용 등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항에 대해 점검

□ 그 외 확인사항

- (대기자 관리)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대기자를 등록하여 순위별 관리, 중도 탈락자 발생 시 참여 등 지원
- (참여자 정보보호 철저)
-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 개인정보가 수록된 문서파일은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함 (문서고)에 보관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사용 시 참여자(대기자 포함)의 개인 정보를 오·남용 및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로 선정 시 기한 내에 소명
- (예산운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 e-나라도움을 이용해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별도 구분계리,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노인공익활동사업 협약서
- 활동일지
- 근로계약서
- 도급계약서
- 근무스케줄표
- 참여자 출근부
- 임금(도급보수) 지급대장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파기 관리 대장 등

6단계 사업평가

수행기관

□ 만족도조사

• 참여자, 수요처 및 수요자 등 만족도조사 실시

□ 사업운영 결과보고

• 사업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등록

□ 사업평가

-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점검
- 차기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발전방안 모색

- 설문조사표
- 만족도조사 보고서
- 결과보고서
- 사업평가서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민간보조) 제외

1 기본계획 수립

1 사전조사 및 분석

- 지방자치단체는 활동 특성에 따라 지역 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현황 및 욕구, 자원조사 등 사전조사 실시
- 사업실행 가능성 타진 및 타당성 분석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요처, 수요자(서비스대상자) 예측 관련 자료 조사
 - 지역사회 주요 현안 분석 및 사업 실행의 기대효과 등 예측

2 지역별 사업운영 기본계획 수립

- 시·도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군·구 시행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제출(매년 1월 31일까지)
- 시·군·구는 사업비 예산규모, 사업 유형별 비율 및 사전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시· 군·구 시행계획 수립
 - 전년도 추진결과, 주요 현안 및 조치 계획
 -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선정 계획
 - 수행기관 및 참여자 관리, 사업 평가방안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방안 등
- 시·도 및 시·군·구는 시행계획 수립 후 해당 계획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내 반드시 등록

관련서식 > [1-1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서

2 수행기관 선정 및 지정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지침 제 5장에 따름

1 신청 공고 및 접수

-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
 - 전년도 점검 결과 등 결격 사유가 없고, 실적 우수 등 사업의 계속 추진이 적격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으로 재지정 가능
 - ※ <u>동 운영안내에서 정하지 않은 수행기관 사업 위탁 관련 사항은 시·군·구별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u> 따름(단,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는 매년 작성 필요)
 - ※ 단, 지방자치단체가 수행기관일 경우, 수행기관 재지정 절차 생략 가능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 등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 NGO, 지자체 전담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 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은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수행기관 지정 제외: 종교시설(교회·사찰 등), 임의 단체(동호회 및 전우회, 부녀회 등), 경로당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1-2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3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용)

[2-1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사업계획서

관련서식 > [3-1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사업계획서

[4-1호]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

[4-2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동체사업단) 사업계획서

[5-1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계획서

2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 선정심사 기준표 및 해당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활용, 지역별「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 적격성 심사 후 수행기관 선정
 - 전년도 추진실적,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관리 적절성, 사업평가 방안 및 예산수립 적절성 등
 - 고득점 기관을 위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배분 실시

수행기관 심사·선정 시 유의사항

- □ 신청기관의 정관 등에 고유목적 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심사
- □ <u>직전년도</u> 사업운영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부정수급 등을 사유로 지자체로부터 제재조치(경고 또는 사업 중단 조치된 기관, 민·형사상 고발)받은 기관 등은 사업참여 제한(수행기관 지정 불가능)
- □ 지방자치단체 적격성 심사 기준 내 재지정 제한(탈락) 기준 별도 수립 가능 (예시 :2개년 연속 사업별 계량평가 산술평균 60점 이하)
- □ 참여노인, 사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사업량 과다 배분 지양

관련서식 > [1-4호]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3 수행기관 선정 통보 및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위탁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기관일 경우는 별도 통보 없이 확정
- (민간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수행 위탁관리 협약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행기관으로 확정
 - ※ 지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공동체사업단 물량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자체가 운영비 일부 지원 가능

[1-5호] 사업 위탁관리 계약서(노인공익활동·노인역량활용·취업 지원(취업알선형))

관련서식 > 1. = 1. 기업 위탁관리 계약서(공동체사업단)

[1-7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1-8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16 •

3 사업계획 수립

1)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수행기관) 지역특성, 사업목표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일자리정보
 시스템에 단위 사업별로 사업계획서 등록

[2-1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노인공익활동사업)

[3-1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노인역량활용사업)

[4-1호]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

관련서식 > [4-2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공동체사업단)

[5-1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취업 지원(취업알선형))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별도 운영안내를 참조하여 사업량 또는 사업 계획서 등록

2 사업계획 심사승인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사업계획을 해당 시·군·구에서 1차 심사, 시·도에서 2차 심사 및 승인 후 사업 추진
 - ※ 사업계획 변경 관련 사항도 해당 시·도에서 최종 심사
 -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지자체 심사 결과 적절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심사결과 확인 및 분석 등
- 공동체사업단
 - 수행기관에서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를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시· 군·구 1차 심사, 시·도 2차 심사,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3차 심사 및 승인 후 사업 추진
 - ※ <u>지방자치단체(시·군·구, 시·도) 및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사업계획 심사 시, 공동체사업단</u> 지원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적정성 확인 필요
 - 필요 시 신규사업은 3차 심사단계에서 현장방문 진행
 - ※ 6월 이후 신규 사업 신청이 불가하나 기존사업 중단으로 인한 신규사업 신청(대체), 사업 배정량 미달로 인한 추가신청은 가능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 수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군·구 1차 심사, 시·도 2차 심사,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3차 심사 및 승인 후 사업 추진

- 사업계획서상 최소 사업물량 100명 이상 적용(수행기관 기준)
 - ※ 지자체별 미배정 물량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배정 가능(단,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100자리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
 -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지자체보조) 수행기관에 한함

4 참여자 모집 및 선발

1 모집 방법

- (노인공익활동사업)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참여자 통합 모집 및 선발
 ※ 연중 추가 모집 시에는 수행기관별 수시모집 가능
-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 모집 실시
-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모집공고 확인 가능
 - * www.seniorro.or.kr

참여자 모집 시 참고사항

- □ 공고는 홈페이지, 언론 등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
- □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이용 시 표준 가이드라인 활용 준수(부록3 참조)
- □ 공개모집 준수를 위해 신청서 접수 일자별 접수자 명부 작성 및 비치
- □ 공고 미실시에 따른 민원발생 유의
 -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내에 수행기관이 게시한 모집정보는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사회보장 정보원) 및 정부24에 연계되어 보여짐

2 참여자격 및 신청서 제출

• (참여자격) 각 사업별 참여연령 및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 (취업알선형)
자격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65세 이상 (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 노인공익활동시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직역연금수급(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노케어 수요자는 당해 노노케어 유형에는 참여 불가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참여 가능 ※ 세부기준은 복지부 공문으로 시행
-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u>당해연도</u>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u>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 가능(세부기준 위 지침 참고)</u>
-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취업 지원(취업알선형)(민간보조),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노인친화기업· 기관은 별도 지침을 따름
 - (신청서 제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신청서와 선발 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시·군·구 및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 참여신청서, <u>개인정보동의서</u>,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제외), 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장애 증빙 서류 사본 <u>및 취업지원</u>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
 -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가 공익활동 참여 신청 시 연금지급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자가 공시가(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
 - ** 참여 신청자가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해당자에 한함)를 수행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전년도 참여자도 참여신청서를 제출
 - ※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참여희망자는 참여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며 수행기관은 해당자를 포함하여 참여자 선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참여자 등록)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제출된 참여신청서를 활용하여 신청자 정보를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련서식

[1-13호]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

[1-14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2호] 취업 지원 신청서

[5-3호] 취업 지원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참여자 선발

- (자격기준 확인)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신청자의 사업참여 적격성을 확인
 - (자격정보) 차상위계층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를 통해 제공된 자격정보를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 단, 노인공익활동의 경우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가 참여 신청 시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의 연금 지급 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자가 공시가(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하여 소득·재산 기준 등 확인
 - (노인일자리 참여경력·중도포기 여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세대구성 형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선발점수 부여)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관련서류 및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선발점수 부여
 - (노인공익활동사업) 차상위 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 점수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자격 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 선발기준표에 세대구성·활동역량·참여경력 점수를 부여한 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필히 입력
 - (노인역량활용사업) 차상위 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 장애 유무* 점수는 노인 일자리정보시스템 자격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 선발기준표에 활동역량(의사소통역량, 신체활동 능력, 사무역량)·공적수급 여부·세대구성·신규참여·인성역량·대인관계역량 판단점수, 유관자격증 확인 점수, 직업적 경험 점수, 취업지원 대상자** 점수를부여한 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필히 입력
 - (공동체사업단) 차상위 계층 여부 및 소득인정액, 장애 유무* 점수는 노인일자리정보 시스템 자격정보 연계를 통해 확인하고, 선발기준표에 경력·세대구성·공적 지원 수급 여부·활동역량·신규참여·취업지원 대상자** 점수를 필히 입력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선발 시 5점 가점 부여(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제출)
 -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가점 비율에 따라 10점 또는 5점 가점을 부여하되,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만 적용(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선발된 참여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 불가
 - ※ 도급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사업단 신청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해당 없음

- (취업 지원(취업암선형)) 취업 지원 신청서를 바탕으로 구인처에 적합한 구직자 관리 (선발점수부여 대상에서 제외)

[2-5호]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관련서식 > [3-2호]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및 지표별 세부 내용

[4-3호] 공동체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

4) 참여자 확정 및 통보

-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선발기준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
 - 선발기준표 점수의 고득점자(선발대상자)가 활동 지역과의 거리,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참여가 어려워 후순위자를 선발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노인일자리정보 시스템에 입력
 - ※ 고득점자 미선발 사유 입력 등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성과관리에 반영
 - ※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여부(참여, 대기, 탈락 등)를 결정하여 통지, 단,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해 전년도에 조기 신청하는 경우 통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노인공익활동사업)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참여 신청자의 선발기준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수요처(수요자)와 노인공익활동사업 협약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관련서식

[2-4호] 노인공익활동사업 협약서 [2-9호] 지역봉사지도원증

- (노인역량활용사업)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 참여 신청자의 선발기주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수으로 참여자를 확정하고, 참여가 확정된 자에 하하여 근로조건 협의 후 근로계약 체결
- (공동체사업단)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신청자의 선발기준표.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를 확정하고. 참여가 확정된 자에 한하여 근로 (도급)조건 협의 후 근로(도급)계약 체결

[3-3호] 노인역량활용사업 근로계약서 관련서식 > [4-4호] 공동체사업단 근로계약서

[4-5호] 공동체사업단 도급계약서

- (참여자 선발점수 공개) 참여(신청)자가 본인의 선발 점수 공개를 수행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공개가능
 - ※ 참여(신청)자가 본인 점수 외 해당 사업단의 전체점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합격자 평균점수 및 탈락자 평균 점수만 공개 가능

5 노인일자리 담당자·팀장·안전전담인력 운영

- 1 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 운영
- (정의) 지자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배치되는 상근인력
- (인원) 17개 시·도당 각 1명씩 배정
- (지워기준) 12개월. 월 2.097천원 이내에서 시·도별 탄력 운영
 - ※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등 사용 가능(여비는 지자체 규정에 의거)
 - ※ 시·도는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 사회보험료 부족분,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을 부담하여야 함
 - ※ 시·도는 1년 이상(12개월 근로계약자 포함)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퇴직금을 적립·지급하여야 함(퇴직적립금 포함 13개월 인건비 지원)
 - ※ 노인일자리 담당자 고용부담금(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예산은 별도 반영
 - * 노인일자리 담당자 고용부담금은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로 우선 집행(단. 잔액은 수당으로 집행가능)
 - ** 1인당 2.829천원 초과 집행 불가, 퇴직자 등으로 인한 예산잔액 발생 시 반납
- (근무조건)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시간은 9:00~18:00 권장, 필요시 해당 시·도와 협의하에 조정 가능
 - ※ 휴가 등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되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주요 업무내용)

- 시·도별 사업량. 예산 배분 및 사업 계획 심사 지원
- 시·도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보고현황 관리 지원
- 시·도별 사업부진, 미 시행 사업 파악 및 관리 지원
- 시·도별 사업 성과관리(평가) 지원
- 시·도 내 신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발굴
-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지원 등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외 타 업무는 지원불가

• (기타사항)

- 각 시·도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기초 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에서 제공하는 <u>공통교육(기본과정 또는 경력과정)</u>을 반드시 이수
 - ※ 신규 담당자는 기본과정 이수, 전년도 기본과정 수료자는 경력과정 이수 권장
 - ※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택교육 권고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 현황 필수 등록

2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운영

- (정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
- (인원 및 배치기준)
 - (인원) 시·도별 노인일자리 담당자 배정현황 별도 통보
 - (배치기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의 사업량과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결정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 담당자 배치 기준

- □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노인 150명당 1명 배치
- □ 공동체사업단: 참여노인 120명당 1명 배치
- □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노인 100명당 1명 배치
-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지자체 보조): 참여노인 100명당 1명 우선 배치
 - ※ 시·군·구의 경우는 <u>지방비 자부담 등으로</u> 시·군·구에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1명씩 배치하여 참여자 선정 기초자료 제공 및 지역 내 사업 총괄지원 가능

(자격 및 근무조건)

- (자격)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공개모집)
 - ※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 시 자격조건 등 부가기준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서 별도 적용 가능
 - ※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등 전환 시 공개모집 절차 생략 가능
 - ※ 수행기관 내 정년 등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 운영안내에 따름
- (근무조건)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간 근로계약의 정함에 따름
 - ※ 수행기관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 수행기관은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해 연도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함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수행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지원기준) 12개월, 월 2.097천원 지원(근로자 본인부담분 4대 보험료 포함)
 - ※ 노인일자리 담당자 고용부담금(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예산은 별도 반영
 - 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예산 범위 내 노인일자리 담당자 활용기간 탄력운영 가능
 - ※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근로계약에 따르며,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수행 기관의 노동법상 의무를 확인하여야 함
 - ※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퇴직금 지급 가능
 - ※ 임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노인일자리 담당자 운영방안)
 - 수행기과(시·군·구 포함)은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각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금 및 휴가 등 근로조건을 결정 후 근로계약서 체결

- 근로자의 날은 노동법상 유급 휴일로 인정
 - ※ 경조사휴가, 특별휴가 등 약정휴가 규정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에 따름

관련서식

[1-11호] 노인일자리 담당자 근로계약서 [1-12호] 노인일자리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요 업무내용)

-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및 활동관리 지원
- 매 월별 참여자 활동비(또는 임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 권역 내 신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 기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등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외 타 업무 지원불가

• (기타사항)

-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기초 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공통교육(기본과정 또는 경력과정)을 반드시 이수
 - ※ 교육이수(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에 필요한 출장여비 및 교육참가비 등 부대경비 집행 가능, 출장여비는 해당 수행기관의 규정에 의거해 집행
 - ※ 신규 담당자는 기본과정 이수, 전년도 기본과정 수료자는 경력과정 이수 권장
 - ※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택교육 권고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현황 필수 등록
 -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담당자 모두 해당
- 노인일자리 종사자 및 담당자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추가 상해보험 등을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호 노인일자리 담당자 공통교육 과정 개요

□ 교육기간 : 당해 연도 1.1 ~ 12.31

□ 교육대상 : 당해 연도 노인일자리 담당자(시도 및 수행기관)*

* <u>노인일자리</u>정보시스템의 '교육 사용자 유형'에 '담당자'로 등록된 경우, <u>공통교육(기본과정 또는</u> 경력과정) 이수 필수

* 신규 담당자 및 전년도 기본과정 미수료자는 기본과정 이수, 그 외 담당자는 경력과정 이수 권장

□ 교육운영

- 교육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교육내용 : 노인일자리 업무수행을 위한 공통교육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필요시 일부 과정은 대면 교육으로 운영

□ 과정개요

- 공통교육-기본과정

구분		교과명 차시			
			사업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이해	3차시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	4차시
			이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1 5자시
			₹ŀ ₩ŢĹ	• 노인의 이해	4차시
노인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참여자 이해 직무 이해	• 노인 상담실무	3차시
포한 일자리				•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3차시
크지디 담당자				• 근로기준법의 이해	4차시
ㅁᇬ시				• 노인일자리사업의 인사노무	6차시
				• 안전사고 예방교육	<u> 4차시</u>
				•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 운영	<u>2차시</u>
				• 청렴교육	3차시
				•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서 작성법	3차시
				소계	<u>총 44차시</u>

- 공통교육-경력과정

구분			교과명	차시
		공통 경력 교육 <u>과정</u>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통 운영 실제	<u> 3차시</u>
			• 노인공익활동사업 운영 실제	<u> 3차시</u>
<u>노인</u>	공통		• 노인역량활용사업 운영 실제	3차시
<u>일자리</u>	교육		• 공동체사업단 운영 실제	3차시
<u>담당자</u>			• 재무회계 및 보조금관리 에센스	3차시
			• 안전보건관리 에센스	<u> 6차시</u>
	<u>소계</u>		<u>소계</u>	총 21차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수행기관은 「기간제법」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
 - 인건비, 퇴직적립금(기본급 기준), 고용부담금 예산은 국비 지원(국비보조율 50% (서울 30%))
 -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적립금 인상분, 복리후생비 등 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예산으로 지원
 - ※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구성항목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기간제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고용승계)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수행기관에 고용된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함

기가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u>로의</u>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並 노인일자리 담당자 퇴직금 지급 방법

- □ (퇴직금 지급 대상) '24년 중도입사자 중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인일자리 담당자 및 '25년 신규 채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 등에 따라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 □ (퇴직금 관리방법) 매월 발생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퇴직적립금을 별도 통장에 적립·관리
- □ (퇴직금 지급방법)
 - 실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
 - 법정 퇴직금 산정기준(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액이 지원한 퇴직적립금보다 높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퇴직적립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낮은 경우 사용자인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에서 자부담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율적 판단에 의함

3 사업단 팀장 운영

- (수행업무)
 - 노인일자리 실무자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현장업무 지원・보조
 - 활동 전 안전사고 예방 안내, 스트레칭 및 참여자 건강상태 체크, 활동 중 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 지원 등
 - <u>노인공익활동사업 중 실외 활동에 한해 활동 전(매일) 참여자 사전안전점검회의 실시,</u> 월 1회 이상 수행기관에 결과보고서(회의록)를 제출하고 시급한 개선사항은 수행기관에 즉시 개선 요구

관련서식 > [2-7호] 노인공익활동사업 안전점검 회의록(예시)

- (운영기준) 참여자 중 팀장 지정, 참여 인원 매 10명마다 1명의 팀장 운영 가능
 ※ 사업특성 고려해 팀장 배치기준 조정 가능(예시 : 참여인원 5~6명당 1명)
- (팀장수당) 월 4만원 이내로 부대경비에서 지급(예산 범위 내) ※ 팀장수당은 월 활동시간을 고려해 4만원 이내에서 탄력적 지급 가능

4 안전전담인력 운영

- (정의) 민간수행기관 또는 시·군·구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보호를 위하여 배치되는 인력
- (배치기준) 사업유형별 1인 이상 안전전담인력 배치
 - 중간관리자, 사업담당자, 노인일자리 담당자 등 배치 가능
- (주요 업무내용)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활동 및 사고발생 현황 관리, 피해보상 지워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 노인일자리 사업단 사업개시 전 상해·산재보험 가입
 - 참여자 활동(근무) 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6시간 이상)
 - 참여자 활동(근무) 전 안전물품 구입·지원
 - 참여자 사고발생 시, 사고발생 현황보고 및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상해·산재 보험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6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1 참여자 부적격 관리

-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취업 지원(취업알선형)(민간보조),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노인친화기업·기관은 별도 지침을 따름
- (정의) 노인일자리 참여 중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

• (유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은 참여자가 해당 수행기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단.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해당 없음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활동(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 <u>노인일자리를 포함하여</u>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 ※ 단, 일시적·간헐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참여자가 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근무일이 겹치지 않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제재조치)

- 부적격 참여 확인 즉시 당해 연도 해당 사업참여를 중단 조치하고, 이후 참여 시 2년간 적격 여부 중점 관리
- 발생된 부적격 유형에 관계없이 즉시 활동 중단(중도포기 처리자에 대해 중도포기 확인서 구비(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중도포기 확인서 제출 불필요

- 단, 참여자 자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중도포기 후 참여자격이 될 경우 일련의 선발 절차를 거쳐 다른 사업(단)으로 재참여 가능
- ※ [예시]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도중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변동 → 중도포기 → 공동체사업단 재참여

관련서식 > [1-16호] 참여자 중도포기 확인서

2 참여자 부정수급 관리

- (정의) 노인일자리법 제29조(벌칙)에 근거하여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행위 일체
- (유형) 노인일자리사업 허위 신청, 대리참여, 거짓활동, 활동일지 허위 작성, 위조
 (공)문서 제출 등
 - 본인 외 타인(배우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사업참여 신청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대리참여 등 활동(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활동일지(출근부)에 작성 및 서명하는 등 방법으로 활동비(또는 임금)를 수령한 경우
 - ※ 예시 노인공익활동사업 3시간 미만 참여 후 3시간 이상으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활동비를 수령
 - ※ 예시 교정시설 입소기간,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기간(입원 등), 해외 출국 기간 중에 활동한 것으로 활동일지(출근부)를 작성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참여시간이 중복되어 활동비 (임금)를 수령한 경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 (제재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참여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또는 임금)을 수령한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활동비(또는 임금) 환수, 당해 연도 참여 중단 및 다음 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사실을 통보(중도포기 처리자에 대해 중도 포기 확인서 구비(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중도포기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참여자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참여 금지

부정수급 제재 조치 관련 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29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금
 - 2.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금
 - 3.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지원금
 - 4.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원금
 - 5.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원금
 - 6.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금
- □ 제30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
- 2.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2. 양도, 교환, 대여
 - 3. 담보의 제공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를 따름

3 수행기관 부정수급 관리

- (정의) 노인일자리법 제29조(벌칙)에 근거하여 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행위 일체
- (유형) 수행기관의 보조금 횡령 및 착복, 허위(공)문서 작성, 참여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인건비 등) 지급,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회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근무하지 않은 자를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허위 등재하고, 담당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활동하지 않은 자를 참여자로 등재하고 활동일지(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교환·대여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
 - ※ 예시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과 상이한 업무를 수행 등
- (제재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행기관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지자체는 지원금 회수(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일 경우 해당금액 포함), 당해연도 사업 수행 협약 취소 및 다음 연도 참여 제한,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로 해당사실 통보
 - 수행기관이 다수의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협약체결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해 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른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기타) 시도, 시군구는 매년 상·하반기의 점검 결과(부정수급 및 환수실적 등)를 e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 필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u>상반기 점검 결과는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u> 31일까지 입력(e나라도움)

7 대기자 관리

- (대기자) 참여자 외에 대기자를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순위별로 관리,
 중도탈락자 발생 시 반드시 점수 순위별로 우선 참여하도록 지원
 - ※ 활동장소와의 거리, 건강상태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대기자 순위 기준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후순위자 선발 가능
- (중도포기자)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활동(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중도포기 사유를 확인하여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중도포기 처리자에 대해 중도포기 확인서 구비(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 중도포기 후 재참여 희망 시 타사업단 참여가 원칙이나 건강상의 사유 또는 가족 병간호(진단서 등 증빙 구비 필요)로 중도포기한 경우 동일 사업단에 재참여 신청 가능
 - ※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중도포기 확인서 제출 불필요

8 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

 (보호 의무사항) 지방자치단체(읍·면·동 포함) 및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문서를 작성·구비하고 관리

관련서식

[1-7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1-8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1-9호]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1-10호] 사용자 권한 신청서

-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읍·면·동 포함) 및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자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 불가
 - ※ 참여자 선정을 위한 지자체 정보제공 요청은 제외
- (문서 보관 철저) 지방자치단체(읍·면·동 포함) 및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참여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고 또는 서랍장에 안전하게 보관

- (업무용 컴퓨터 관리) 지방자치단체(읍·면·동 포함) 및 수행기관은 업무용 컴퓨터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파일을 암호화하여 보관
 - 업무용 컴퓨터에 메신저·P2P 등 설치·사용 금지, 개인용 컴퓨터 사용 금지
- (개인정보보호 교육)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
 - ※ <u>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배움터(https://edu.privacy.go.kr/)</u>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 교육 교재, 전문 강사 등을 활용

②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활동 운영절차 준수사항

- (목적)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통합분석 대상 시스템으로 개인 정보 오·남용 예방 활동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대량 유출 사고를 사전 예방
- (상시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심자 대상 상시 모니터링
 -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모든 접속 기록 수집
 - 접속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등으로 의심되는 사례 분석
 -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심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소명 요청
- (소명답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노인일자리정보 시스템(마이페이지→소명대상 관리화면)에서 기한 내에 소명 답변을 등록
 - 개인정보 오남용 및 등록된 소명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 부적정 등 판정하며 부적정 판정 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관리 규정상 권한 회수·정지
- (소명절차) 수행기관 → 지자체 → 개발원
- (추가소명) 소명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당초 소명요청 의도와 상이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추가소명 요청
- (불성실 소명 조치) 추가소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개발원은 해당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기관을 관할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

〈 개인정보 표준 오·남용 판정 기준 〉

부적정 유형	부적정 판정기준	주요 사례
	•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	• 호기심으로 유명인 정보 조회 • 사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조회
목적 외 이용 (법* 제18조)	• 수집목적 외 이용	 만족도 조사, 사용자 교육, 무단 테스트 등 수집 목적과 관련 없는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조회 목적 외 이용 가능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조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사기관의 요청 등)
접근 통제 위반	•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	• 인사이동, 휴·퇴직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 조회 • 권한 없는 직원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조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계정·인증수단을 권한 없는 자에게 대여·공유 또는 대신 업무처리 지시
(지침**)	•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이용	 개인정보 취급권한이 없는 관리자(시스템관리자, 사용자 승인권자)가 무단으로 개인정보 조회 업무 권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조회
ᆸ서시 시대	• 기한 내 소명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규정 <u>제20조</u> (추가 소명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행위
불성실 소명 (지침**)	• 허위 또는 불성실 소명한 경우	• '기억이 안 난다', '조회한 적 없다' 등 불성실한 소명을 반복하여 점검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 상식을 벗어난 소명 답변(ㅎㅎ, ㅋㅋ 등)을 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 오·남용 표준 징계 기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개인정보 무단 수집·열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개인정보 무단 이용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3. 개인정보 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4. 개인정보 관리 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1. 개인정보 고의 유출·부정 이용으로서 각종 범죄 악용 등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 나.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다.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열람, 무단 이용, 유출한 경우
- 3.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미치는 영향, 수사 중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계 종류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및 보안서약서 징구)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접근계정 발급 전, 사전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 및 보안 서약서 징구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

9 예산운영

【관련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1 예산 교부 및 집행

- 시·군·구는 수행기관과 사업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예산을 분기별로 교부(기관 보조금 통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교부
- 수행기관에서는 예산 집행 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용 법인카드 사용
 및 (세금)계산서에 의한 계좌이체 원칙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등록,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 수행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복지시설은 기존 시설정보시스템 활용
 - ※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2항(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 (정보공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② 포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

- 수행기관의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예산과목으로는 편성 불가
 - ※ 사업비 목별 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

③ 불용예산 및 보조금 이자 반납

- 사업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 보조금 통장에서 이자발생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해당 지자체 반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검증이 필요한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

전산 및 회계감사 관련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수 있다.
 -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 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 □ 제3조(적용범위) 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각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특정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 2. 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특정사업자의 특성 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특정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제4조의 주석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회계관리 기준

- 사업예산 별도 구분계리
- 수행기관의 고유 목적사업 예산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은 별도 구분계리
 - ※ 보조금 장부, 통장, 지출 결의서 등을 별도 작성·관리
 - 노인일자리 담당자 퇴직적립금에 대해 별도 구분 계리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유형 가 별도 구부 계리
 - 공동체사업단은 사업비 통합집행이 불가하므로 사업단별로 구분 계리 필수

5 참여자 활동비(또는 임금) 지급

- 매월 말일까지의 활동(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달 5일까지 활동비(또는 임금)를
 지급, 그 내역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 원칙
 - ※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지급 확인서 구비
 - ※ 수행기관은 현금 지급 현황을 공문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보고, 추후 변동 사항은 월 단위로 보고
- 사업 참여 도중 참여노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활동비(또는 임금)를 사망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 후 유가족에게 통장으로 입금
- 참여자 활동비(또는 임금) 예산잔액 발생 시 부대경비로 전용 불가

道 지방회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 **지방회계법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관련서식

[1-17호] 현금 지급 현황 보고 양식(예시)

[2-10호]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 현금지급 확인서

[3-10호] 노인역량활용사업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

[4-9호] 공동체사업단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

6 부대경비 및 사업비 집행

- 부대경비 및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 전용카드를 통한 카드집행과 (세금)계산서에 의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비교 견적, 활동복 재활용, 수요처 협력지원 등을 통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부대경비 잔액 발생 시 참여자 활동비(또는 임금)로 전용 가능
- 사업별 집행 항목

구분	집 행 항 목
노인공익 활동사업 부대경비	상해보험료,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참여자), 팀장수당, 활동진행(관리)비, 비품구입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참여자 유류비 보조,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교육참가비,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노인역량 활용사업 부대경비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참여자), 팀장수당, 사업진행(관리)비, 비품구입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참여자 유류비 보조,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교육참가비, 배상책임보험료, 참여자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구분	집 행 항 목
공동체 사업단 사업비	참여자 인건비, 참여자 사회보험료, 팀장 수당, 전담 보조인력 수당, 전문인력 인건비,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비품구입비, 회의비, 피복비, 문화 활동비, 출장비, 참여자 교육비, 교육참가비,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참여자 유류비 보조, 홍보비, 공공요금, 사업단 보험료, 세금, 사업진행비,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사업단 임차료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사업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참여자), 문화활동비, 출장비, 교육참가비,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비품구입비, 상해보험료(지지체 보조에 한함, 비사업자 수요처 필요시), 사업진행비,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 ※ 집행 시 유의사항은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집행 불가 항목
 -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관 운영성 경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기관장 출장비, 참여자 교통비, 기관차량 보험료 및 수리비 등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교육 및 행사 참가 시 기관장 출장비 예외 인정
 - ※ 공동체사업단이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된 경우에 한해 사업단 임차료 집행 가능(보증금 및 권리금 집행은 불가)
 - 보조금으로 5백만원 이상의 비품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관리

10 참여자 교육방법 및 운영절차

- 참여자 교육은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가능(비대면 교육은 연간 최대 9시간 까지 인정)
 - 단,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사업별 필요한 법정필수교육이수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교육 인정시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 법정필수교육이수를 제외한 해당 사유 발생 시 별도 안내

구 분		내 용	
대면교육		• 대면 강의, 교육동영상 시청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를 일정 장소에 집합하여 교육 실시 * 대면 교육 운영시 워크북 교육동영상 활용 가능	
	워크북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배포하는 워크북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비대면 교육으로 이수확인증으로 교육이수를 확인하며,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별도 안내 * 교육동영상은 워크북 보조수단으로 활용 가능	
교육	온라인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안내한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비대면 교육으로 참여자 개별 회원가입 및 온라인 수강 후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으로 교육이수를 확인하며,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온라인사이트는 별도 안내 * 사업별 필요한 법정필수교육은 관할기관 확인 후 진행	

- 교육방법에 따른 운영절차 및 증빙자료

교육	교육방법 운영절차		증빙자료	비고
대면교육		① 교육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교육과정 등록 ② 교육운영 ③ 결과보고 및 시스템 교육실적 입력	• 교육계획(안), 결과보고 • 출석부(참여자 자필 서명 또는 지장)	
비대면교육	워크북	① 교육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교육과정 등록 ② 워크북 인쇄 및 배포 ③ 이수확인증 취합·보관 - 워크북 보관 불필요 ④ 결과보고 및 시스템 교육실적 입력		보건복자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배포한 교육과정만 인정(해당 교육과정 별도안내) 워크북 인쇄비용 부대경비 집행 가능 워크북 배포방법: 우편발송, 팀장 또는 활동 가능 사업단 활용, 방문수령, 메일발송 및 본인 출력 등
	온라인	① 교육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교육과정 등록 ② 온라인 교육 실시 ③ 교육수료증 등 증빙 자료 취합·보관 ④ 결과보고 및 시스템 교육실적 입력	교육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등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교육이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관 자체발급 수료증 미인정)	배포한 교육과정만 인정(해당 교육과정 별도안내) * 사업별 필요한 법정필수교육은



주체별 주요역할

1 지방자치단체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역 내 사업 총괄
 -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 내 사업계획 심사, 사업 착수 이후 참여자 현황, 사업 유영 현황 등 사업추진 실적 확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지원(지방비) 등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운영 주체) 기초자치단체
 - (위원회 구성) 지자체(노인복지 또는 사업 담당부서) 담당자 2명 이상,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담당자 1명 이상, 사업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명 이상, 기타 노인 복지분야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운영 시 수행기관 관계자 참석 불가
 - (위원회 운영) 연 2회 이상 운영
 - (위원회 주요역할) 지역 내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역 욕구조사,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 지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안건 협의 등
- 지역협의체 구성·운영협조 등
- 시·군·구별 발대식 추진(필요시)
- 시·군·구별 참여자 통합 소양교육 실시
 -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별 추진
 - (실시방법) 전문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참여자를 위한 공통 소양교육 및 사업 유형별 교육주제를 공통으로 선정하여 실시 가능
 - ※ 시·군·구 통합 교육 시 소정의 다과비 사용 가능하며 통합 소양교육 계획 수립 시 교육진행 일정 (절차) 및 예상인원, 단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수행기관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 시·군·구는 매월 관할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적 확인 및 마감 처리 진행(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활용)
 - 실적 확인항목
 - 월별 참여자. 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등 현황
 - 사업예산 집행실적, 노인일자리 담당자 운영현황 및 사고발생 현황 등
 - 공동체사업단 매출실적,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지자체보조) 추진실적 등
 -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적정보 현황 및 인건비 집행현황
-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교육 참여 권장
 - 사업 운영안내 및 심사·평가방법, 지도점검 관련 사항 등 교육 이수
- 관할 수행기관 대상 간담회 실시(반기별 1회)
 - 지역 내 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공유, 합동평가 등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자치단체 운영비 또는 관내 수행기관의 사업 부대경비 활용 가능
- 노인역량활용사업 수행기관의 관리·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요처 현황파악, 수요 조사,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운영, 관리 등 지원
- 사업추진 실태 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해당 지자체 및 수행기관 일제 지도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송부
 - ※ 단, 공동체사업단은 분기별 1회 수행기관 정산보고서 확인·점검 실시(분기별 정례화)
 - 주요 점검내용
 -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결과 적정성
 - 참여자 모집, 선정기준 적용 및 적정성(선발기준 적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참여 확인 등)
 - 참여자 관리(참여자 자격변동에 대한 조치, 참여자 부적격·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등)
 - 참여자 교육 실적 등
 - 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 시 사유 등

- 팀장 및 전담 보조인력 관리(업무분장, 수당지급 내역 등)
-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활용 적정성 등(퇴직적립금 관리 등)
-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집행내역, 관련 증빙서류 비치 등)
-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적절성 등
- 결과 보고
 - 일제 지도점검 실시 후 1개월 이내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주요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조치하고 그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수록
- 노인일자리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도 및 시·군·구는 조사(필요 시 보건 복지부(개발원)와 협조 가능) 및 조치 후 보건복지부(개발원)에 결과 송부

〈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

조치유형	판단 기준	위반사항
행정적 시정	•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처분 시 이행 미흡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비치문서 관리 소홀(서식 부적정, 미작성 등)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단순 입력 오류
기관 주의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운영 안내 위반으로, 기관 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 지연(3회 이상)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 예) 가족이 운영하는 수요처 및 가족을 수요자로 매칭·활동시킨 경우 포함 사업 미시행 및 지연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 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 또는 회계장부 등재 미비 등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비 (인건비)·부대경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 결과보고 누락 (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비·수익금 집행기준 미준수 및 집행계획 수립 또는 결과보고 누락 * 수익금은 공동체사업단에 한함 사업유형별 통장 구분계리 미준수(공동체사업단은 사업단별 구분계리 필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누락(예산집행내역, 참여자 등록 및 관리 사항, 수요처 등록 등)

조치유형	판단 기준	위반사항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관리 소홀 참여자의 활동시작 전 상해보험 미가입 또는 노인 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누락 사고 발생 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지연(사고 발생일로부터 당월 실적입력 마감시까지) 또는 누락 상해, 산재 결과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누락 또는 지연(당월 실적입력 마감시까지) 활동(근무) 전 참여자 안전교육 미실시 또는 시간 미충족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지자체 및 보건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사고 발생 현황 보고서 지연 제출(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개인정보 관련 자료 누락(개인정보처리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등)
기관 경고	•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운영안내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예산 집행근거 누락 지출결의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무통장 입금표 등 지출증빙 누락, 3만원 이상 현금결제 참여자의 활동관리 대장(출근부) 허위작성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허위 입력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근로(도급)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불이행, 노인역량활용사업 근무스케줄표 작성 및 교부의무 불이행, 사회보험(상해 보험) 미가입 등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 미준수 참여자 안전사고 조치 관리 누락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 미제출 중대한 사고 조사 시 활동현장 모니터링 미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참여자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중단	• 운영안내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 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수행기관의 보조금(수익금) 허위집행 (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부대경비 및활동비(인건비) 허위지급 등 (공동체사업단)사업비 및 인건비 허위지급 등 사업비 및 수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참여자 활동(근로)의 사적 이용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 해당 점검 시 다수의 지적(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는 경고 이상을 조치 받은 수행기관의 다음 연도 사업 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할 수 있음(사업중단 조치는 당해 연도부터 적용 가능)
-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2 수행기관(시·군·구 포함)

- 참여신청서 등록
 - 수행기관은 참여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참여자 관리
 - 참여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 확인
 - 기초생계 수급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차상위 계층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및 소득인정액 등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사업단별 참여자 및 대기자, 중도포기자 및 중도포기 사유 관리 등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활동(참여자 교육 등)을 권고,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참여자 활동 중점 관리
 - ※ 부대경비(사업비)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등 안전물품 교부 가능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세부 운영방안 별도 안내
 -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위기 경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
 - 활동(근무) 중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u>사고발생일로부터</u> 7일(공휴일 포함) 이내 해당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을 송부하고 조치계획 및 내용 등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중대한 사고 기준

- ① 활동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② 활동 중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진단결과 4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③ 활동 중 사고로 인해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인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 의사의 임상적 판단 하에 진단·확인된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이 때 의식불명은 의식수준의 5단계 중 혼수(Coma) 상태
- ④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고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필요
 - ① 참여자 활동·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 ② 참여자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 ③ 위해요소 확인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소 개선 조치
 - ④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 마련
 - ※ 수행기관은 수요처가 서비스 신청 시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함

한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여자 자격변동 등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참여자 자격변동 사항에 대해 매월 점검 후 노인 일자리정보시스템에 조치결과 입력
 - 기초생계 수급 여부, 기초연금 보장 중지 여부, 차상위 계층 탈락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관련 변동 여부, 장기요양보험 책정 여부 등
 - 사망, 교정시설 입·퇴소,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성명변경, 출·입국 등
 - 타재정일자리 중복참여 현황 등에 대해 점검 후 지자체로 조치결과 보고

관련서식 ▶ [1-15호]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에서 월별 사업추진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보고(마감처리 실시)
 - 공동체사업단 수행기관은 분기별 1회 시·군·구로 사업단 정산보고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항목
 - 사업계획서 등록 및 관리,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 중도포기자 및 대기자 현황
 - 참여자 자격변동 관리 및 부적격·부정수급 조치사항 입력
 - 참여자 교육 실적

- 참여자 사고발생 현황
-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적사항·운영(예산집행 등) 현황 입력 및 현행화
- 수요자 현황 및 수요처 등록 등
- 수행기관 정보 입력 및 현행화
 - ※ 시·군·구에서는 관할 수행기관의 실적입력 항목을 매월 확인하고 마감 처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실적 외 아래 내용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매월 입력 및 관리		
사업단계	입력 및 관리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작성화면)
사업계획 작성	• 사업계획 등록(작성, 수정, 삭제) • 사업계획변경사항 관리	• 사업계획》사업계획
	• 참여자 및 대기자 : 신청자 정보 등록 • 선발기준표 및 개인별 점수	• 참여자》참여자 관리 • 참여자》참여자 선발관리
	• 월 마감 : 월 집행 활동비 및 부대경비 마감	• 사업운영》보수관리 • 사업운영》마감관리
1101 - TI	• 참여자 교육사항 등록(과목, 시간, 강사 등) • 참여자 교육이수 등록	• 사업운영》교육이수관리
사업추진 관리	•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적정보 • 노인일자리 담당자 예산집행실적	• 사업운영》 <u>노인일자리 담당자</u> 계획예산 • 사업운영》 <u>노인일자리 담당자</u> 계획예산 및 집행예산 • 사업운영》 <u>노인일자리</u> 담당자 현황
	• 수요처 등록	• 사업운영》수요처관리》신규 수요처등록
	• 노노케어 수요자(서비스 대상자) 등록	• 사업운영》 수요처관리》 노노케어 대상자 등록
	• 사고발생, 상해 및 산재보험 처리 결과 등록	• 사업운영》기타관리》사고발생현황
기타	• 참여자 자격변동 및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사후관리》부적격/부정수급 관리 사후관리》중복수급자 관리(타재정) 사후관리》중복참여 의심자 관리 사후관리》자격정보 의심자 관리 사후관리》건강보험직장가입관리

- 종사자 교육(기관장, 실무자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 교육 참석
 - 해당 교육 이수 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관리에 반영
 - ※ 종사자 교육 일정 및 이수시간은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

- 수행기관(시·군·구 포함) 비치대장
 - 수행기관 선정심사 결과보고(시·군·구)
 - 사업계획서 및 위탁관리 계약서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 해당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에서 활동 중인 참여자에 대한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일체
 - 참여자별 선발기준표 및 노인공익활동사업 협약서
 - 수요자, 수요처의 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참여자별 활동일지(출근부)
 - 사업단별 활동비(또는 임금) 대장
 - 노인일자리 담당자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참여자별 근로(도급)계약서(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 참여자별 근무스케줄표(노인역량활용사업)
 -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공동체사업단)
 - 사업 자체운영 규정,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서, 정산보고서, 자산대장(공동체사업단)

3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상시관리
 - 사업 착수 이후 참여자 현황, 참여자 교육 실시, 사업운영 현황 등과 관련해 주기적인 공지와 조치 요청
 - 참여자 자격(변동)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 (사후관리 항목)건강보험 직장가입 현황, 타재정일자리 중복참여 현황, 기초생계 수급 여부, 기초연금 보장중지 여부, 장기요양보험등급, 사망, 교정시설 입·퇴소,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성명 변경. 출·입국 등
-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
 - ① 사망 또는 중증 상해 안전사고 발생 사업의 안전사고 유형·원인 및 경위
 - ② 안전사고 사전 예방·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적절성에 관한 사항
 - ③ 참여자의 피해보상 청구 절차 준수 여부
 - ④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
 -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한 안전사고 등 확인 결과에 따라 참여자의 활동 중단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 가능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시기) 3년 단위
 - (내용) 법 제7조제1항
 -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워 대상 노인의 사업 참여 현황에 관한 사항
 - ②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건강, 경제, 노후생활, 시간활용 등에 과한 사항
 -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
 -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①~③의 사항에는 성별에 따른 통계 포함

• 현장점검

-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 * 지자체 현장점검결과 추가확인 필요한 경우 등 선정하여 별도 통보
- (시기) 당해연도 6~10월
- (주요 점검내용) 참여자 모집·관리 및 수요처관리 현황 파악, 부대경비 집행 현황 파악, 사업추진 실적 및 운영 현황 파악,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적정보 현황 및 인건비 집행현황, 사업운영 지침과 관련된 사항 등
- 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관리
 - (대상) 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 수행기관
 - (방법) 성과관리 지표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계량평가 후 정성평가 실시
 - (시기) 당해연도 1분기(계량평가), 2분기(정성평가)
 - (결과활용) 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 ※ 성과관리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 통보 및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지
- 차년도 수요조사
 - (내용) 지자체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 노인일자리 담당자 필요인원
 - (시기) 당해연도 4~6월
 - ※ 수요조사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 통보 및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지
-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운영 주체)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광역자치단체
 - (협의체 구성) 광역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기초자치단체(지역 상황 고려), 지역 전문가(수행기관 대표 등) 등으로 구성 가능
 - ※ 운영 시 안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기초자치단체(대표), 수행기관(대표) 등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할수 있음
 - (협의체 운영) 연 2회 이상 운영
 - (협의체 주요역할) 기본과제 및 제도개선 협의, 긴급현안 대응 등
 -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중앙협의체 별도 운영가능





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 사업운영

1. 목적 및 정의

2. 운영개요

3. 참여자 및 수요자(수요처)

4. 운영방법

〈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추진단계별 절차 〉

	C& 4144	02 T-1
단 계	운영 방법	운영 주체
사업시행 공고	□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활용하여 사업 시행 공고 • (공고내용) 사업개요, <u>노인공익활동사업</u> 프로그램별 사업량, 수행기관 신청 절차 및 내용, 수행기관 선정 심사계획 등	시·군·구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 시·군·구는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수행기관별, 프로그램별 사업량 배정	시·군·구 → 수행기관
참여자 등 모집 공고	□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공고	시·군·구 수행기관
신 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및 기관 등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으로 제출 - 사업유형별 신청 노인 1인당 <u>2개</u> 이내 ※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모집공고 확인 가능	참여자·수요처 (수요자) → 수행기관
대상선정	□ (시·군·구) 참여 신청자의 자격 확인,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자 일괄 선발, 수행기관별 참여자 배분 □ (수행기관) 수요처 및 수요자 발굴·선정	시·군·구, 수행기관
참여자 및 대기자 DB 관리	□ 참여자 및 수요처·수요자 정보를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 대기자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등록·관리	수행기관 → 정보시스템
매 칭	□ 참여자의 희망 활동지역,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요처 또는 수요자와 매칭	수행기관
교육	□ 참여자 활동 시 필요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활동방법, 안전수칙 등)	수행기관
활동 실시	□ 참여자는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작성 후 활동실시, 활동일지 작성 □ 수요처·수요자는 활동 내용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 작성· 서명	참여자·수요처 (수요자)
활동비 지급	□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활동내역 확인 후 매달 활동비 지급	수행기관 → 참여자
활동 종료	□ 활동계획서상 활동기간 완료나 참여자의 활동 중단 희망 시 활 동 종료	수행기관

1 목적 및 정의

- (목적)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
- (정의)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2 운영개요

1 활동조건

- ▶ 참여자격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원칙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참여 가능(세부기준은 복지부 공문으로 시행)
 -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직역연금수급(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 ※ 노노케어 수요자는 당해 노노케어 유형에는 참여 불가
 -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운영기간) 평균 11개월(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사업특성별 운영방법(예시)

□12개월 운영: 실내활동 및 지속적 서비스가 필요한 활동(노노케어 등)

□10개월 운영: 실외활동 및 초등학교·유치원 등 수요처 상황 고려가 필요한 활동

- 참여자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 혹한기(12~2월), 혹서기(<u>6~9월</u>)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u>15</u>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 단축하여 운영 가능하며,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활동비 지급
- 방학 등 수요처 상황으로 활동 휴지기가 발생하는 사업단은 월 42시간(일 4시간)이내)로 연장활동 가능

관련서식 > [2-8호] 노인공익활동사업 연장활동 동의서

2 예산지원 기준

• 참여자(활동비) : 1인당 29만원 이내

-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5천원

- 활동실비: 시간당 6.5천원

활동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천원	9,500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천원×2시간) + 간식비 3천원	19,000원
3시간 이상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천원×3시간) + 식비 6.5천원	29,000원

- ※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비 및 간식비와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29만원 초과 불가
- ※ 연장 활동 시 월 42시간(40.6만원), 1일 4시간(3.85만원)으로 산정하여 지급
- 수행기관(부대경비): 1인당(연간) 18만원
 - ※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단별 운영개월 수에 따라 집행 가능, 부대경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 활동비로 사용 가능

3 프로그램 유형

유형	세부 사업내용
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지원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봉사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활동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 공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세부 프로그램 〉

	〈 공용영(도인공익활동사업) 제부 프로그램 〉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노노	노노케어(정서지원)	•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및 말벗, 정서관리 등 수행		
케어	노노케어(활동지원)	•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혜노인 활동 지원 및 일상동행, 생활실태 점검 등 수행		
	장애인봉사	•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 보호시설, 학교 내 특수학급 등 대상자를 보조하고 지원		
취약 계층	취약(다문화, 한부모 등) 가정봉사	• 지역 내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 가족 상담 및 정서지원, 아동보호 등 서비스 제공		
지원	청소년 선도 봉사	• 지역 내 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봉사	• 지역 내 재가복지시설, 장애인 및 아동생활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지원		
	학교급식 지원봉사	•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및 식사예절 지도 등을 지원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 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인식 확산 (캠페인)		
	CCTV상시관제	• 학교 내·외부에 설치된 카메라(CCTV)를 모니터링 후 문제발생 시학교 측에 구두보고 및 조치 요청		
	보육시설봉사	•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강의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봉사	•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방과후 교육, 귀가 및 급식 등 다양한 지원		
	도서관봉사	•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관리지원		
	공원·놀이터(야외시설) 지원봉사	• 공원, 놀이터 등 야외 공공시설 등 관리지원		
공공	문화재 시설 봉사	• 지역 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 지원		
시설 봉사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봉사	•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지원활동, 시니어 유기동물 보호센터 매니저, 시니어 위생지원단 등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정화 업무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 봉사	•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커피찌꺼기 새활용 사업,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 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시니어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 등 지역사회 자원 순환 봉사		
	교통 지원 봉사	•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 전기차 충전소 관리원 등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 지역사회 방역활동, 지역 내 안전 위해 요소 점검(지하철, 파손 도로) 등 안전망 구축 지원		
	경로당 급식 지원	• 경로당 내 급식(배식 등) 지원		
	기타	• 기타 분류 안 된 공공서비스 활동		
	건강 체조 취미생활 지도	• 체육(건강) 및 각종 취미관련 경륜전수 활동		
경륜 전수	문화공연 활동	•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 문화 소외 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 제공활동		
활동	체험 활동 지원	• 지역 내 숲 체험 및 문화체험을 위한 각종 해설지원 등		
	경륜전수 활동	• 유아 및 초·중학생 대상 경륜전수 활동		

3 참여자 및 수요자(수요처)

1 참여자

-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인공익 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
 -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는 참여 가능
 -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 신청 및 선발 가능

2 수요처 및 수요자(서비스 대상자)

• 수요처

- (신청대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 공익활동사업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
 - ※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 노인·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소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수요처 신청이 가능(예 : 어르신 그룹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공동생활가정 등)
 - ※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해당 수요처의 장(대표), 수요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직원, 참여자 활동을 관리 또는 활동내용을 확인하는 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가(단, 지역 특성(농어촌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승인 시 활동 가능)
 - ※ 지자체 승인시 관할 지자체 공문(해당 사업단, 별도 적용 사유 등) 근거 필요

신청 제외

-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 목적, 형태 등이 노인공익활동사업 수요처로 적합하지 않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기관이나 단체
- (신청방법)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관은 수행기관에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서(수요처용)를 제출
 - ※ 수행기관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수요처 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공고

관련서식 > [2-3호]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서(수요처용)

- (선정방법) 수행기관은 신청 단체 및 기관의 성격, 사업 운영, 참여노인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를 선정
 - 수행기관은 선정된 수요처 현황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필히 입력
- 수요자(서비스 대상자)
 - (신청대상)
 -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한 개인으로, 수행기관, 지역 내 복지시설 및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등) 등 지역사회에서 연계·발굴된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본인(가족포함)이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를 요청한 자
 - (신청방법)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수행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선정방법)
 - 수행기관은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신청자, 지역사회에서 연계·발굴한 대상자 중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로 수요자를 선정
 - 수행기관은 선정된 수요자 현황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필히 입력

관련서식 > [2-2호]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수요자용)

***** 노노케어 수요자 발굴시 유의사항**

- □ 독거노인·부부노인·조손가구, 경증 치매노인 등 취약노인 중 연령, 경제상태, 건강 등 연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방문하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서비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자활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보훈실무관(보훈부),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요자는 서비스시간 및 주 서비스내용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허용
- □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선정된 이용자의 서비스중복 확인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4 운영방법

1) 수요처(수요자)와 참여자 매칭

- 수행기관은 참여자가 희망하는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상담 등을 실시하고, 참여자
 및 수요처(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매칭
 - 수요처 및 참여자 매칭 시, 참여자 거주지·경력·교통·개인의사 등을 반영
 - 사업 참여노인과 수요처(수요자)는 노인공익활동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해당 수행기관에 사본 제출
 - ※ 단, 협약서 작성 방식은 수요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참여자 명단은 필히 첨부)
 - ※ 수요처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지자체 등을 수요처로 할 수 있음
 - 가족이 운영하는 수요처 및 가족을 수요자로 매칭·활동할 수 없음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참조)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형제자매를 원칙을 하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에 포함함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

관련서식 > [2-4호] 노인공익활동사업 협약서

- 노노케어 사업의 경우 참여노인 보호 등을 위해 2인 1조 활동, 지자체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 중복 수요자 배제
 - ※ 사업단 특성 및 수요자 상황에 따라 조율 가능

유형	수요처 및 수요자
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노인
취약계층 지원	•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아동 등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육(보육)시설,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경륜전수 활동	•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노인의 경륜전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공동체 구성원

• 수요처(수요자)가 참여자에 대해 욕설, 폭언 및 부당한 지시 등 수요처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연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향후 수요처 (수요자) 선정 시 제외 가능

부록 1 ▶ 수요처 행동강령

2 참여자 교육

- 수행기관은 참여자 활동방법, 안전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필수 6시간) 등 실시
 - 교육시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 교육시간에 대한 활동비 지급 시 활동비 지급 기준 준수
 - ※ 참여자 교육 <u>및 간담회(회의)는 활동시간으로 인정되며</u>, 문화활동·발대식<u>·평가회</u> 등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구 분	내 용	
시 간	- 참여 프로그램 개요,	필수)을 포함하여 연간 12시간 이상 운영 활동방법, 기타 소양교육 등 자율편성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철저히 운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해	• 노인공익활동사업 이해 등
	노년기의 이해	• 노년기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및 건강관리 • 노년기 사회참여의 의미 등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교육 개요디지털 기초 및 문서작업 등
소양교육	금융	• 금융사기 예방 및 디지털 금융 이해 등
	성희롱 예방	• 성희롱 예방 및 사례 이해 등
	인권교육	• 노인인권 이해 등
	장애인인식개선	• 장애인인식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이해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이해 등

구 분	내 용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 사업단별 안전수칙, 사고발생 예방 요령 등
직무교육	사업별 직무 내용 및 실습	사업별 직무내용 이해, 활동 및 근무관리의 이해 활동 직무 현장 실습 등
기타교육	아동학대 예방 등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이해 등

- ※ 위 교육내용은 예시로, 수행기관 판단에 따라 *필요한 교육은 자율적으로 추가 진행가능
- ※ 단, 참여기간 3개월 이하의 경우 소양 및 직무교육 4시간 안전교육 6시간 이상 필수 실시하되 잔여 교육시간은 지자체 협의 후 조정 가능
- ※ 아동 대상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필히 실시
- ※ 지자체별 통합교육, 교육특화 기관 및 지역 내 전문교육기관 연계, 관련 공공기관의 교육과정 활용 가능

3 활동 관리

- (시·군·구 및 수행기관) 참여자·수요처(수요자)에 대한 정기 방문 및 모니터링 실시, 활동일지 확인 등 참여자 활동현황 파악 후 다음 달 5일까지 활동비 지급
 - 참여자와 정기적 간담회 실시, 활동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수시로 진행(의견수렴 등)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사업 운영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 수요처(수요자)와 간담회 실시, 담당자 유선 연락 등을 활용해 서비스 내용, 참여자 인권보호(수요처 행동강령 준수)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의견수렴 등)하고 개선 필요 사항은 사업 운영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 연 1회 이상 참여자, 수요처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
 - 수행기관은 '사업운영 결과보고서'를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1월 말)

<u>관련서식 ▶ [2-11호]</u> 노인공익활동사업 사업운영 결과보고서

(참여자)

- 참여자는 '참여자 활동자세'를 준수하고 책임감과 적극성을 가지고 성실히 활동에 임함

부록 2 ▶ 참여자 활동자세

- 활동 후 활동일지에 본인 서명 및 수요처(수요자) 확인을 받고 매월 말일 전까지 수행기관으로 제출 - 활동 후 활동일지에 반드시 자필 또는 지장(읽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으로 확인 서명 ※ 예시 '홍길동' 또는 '홍' 가능. 도장 불가

관련서식 > [2-6호]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일지

- 건강,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업기간 중 45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포함)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 가능
 - ※ 필요 시 병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기타 활동중단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 구비
 - ※ 활동 중단 기준 초과 시 중도포기 처리 및 대기자 또는 사업참여 희망자 추가 선발 가능
 - ※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중단사유 및 기간 등 입력
- (수요처 및 수요자) 참여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일지에 서명 또는 날인, 지장 확인
 ※ 수요처가 불명확한 사업에 한하여 수행기관에서 활동일지 확인 가능

4 부대경비 활용

- (집행 가능 항목)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참여자), 팀장수당, 활동 진행(관리)비, 비품구입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참여자 유류비 보조,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상해보험료, 교육 참가비,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등
 - ※ 노인공익활동사업에 한하여 1개 이상의 사업(동일항목)에서 부대경비 통합사용 가능
 - ※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비 목별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
- (집행 불가능 항목) 기관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관 운영성 경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기관장 출장비, 참여자 교통비, 기관 차량 보험료 및 수리비 등

〈 노인공익활동사업 부대경비 집행 〉

항목	유의사항
피복비	 소속감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한 참여자 활동복, 조끼, 모자 등 구입에 집행 가능 마스크 등 참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용품 구입에 집행 가능 ※ 피복비 구매물품의 경우 수행기관 보관 및 관리가 원칙이나, 안전확보를 위한 용품의 경우 참여자에게 배부가능
회의비	• 참여자 및 수요처 간담회, 지자체 및 수행기관 간담회, 사업 평가회 등에 집행 가능하며 회의 1회당 참석자(참여자, 수요처, 노인일자리 실무자 및 담당 부서장, 노인일자리 담당자, 기관장) 1인당 20,000원 이내에서 지출

항목	유의사항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현수막, 문구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 가능 재관료는 실비 별도 집행 동일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시 간을 구분·운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 집행가능* * 단, 활동비가 지급되는 교육 또는 회의 운영 시 회의비 내 식비 편성 불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 집행 가능
교육비 (참여자)	• 참여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강사료, 대관료, 현수막구입, 문구 및 교육진행을 위한 물품구입 등 집행 가능 ※ 활동비가 지급되는 교육(활동비 내 식비 포함) 진행 시 식비 편성 불가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 집행 가능
팀장수당	• 월 4만원 이내,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조정지급 가능
문화 활동비	•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노인일자리 관련 행사(노인일자리 주간 등)를 위하여 참여자 및 노인일자리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자, 기관장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체험비, 진행물품 (현수막, 구급약 등) 등 6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참여자 인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문화활동에 동행하는 기관의 일반직원, 자원봉사자 등 편성 가능
출장비	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 개발 방문 시, 또는 동 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선진지 견학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참석 시 집행 가능 ※ 출장비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함 ※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출장 시 해당 금액과 출장비의 중복지급 불가함 ※ 출장비 집행 가능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 및 부서장, 노인일자리 담당자임 (기관장 제외).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지급 가능
비품 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노인공익활동사업 부대경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승인 후 집행 ※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은 활동 진행비에 해당 ※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사업계획서에 미반영하였거나 승인된 사업계획 외 추가적인 비품구입 시 변경심사 또는 지자체 승인
교육 참가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교육 참가비로 집행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 단, 교육을 포함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과정, 예산집행계획(강사료, 대관료, 교육진행비 등)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교육 총괄 부서와 협의·승인 후 집행 가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15만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환수조치) 단순 취미교육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교육에 참가하거나, 교육 미수료 시에는 환수조치 가능

항목	유의사항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 동 사업 관리를 위해 기관차량 이용 시 예산범위 내 집행 가능 ※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 운행일지 및 출장 신청서 등 비치 ※ 유류비 지출 세부 사항은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참여자 유류비 보조	•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해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등을 진행하는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 ※ 팀장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팀장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 ※ 참여자 중 팀장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관의 실무자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이 개인차량을 이용해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등 진행하는 경우는 출장비 항목으로 집행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 기관 부대경비 범위 내 연중 탄력적으로 집행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노인공익활동사업 부대경비 총액 중 인당 2,829천원(확정내시 인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에 한해지급 가능 그 외 노인공익활동사업 부대경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사회보험료 부족분, 경력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2025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안)
	경력 신규 ~ 2년 미만 2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경력수당(안)) _ 50천원 이내/월 100천원 이내/월 ※ 수행기관의 장은 기관예산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경력수당 집행 가능(단, 해당 수행기관에서의 연속된 경력에 한해 산정)
활동진행비	•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회계감사 비용,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다른 결핵검진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5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

- (참여자 안전관리 철저)
 - 참여자 활동 전후 이동 시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활동 중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활동 전 안전교육(6시간 이상) 실시 등 관리 철저
 - <u>사업단 안전관리 자가진단(담당자) 및 활동 전 안전점검 회의(참여자)를 통한 사전</u> 위험요인 확인
 - ※ 활동장소가 실외인 사업은 필수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실내 활동 사업에도 활용 가능

관련서식 ▶ [2-7호] 노인공익활동사업 안전점검 회의록(예시)

- 수행기관은 사업개시 전 상해보험 의무 가입,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상해보험 처리
 - 수행기관은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알리고 처리내용을 노인 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 사업운영 → 사고발생 현황 메뉴 참조
 - ※ 활동 중 사망 <u>등</u> 중대한 사고 발생 시 <u>사고발생일로부터</u> 7일(공휴일 포함) 이내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을 송부하고 조치계획 및 내용 등을 노인일자리정보 시스템에 입력
 - ※ 상해보험료 납부 시 사업단별 보험료 납부

중대한 사고 기준

- ① 활동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② 활동 중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진단결과 4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③ 활동 중 사고로 인해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인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 의사의 임상적 판단 하에 진단·확인된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이 때 의식 불명은 의식수준의 5단계 중 혼수(Coma) 상태
- ④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고
 -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인 및 안전조치 가능
 - ① 사망 또는 중증 상해 안전사고 발생 사업의 안전사고 유형·원인 및 경위
 - ② 안전사고 사전 예방·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적절성에 관한 사항
 - ③ 참여자의 피해보상 청구 절차 준수 여부
 - ④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
 -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한 안전사고 등 확인 결과에 따라 참여자의 활동 중단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 가능

관련서식 ▶ [1-15호]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

- 혹서기·혹한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활동(참여자 교육 등) 권고,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중점 관리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세부 운영방안 별도 안내
 - ※ 부대경비(사업비)를 활용해 보건용 마스크 등 안전물품 교부 가능
-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위기 경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
- (수요자 및 수요처 보호)
 - 학교급식 지원봉사 등 대면서비스가 진행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은 수요처와 협의 후 참여자별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등 발급 및 비치
 - ※ 건강진단 결과서, 결핵검진 등 발급 비용은 부대경비로 집행 가능(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 구비)
- (아동·청소년 및 학교대상 사업 유의사항)
 -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내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활동은 수혜 어린이에 대한 사고 발생 예방 등을 위해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에 맞게 운영
 - 이래 사업은 수요처에서 참여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안내하고 지원
 -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 ※ (근거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 (조회방법) 수요처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또는 참여자가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
 -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 아동 대상 사업
 -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 (조회방법) 수요처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또는 참여자가 직접 아동학대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
 - 범죄경력 조회:학교대상 사업
 - ※ (근거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 (조회방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 (장애인 관련시설 사업 유의사항)
 - 수요처 중 장애인 관련시설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활동하는 참여자에 대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필요를 안내하고 지원
 -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 (조회방법) 수요처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또는 참여자가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수행기관 또는 수요처의 장에게 제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참조)

관련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제10호 서식)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제12호의2 서식)
 -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지 제24호의2~3, 5~6 서식)
- (참여자 근로장려금 수급지원)
 - 수행기관은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의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행정 지원 가능
- (사업참여 제한)
 - 참여자가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희롱 및 성범죄 행위 등의 품위손상, 기타 수사기관에 의뢰된 범죄사건·사고 포함), 타인(수행기관 종사자 포함)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등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여노인과 면담, 개선요구 등 관련 조치를 실시, 조치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군·구청장 또는 수행기관장이 참여제한 가능
 - ※ 수행기관은 해당 노인의 사업 참여 중단 필요 사유를 시·군·구에 보고





사회서비스형 (노인역량활용사업) 사업운영

1. 목적 및 정의

2. 운영개요

3. 참여자 지위 및 의무

4. 운영방법

〈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일자리 추진단계별 절차 〉

	\ 포인의장일중시합 포인 글시의 구인인계를 될사 /	
단 계	운영 방법	운영 주체
사업시행 공고	□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활용하여 사업 시행 공고 - 공고 내용:사업개요, 노인역량활용사업 프로그램별 사업량, 수행기관 신청 절차 및 내용, 수행기관 선정 심사계획 등	시·군·구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 시·군·구는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수행기관별, 프로그램별 사업량 배정 * 사전에 시도별 사업량 배분과 신규 발굴 프로그램 관련 수요처 매칭 완료	시·군·구 → 수행기관
수요처 모집 및 선정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으로 제출, 수행기관은 검토하여 선정	수요처 →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	수행기관
사업계획 심사	□ 시·군·구(1차), 시·도(2차 최종) 사업계획 심사	시·군·구/시·도 → 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공고 - 사업유형별 신청 노인 1인당 <u>2개</u> 이내 □ 신청자의 자격 확인, 선발기준에 따라 수요처에 적합한 자 선발	시·군·구 수행기관
참여자 및 대기자 DB 관리	□ 참여자 및 수요처 정보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 대기자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등록·관리	수행기관 → 정보시스템
네기자 DD 쉰니	■ 내기자 포인될지나정보시스템 등록 전니	→ 성모시스템
근로계약 체결, 근무스케줄표 작성 및 교부	□ 수행기관(사용자)은 참여자(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근무 스케줄표 작성 및 교부	수행기관, 참여자
교육	□ 참여자 근무 시 필요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근무내용, 안전수칙 등)	수행기관
근무 실시	□ 참여자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업무 수행, 출근부 작성 □ 수행기관은 참여자 근로 감독 및 출근부 작성	수행기관, 참여자
급여 지급	□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근무내역(출근부) 확인 후 매달 급여 지급	수행기관 → 참여자
근무 종료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완료나 참여자의 근로 중단 희망 시 근무 종료	수행기관

1 목적 및 정의

-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정의)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운영개요

1 근로조건

- (참여자격) 65세 이상
 - ※ 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 60세 이상 참여 가능한 노인역량활용사업 프로그램 유형
 - □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 □ 시니어 컨설턴트
- □ 디지털 전문서비스
- □ 안전관리지원
- □ 공공행정업무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 장애인 서비스 지원(실버장애인돌봄 서포터즈, <u>발달장애인</u> <u>활동매니저, 장애인직업적응지원단</u>)
-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유아 언어발달촉진 지원)
- □ 노인 관련 시설 지원(경로당 급식지원사업)
- (운영기간) 10개월
- (참여자 근무시간) 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
 - (참여자 임금)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지급
 - ※ 단, 노인의 신체적 능력 고려하여 일 8시간 근무 초과 금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불가<u>하며, 이에 따른 급여는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집행</u>불가

2 예산지원 기준

- (인건비) 월 최대 634,000원
 - ※ 주휴수당, 연차수당 부대경비로 지급
- (기본급) 월 최대 634,200원(10,570원 × 60시간)
 - ※ 시간 당 단가 10,570원으로 계산 시, 연간 2천원(월 2백원 ×10개월) 인건비 부족분 발생, 해당 금액(연간 2천원 부족분)은 인건비 소진 후 마지막 달에 부대경비에서 전용하여 집행
- (부대경비) 1인당 연간 212.4만원
 - ※ 부대경비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로 사용 가능
 - ※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부족 시 노인공익활동사업 부대경비 활용 가능

3 프로그램 유형

유형(중분류)	프로그램(소분류)	프로그램 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 <u>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u> 보육교사 보조, 생활 및 돌봄지원 등
	온종일 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원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돌봄지원, 업무보조 등
	청소년 시설 지원	• <u>늘봄학교 지원사업, 특수학급돌봄매니저,</u> 방과 후 돌봄 및 학습보조, 업무보조 등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초등학교 아동돌봄(방과 후 돌봄, 학습보조, 수업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가정서비스 지원	• 한부모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설이용 안내, 업무보조 지원 등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지원	• 실버장애인돌봄 서포터즈 <u>, 발달장애인 활동 매니저. 장애인적업적응지원단</u> ,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노인 관련 시설 지원	• <u>경로당 급식지원사업</u> , 노인서비스 및 시설 이용안내 등 업무보조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업무보조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 시니어 소비피해예방지원, 취약 계층 교육지원 서비스(디지털, 인지지원 등), 시니어 학대피해 아동지킴이,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나눔자원관리,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시니어푸드뱅크 매니저, 어르신 건강리더, <u>무연고 및 취약계층 장례동행,</u> 시니어 주거복지 지원단

유형(중분류)	프로그램(소분류)	프로그램 내용
	안전관리지원	•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시니어 소방안전지원, 바다안전순찰대, 시니어 안전보건 가이드, 시니어 치안지킴이, 시니어 산림복지서비스 안전지기, 에너지 품질안전 파수꾼,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응급안전안심지킴이, 자동심장충격기관리단
	시니어 컨설턴트	•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공공전문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 시니어 산재·복지 가이드, 시니어 공항서포터즈, 시니어 북 딜리버리,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우체국행정업무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운영지원, <u>시니어 탐방 플러스</u> , 시니어연금가이드, 시니어 자살예방 상담원, 노인일자리 방역행정지원, 맑은물 지킴이, <u>시니어 공공의료가이드</u> , 시니어 119안전센터 서포터, 농업정책가이드, <u>산림자원보존사업단</u> , 생명나눔(장기기증·헌혈) <u>서포터즈</u> , 생태도센트, 전통시장 시니어지원단, 파크골프 러닝메이트 등
	디지털 전문서비스	• 미디어 전문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매니저, 보행로 정보수집 전문가, 시니어 교통안전데이터 조사단, <u>지역</u> 문화 기록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지원
기타		•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 2025}년 노인역량활용사업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전국화사업은 별도 안내에 따름

3 참여자 지위 및 의무

1 법적지위

-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
 - ※ 수행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준수

2 근로계약(근무스케줄표) 및 사회보험

- 수행기관은 기관여건 및 사업내용에 맞게 참여자와 「근로계약서」 및 「근무스케줄표」를 체결·작성하고 교부
 -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 근로계약기간, <u>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u>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사용자 양측 모두의 서명/날인 필요
 -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 변경 필요(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기간 등)
 - 근무스케줄표 작성기준
 - 월 근로시간은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5.1)을 포함하여 월 60시간 이내로 작성
 - 주 소정근로시간은 그 주의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 (5.1)을 포함하여 15시간 초과 불가
 -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초과하는 날 및 휴(무)일, 기타 근로가 없는 날은 반드시 휴무일로 지정
- 급여명세서 지급
 - 「근로기준법」제48조에 따라 급여항목 및 공제항목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3-3호] 노인역량활용사업 근로계약서

관련서식 > [3-6호] 노인역량활용사업 근무스케줄표

[3-8호] 노인역량활용사업 급여명세서

● 사회보험 가입

-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의무자인 수행기관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직장건강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1588-0075)를 통해 세부 내용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관련 참고사항 〉

그님	고용보험		
구분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65세 이상	미적용	적용	
	-	수행기관 100% 부담*	
60~64세	적용	적용	
	참여자·수행기관 각 50% 부담	수행기관 100% 부담*	

^{*} 수행기관 부담분은 부대경비로 집행

3 근로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의무

-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수행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각 1회. 연 1회 제출
 - ※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 안내-법인신고 안내-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참조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도 자격 유지 시 실업급여 적용 가능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업단 참여자가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으로 통보 받았을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허용(단, 관할지사로부터 공문 등을 수신하여 증빙)

4 운영방법

1 수요처 발굴 및 참여자 배치

- (수요처) ①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②취약계층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돌봄 단체 또는 기관
 - ※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해당 수요처의 장(대표), 수요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직원, 참여자 근무를 관리 또는 근무내용을 확인하는 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근로 불가(단, 지역 특성(농어촌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승인 시 활동 가능)
 - ※ (돌봄 단체 또는 기관) 돌봄 단체 또는 기관은 취약계층 지원과 돌봄 영역에 한정하여 수요처로 인정하고, 별도의 지자체 승인 절차 이행 필요(예. 노인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등)
 - ※ 지자체 승인시 관할 지자체 공문(해당 사업단, 별도 적용 사유 등) 근거 필요

신청 제외

-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 목적, 형태 등이 노인역량활용사업 수요처로 적합하지 않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기관이나 단체
- (수요처 발굴) 지자체는 지역 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수요 조사 진행(수요처 발굴 지원), 참여자 선발 및 배치 등 지원
- (신청방법)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관은 수행기관에 노인역량활용사업 서비스 신청서(수요처용)
 - ※ 수행기관은 선정된 수요처 현황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필히 입력

관련서식 > [3-4호] 노인역량활용사업 서비스 신청서(수요처용)

- 수행기관은 수요처를 선정하고 참여자 의사 등 반영하여 수요처 특성에 적합한 참여자 배치
 - 가족이 운영하는 수요처 및 가족을 수요자로 매칭·활동할 수 없음

기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참조)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형제자매를 원칙을 하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에 포함함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

2 참여자 근무관리

- 수행기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참여자의 근무 장소에서 업무 내용,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참여자 출근부를 관리해야 함
 - 수행기관 사정에 의해 참여자 근무현장 관리(출근부 확인)를 노인일자리 담당자에 위임할 수 있음
 - ※ 이 경우에도 수행기관은 참여자 근무현장을 정기 방문(월 1회 이상)하여 근무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참여자 출근부에 확인 서명하여야 함
 - 출근부 외에 수요처의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개인별 근무일지 (자체양식 활용) 작성·관리 가능
 - ※ 개인별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출근부는 필수 사항
- 출근부 확인자는 기관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자에 한하며 사업단 외 제3자(수요처 관계자 등)의 관리 금지
 - 출근부 확인자는 참여자의 매 근무 상황을 확인하되, 반드시 월 1회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 예시 '홍길동' 또는 '홍' 가능, 지장 또는 도장
- 참여자는 출근부 작성 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매 근무 시 참여자 자필 서명 또는 지장으로 출근부를 작성
 - ※ 예시 '홍길동' 또는 '홍' 가능, 도장 불가

관련서식 > [3-5호] 노인역량활용사업 월별 참여자 출근부

-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업무 관련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상습적인 불참, 타인(수행기관 종사자 포함)에게 폭언·폭행 또는 지각 및 근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장기간(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결근 30일 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남기고 「근로기준법」 및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중도포기) 가능(중도포기 처리자에 대해 중도포기 확인서 구비)
 - ※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중도포기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참여노인 면담 등 구체적인 경위파악 후 시정촉구 등 조치를 우선 진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 참여노인 대상 부적격 및 부정수급 사전교육, 현장 모니터링 등 근무관리 철저
-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을 모두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유급 휴가(3시간)를 부여하고, 참여노인이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휴가사용이 원칙)
 - 월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개근할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1일 3시간 유급휴가 부여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함
-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날은 사전에 대체근로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무스케줄표를 수정하여 근로일과 휴(무)일 대체 조정 가능

관련서식 ▶ [3-9호] 대체근로 동의서

경조사 관련 휴가는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휴가규정 등에 따라 (유급)휴가로 하며,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안내에 따름

기관 내 경조사 관련 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

- □ 경조사 관련 증빙서류(혼인신고서, 청첩장, 사망확인서 등)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고 결근을 승인받은 경우 근무한 것으로 봄
- (결혼) 본인 5일, 자녀·손자녀 3일
- (사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손자녀는 5일
 - ※ (예시) 월, 수, 금 근무의 경우 토요일 본인 결혼 시, 토~수 5일 적용하여 월요일, 수요일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
-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 후 활동 중단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중 30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 가능, 활동 중단 기준 초과 시 중도 포기 처리 및 대기자 또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 필요 시 병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기타 활동중단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 구비
 - ※ 활동 중단 시 무급(해당 기간 활동비 미지급)
 - ※ 활동 중 산재 발생에 따른 요양기간은 활동중단 기간(30일 이내)에 포함하지 않음

3 참여자 교육

- 수행기관은 활동에 필요한 소양,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및 사업별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
 - 소양교육 5시간(필수) 이상, 안전교육 6시간(필수) 이상, 직무교육 6시간(필수) 이상 운영
 - ※ 단,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하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소양교육 5시간(필수) 이상, 안전교육 6시간(필수) 이상, 직무교육 3시간(필수) 이상 실시 가능
 - ※ 법정의무교육은 관할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사업단별 필수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지침에 명시된 교육시간 외 추가적인 교육이수 필요(법정의무교육은 참여자 교육시간으로 인정됨)
 - ※ 참여자 교육 <u>및 간담회(회의)는</u>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문화활동·발대식<u>·평가회</u>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사업장은 교육이수 필요(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제외업종은 미해당)

구 분		14 8	
시 간	내 용 • 안전교육 6시간 이상(필수)을 포함하여 연간 17시간 이상 운영 - 참여 프로그램 개요, 활동방법, 기타 소양교육 등 자율편성 -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철저히 운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해	• 노인역량활용사업 이해 등	
	노년기의 이해	• 노년기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및 건강관리 • 노년기 사회참여의 의미 등	
	디지털 역량강화	• 디지털교육 개요 • 디지털 기초 및 문서작업 등	
소양교육	금융	• 금융사기 예방 및 디지털 금융 이해 등	
	성희롱 예방	• 성희롱 예방 및 사례 이해 등	
	인권교육	• 노인인권 이해 등	
	장애인인식개선	• 장애인인식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이해 •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이해 등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이해 등	
	안전사고 예방	• 사업단별 안전수칙, 사고발생 예방 요령 등	
직무교육	사업별 직무 내용 및 실습	• 사업별 직무내용 이해, 활동 및 근무관리의 이해 • 활동 직무 현장 실습 등	
기타교육	아동학대 예방 등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이해 등	

4 참여자 보수지급

- 보수기준 및 계산방법
 - 참여노인 월 보수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합하여 지급

구분	세부 내용					
기본급	월 소정	월 소정근로시간 중 실 근로시간(최대 60시간*) × 시급 10,570원				
주휴수당	월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45시간 미만	45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60시간
	금액	-	3시간 X 10,570원	6시간 X 10,570원	9시간 X 10,570원	12시간 X 10,570원
연차휴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일 경우에 한해** 3시간 휴가부여 (최대 10일(30시간))					
연차수당	(발생 연차휴가 시간 - 사용 연차휴가 시간) X 시급 10,570원					

-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60시간 산정
- ** 익일 및 익월 1일이 아닌, 월 60시간(개근) 근무여부를 확인한 시점
- ※ 다만, 지각, 조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 산정 및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이 없음
- ※ 월 근로시간에는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5.1)을 포함하되 시간외근로(연장근로 등)는 제외함
- ※ 월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개근할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1일 3시간 유급휴가를 부여(단, 해당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당시 재직자에 한함)
- ※ 근로관계 종료(참여완료, 중도포기 등) 시 연차수당 지급, 매월 지급 불가
 -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수행기관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를 반기 각 1회, 연 1회 제출

5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

- 배상책임보험 가입
 - 수행기관은 사업개시 전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사고발생 시 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처리
 - ※ 배상책임보험료 납부 시 사업단별 보험료 납부
 - 수행기관은 사고발생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알리고 관련 내용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 사업운영 → 사고발생 현황 메뉴 참조
 - ※ 배상책임보험 신청을 한 경우 승인/불승인 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재해발생 예방 활동 강화
 - 수행기관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6시간 이상) 실시, 산업안전 보건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참여자 근무 전후 이동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전 안전교육 등 관리 철저
- 재해발생 시 처리방법
 - 수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제출기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
 -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전자민원 등 ※ 미제출 시 1천5백만원 이하 과태료, 중대 재해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안전교육 시 참여노인에게 산재보험 처리 절차 안내
 - 수행기관은 재해 발생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알리고 관련 내용을 노인 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 사업운영 → 사고발생 현황 메뉴 참조
 - ※ 활동(근무) 중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u>사고발생일로부터</u> 7일(공휴일 포함) 이내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을 송부하고 조치계획 및 내용 등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중대한 사고 기준

- ① 활동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② 활동 중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진단결과 4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③ 활동 중 사고로 인해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인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 의사의 임상적 판단 하에 진단·확인된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이 때 의식 불명은 의식수준의 5단계 중 혼수(Coma) 상태
- ④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고
 - ※ 산재보험 신청을 한 경우 산재보험 승인/불승인 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노인일자리정보 시스템에 입력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필요
 - ① 참여자 활동·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 ② 참여자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 ③ 위해요소 확인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소 개선 조치
 - ④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 마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인 및 안전조치 가능
 - ① 사망 또는 중증 상해 안전사고 발생 사업의 안전사고 유형·원인 및 경위
 - ② 안전사고 사전 예방·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적절성에 관한 사항
 - ③ 참여자의 피해보상 청구 절차 준수 여부
 - ④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
 -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한 안전사고 등 확인 결과에 따라 참여자의 활동 중단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 가능
-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야외활동 및 작업 자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중점 관리
 - ※ 부대경비(사업비)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등 안전물품 교부 가능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세부 운영방안 별도 안내

- 야간근무(22시 이전)가 필요한 사업은 안전교육 실시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휴대용 랜턴 및 각종 식별장치 등 활용 가능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수행기관은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연 1회 1시간 이상) 등 「남녀고용평등법」준수

6 부대경비 집행관리

- (집행 가능 항목)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참여자), 팀장수당, 사업진행비, 비품구입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참여자 유류비 보조,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교육 참가비, 배상책임보험료, 참여자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 ※ 노인역량활용사업에 한하여 1개 이상의 사업(동일항목)에서 부대경비 통합 사용 가능
 - ※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부족 시 노인공익활동사업 부대경비 활용 가능
- (집행 불가 항목) 기관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관운영성 경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기관장 출장비, 참여자 교통비, 기관 차량보험료 및 수리비 등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교육 및 행사 참석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예외 지급

〈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

항목	유의사항
피복비	소속감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한 참여자 활동복, 조끼, 모자 등 구입에 집행 가능 마스크 등 참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용품 구입에 집행 가능 찌복비 구매물품의 경우 수행기관 보관 및 관리가 원칙이나, 안전확보를 위한 용품의 경우 참여자에게 배부 가능
회의비	참여자 및 수요처 간담회, 지자체 및 수행기관 간담회, 사업 평가회 등에 집행 가능하며 회의 1회당 참석자(참여자, 수요처, 노인일자리 실무자 및 담당 부서장, 노인일자리 담당자, 기관장) 1인당 20,000원 이내에서 지출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현수막, 문구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 가능 재관료는 실비 별도 집행 동일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시간을 구분·운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 집행가능* * 단, 급여가 지급되는 교육 또는 회의 운영 시 회의비 내 식비 편성 불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 집행 가능

항목	유의사항
교육비 (참여자)	• 참여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강사료, 대관료, 현수막구입, 문구 및 교육진행을 위한 물품구입 등 집행 가능 ※ 급여가 지급되는 교육 진행 시 식비 편성 불가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 집행 가능
팀장수당	• 월 4만원 이내,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조정지급 가능
문화 활동비	•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노인일자리 관련 행사(노인일자리 주간 등)를 위하여 참여자 및 노인일자리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자, 기관장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체험비, 진행물품(현수막, 구급약 등) 등 6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참여자 인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문화활동에 동행하는 기관의 일반직원, 자원 봉사자 등 편성 가능
출장비	 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 개발 방문 시, 또는 동 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선진지 견학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참석 시 집행 가능 ※ 출장비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함 ※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출장 시 해당 금액과 출장비의 중복지급 불가함 ※ 출장비 집행 가능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 및 부서장, 노인일자리 담당자임(기관장 제외).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지급 가능
비품 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승인 후 집행 ※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은 활동 진행비에 해당 ※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사업계획서에 미반영하였거나 승인된 사업계획 외 추가적인 비품구입 시 변경심사 또는 지자체 승인
교육 참가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교육 참가비로 집행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 단, 교육을 포함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과정, 예산집행계획(강사료, 대관료, 교육진행비 등)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교육 총괄 부서와 협의·승인 후 집행 가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15만원이내에서 집행 가능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환수조치) 단순 취미교육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교육에 참가하거나, 교육 미수료시에는 환수조치 가능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 동 사업 관리를 위해 기관차량 이용 시 예산범위 내 집행 가능 ※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 운행일지 및 출장 신청서 등 비치 ※ 유류비 지출 세부 사항은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항목	유의사항		
참여자 유류비 보조	•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해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등을 진행하는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 ※ 팀장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팀장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 ※ 참여자 중 팀장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관의 실무자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이 개인차량을 이용해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등 진행하는 경우는 출장비 항목으로 집행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 기관 부대경비 범위 내 연중 탄력적으로 집행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총액 중 인당 2,829천원(확정내시 인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에 한해 지급 가능 그 외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경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사회보험료 부족분, <u>경력수당*</u>,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2025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안) 		
	경력 신규 ~ 2년 미만 2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경력수당(안)) = 50천원 이내/월 100천원 이내/월 ※ 수행기관의 장은 기관예산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경력수당		
	집행 가능(단, 해당 수행기관에서의 연속된 경력에 한해 산정)		
사업진행비	•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회계감사 비용,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등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7 수요처 관리 및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노인역량활용사업 수요처 정보를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필히 입력
- 대면서비스가 진행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은 수요처와 협의 후 참여자별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등 발급 및 비치
 - ※ 건강진단결과서, 결핵검진 등 발급 비용은 부대경비로 집행 가능(관련 영수증 등 증빙 구비)
-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관대상 지역 내 사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홍보 추진

- 수요처 대상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사업 운영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 정기적 간담회 실시, 만족도 조사 및 담당자 유선 연락 등을 활용해 서비스 내용, 참여자 인권보호(수요처 행동강령 준수)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의견수렴 등)하고 개선 필요 사항은 사업 운영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 (학교·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사업 유의사항)
 - 이래 사업은 수요처에서 참여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 수행기관은 이를 안내하고 지원
 -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 ※ (근거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 ※ (조회방법) 수요처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또는 참여자가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
 -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아동 대상 사업
 - ※ (근거법령)「아동복지법」제29조의3
 - ※ (조회방법) 수요처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또는 참여자가 직접 아동학대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
 - 범죄경력 조회: 학교대상 사업
 - ※ (근거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 (조회방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 수행기관 및 사업 수요처가 장애인 관련기관
 - ※ (근거법령)「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시행령 제36조의2, 시행규칙 43조의3
 - ※ (조회방법) 장애인관련기관(수행기관, 수요처)의 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또는 참여자가 직접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

구분	조회주체*	조회방법	비고
수행기관 소속 종사자 등 (지자체 포함)	수행기관장	• 수행기관 운영자는 소속 근로자(참여노인 포함)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범죄 경력 조회 확인	지자체 직접사업 수행 시, 지자체 담당자도 포함
참여노인	해당 수요처 운영자 (기관장)	• 수요처 운영자는 참여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 확인	-

^{*} 다만 취업자 등이 경력조회 회신서를 장애인 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조회한 것으로 봄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9호·제10호 서식)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신청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제12호의2 서식)		

- 관련서식 기관 운영자 및 취업자 등의 경력조회 요청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지 제24호의2 서식)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지 제24호의3 서식)
 - 본인 경력조회 요청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지 제24호의5 서식)



민간형 사업운영

I. 공동체사업단

Ⅱ.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공동체사업단

〈 공동체사업단 추진단계별 절차 〉

단 계	운영 방법	운영 주체
사업시행 공고	□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활용하여 사업 시행 공고 • (공고내용) 사업개요, 공동체사업단 사업유형별 사업량, 수행기관 신청 절차 및 내용, 수행기관 선정 심사계획 등	시·군·구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 시·군·구는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수행기관별, 사업량 배정	시·군·구 →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 수행기관은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 및 판매 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후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 신청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 내 부속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 등록 <u>중</u> 이 없는 경우만 한함)	수행기관 → 지자체
참여자 등 모집 공고	□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공고	시·군·구 수행기관
신 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등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으로 제출 - 사업유형별 신청 노인 1인당 2개 이내 ※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모집공고 확인 가능	참여자 → 수행기관
대상선정	□ 수행기관은 참여 신청자의 참여자격 확인,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자 선발, 수요처 발굴·선정	수행기관
계 약	□ 수행기관은 참여자와 근로(도급)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근로(도급)계약서 작성	수행기관 → 참여자
참여자 및 대기자 DB 관리	□ 참여자 및 수요처·수요자 정보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 대기자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등록·관리	수행기관 → 정보시스템
교육	□ 참여자 활동 시 필요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활동방법, 안전 수칙 등)	수행기관
근로 실시	□ 참여자 근로(도급업무) 실시, 근무대장 작성	참여자 → 수행기관
임금 지급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근무내역(도급납품량) 확인 후 매달 임금(도급보수) 지급	수행기관 → 참여자
활동 종료	□ 근로(도급)계약서상 활동기간 완료나 참여자의 활동 중단 희망 시 활동 종료	수행기관

1 목적 및 정의

- (목적)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정의)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u>하며 참여하는</u> 노인이 둘 이상인 사업단
- (공동체사업단 수행기관)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중 지방자치 단체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곳

2 운영개요

1 지원요건

- <u>노인에 의한 상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u> <u>할 것</u>
- 공동체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일 것
-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계획 또는 서비스 제공 계획과 예산 운용 계획이 수립
 되어 있을 것
- <u>그 밖에 공동체사업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u> <u>요건을 갖출 것</u>

2 근로조건

- (참여자격) 60세 이상
- (운영기간) 연중참여 원칙
- (참여자 근무시간) 당사자 간 근로(도급)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
 -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무 준수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22시 이전 및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
 - ※ 근로계약 시 토·일요일, 공휴일을 근로일로 할 것인지, 휴(무)일로 할 것인지, 임금수준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계약으로 정함
 - ※ 도급계약 시 적정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의 취지상 노동법상 근로계약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함

3 예산지원 기준

- (사업비) 1인당 연간 267만원 지원
 - 정부보조금 외 사업 수익을 통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단에 우선적 예산 지원
 - ※ 지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공동체사업단 물량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자체가 운영비 일부 지원 가능

4 사업유형

사업유형	세부 사업내용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카페, 편의점 등)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운송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
기타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화·서비스 제공

※ 운송사업(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도급계약 선택 가능

3 참여자 지위 및 의무

※ 한 개 사업단에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혼재 불가

근로계약 시

1 법적지위

- 사업 참여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
 - ※ 수행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준수

② 근로계약 체결 및 사회보험 가입·납부

- 수행기관은 기관여건 및 사업내용에 맞게「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참여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
 -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 근로계약 기간, <u>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u>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u>및 근로일별 근로시간</u> 등에 관한 사항 ※ 월 지급 임금의 환산 시간급 임금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기준금액(<u>'25년 10.030원</u>) 이상
 - 임금에 관한 사항은 참여자와 협의하여 결정 후 서면으로 명시 ※ 근로자, 사용자 양측 모두의 서명/날인 필요
 -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 변경 필요(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기간 등)

관련서식 > [4-4호] 공동체사업단 근로계약서

- 사회보험 가입
 -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의무자인 수행기관은 관련법상 적용 제외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1588-0075)를 통해 세부 내용 확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참고사항〉

78	고용보험		
구분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65세 이상	미적용	적용	
	-	수행기관 100% 부담*	
60~64세	적용	적용	
	참여자·수행기관 각 50% 부담	수행기관 100% 부담*	

- * 수행기관 부담분은 사업비로 집행
-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도 자격 유지 시 실업급여 적용 가능
-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업단 참여자가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으로 통보 받았을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허용(단, 관할지사로부터 공문 등을 수신하여 증빙)

● 급여명세서 지급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급여항목 및 공제항목 등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③ 근로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의무

-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수행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각 1회, 연 1회 제출
 - ※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 안내-법인신고 안내-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참고

도급계약 시

1 법적지위

● 사업 참여자는 사업(장)에 민법상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에 해당 ※ 수행기관은 민법상 도급인에 해당

② 도급계약 체결 및 상해보험 가입·납부

- 수행기관은 기관여건 및 사업내용에 맞게「도급계약서」를 마련하여 참여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를 교부
 - 도급계약서 명시사항
 - 납품량, 도급보수 등
 - 납품량과 이에 따른 도급보수에 관한 사항은 참여자와 협의하여 결정 후 서면으로 명시 ※ 수급인의 서명 날인 필요
- <u>사업계획 심사 시, 도급사업단으로 승인 받은 사업단 참여자는 모두 '도급계약'으로만</u> 운영 필요. 한 개 사업단에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혼재 불가

관련서식 > [4-5호] 공동체사업단 도급계약서

- 상해보험 가입
 - 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 ※ 상해보험료 납부 시 사업단별 보험료 납부
 - 단,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택배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 참조)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도 의무가입해야 함

3 사업소득 신고 및 납세의무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3%(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4 운영방법

1 참여자 근무 관리

근로계약 시

- 수행기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참여자의 근무 장소에서 업무 내용,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직접 지휘·감독해야 함
 - 수행기관 여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담당자, 전담보조인력, 팀장에 위임 가능
 - ※ 단, 이 경우에도 수행기관은 참여자 근무현장을 정기 방문(주 1회 이상)하여 근무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참여자 출근부에 확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참여자 출근부는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출근부 작성 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참여자는 매 근무 시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지장 날인으로 출근부 작성
 -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수요처 확인이 일부 필요한 경우, 출근부와 별도로 개인별 근무일지(양식은 자체적으로 구성 가능) 추가 작성·관리 가능
 - ※ 예시 '홍길동' 또는 '홍' 가능, 도장 불가

관련서식 ▶ [4-6호] 월별 참여자 출근부

- 출근부 확인자는 기관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자, 전담보조인력, 팀장에 한하며, 사업
 단 외 제3자(수요처 관계자, 경로당 지회장, 이장 또는 통장 등)의 관리 금지
 - 출근부는 매 근무 확인 시 반드시 출근부 확인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 예시 '홍길동' 또는 '홍' 가능, 지장 또는 도장
-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업무 관련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상습적인 불참, 타인(수행기관 종사자 포함)에게 폭언·폭행 또는 지각 및 근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장기간(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결근 14일 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남기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중도포기) 가능(중도포기 처리자에 대해 중도포기 확인서 구비)
 - ※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중도포기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참여노인과 면담 등 구체적인 경위 파악 후 시정촉구 등 관련 조치를 우선 진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u>일요일 제외</u>)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함
 - ※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예외 가능(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2항)
 -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가능(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함
-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날은 사전에 대체근로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무일
 조정 가능
 - ※ 주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주(1주) 안에서 주휴일과 근로일 대체가 이루어져야 함.

관련서식 > [4-17호] 휴일 대체근로 동의서

- 경조사 관련 휴가는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휴가규정 등에 따라 (유급)휴가로 하며,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안내에 따름
- 道 기관 내 경조사 관련 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
 - □ 경조사 관련 증빙서류(혼인신고서, 청첩장, 사망확인서 등)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고 결근을 승인받은 경우 근무한 것으로 봄
 - (결혼) 본인 5일, 자녀·손자녀 <u>3일</u>
 - (사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손자녀는 5일
 - ※ (예시) 월, 수, 금 근무의 경우 토요일 본인 결혼 시, 토~수 5일 적용하여 월요일, 수요일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
-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 후 활동 중단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중 14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 가능, 활동 중단 기준 초과 시 중도 포기 처리 및 대기자 또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중도포기 처리자에 대해 중도포기 확인서 구비)

- ※ 필요 시 병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기타 활동중단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 구비
- ※ 활동 중단 시 무급(해당 기간 활동비 미지급)
- ※ 활동 중 상해나 산재 발생에 따른 요양기간은 활동 중단 기간(14일 이내)에 포함하지 않음

도급계약 시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근무 장소에서 업무 내용,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직접 지휘· 감독 하여서는 안 됨
- 참여자의 출, 퇴근시간을 강제하거나 수행장소 등 제한 불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적용, 근로일 또는 (유급)휴일 지정 및 경조사로 인한 결근 인정 불가
-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 후 활동 중단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중 14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이내 활동 중단 신청 가능, 활동 중단 기준 초과 시 중도포기 처리 및 대기자 또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 필요 시 병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기타 활동중단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 구비
 - ※ 활동 중단 시 무급(해당 기간 활동비 미지급)
- 도급보수 지급 시 타 유형 근로시간 등과 형평성 고려 필요
- 수행기관은 유의사항 이외에도 도급 상황에 맞는 운영 필요
 - 도급계약서의 체결만으로 도급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도급관계 운영 (참여자 운영관리)을 준수하여야 함

2 참여자 교육

- 수행기관은 활동에 필요한 소양,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및 사업별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실시
 - 소양교육 2시간(필수) 이상, 안전교육 6시간(필수) 이상, 직무교육 4시간(필수) 이상 운영
 - ※ 필수교육[소양교육 2시간, 안전교육 6시간, 직무교육 4시간] 및 직무 관련 필수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보수지급 사유로 인정
 - ※ 법정의무교육은 관할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사업단별 필수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지침에 명시된 교육시간 외 추가적인 교육이수 필요(법정의무교육은 참여자 교육시간으로 인정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사업장은 교육이수 필요(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제외업종은 미해당)
 - ※ <u>참여자 필수교육 및 간담회(회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문화활동·발대식·평가회 등은</u>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구 분	내 용		
시 간	• 안전교육 6시간 이상(필수)을 포함하여 연간 12시간 이상 운영 - 참여 프로그램 개요, 활동방법, 기타 소양교육 등 자율편성 -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철저히 운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해	• 공동체 사업단 이해 등	
	노년기의 이해	노년기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및 건강관리노년기 사회참여의 의미 등	
	디지털 역량강화	• 디지털교육 개요 • 디지털 기초 및 문서작업 등	
소양교육	금융	• 금융사기 예방 및 디지털 금융 이해 등	
	성희롱 예방	• 성희롱 예방 및 사례 이해 등	
	인권교육	• 노인인권 이해 등	
	장애인인식개선	• 장애인인식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이해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이해 등	
01470	산업안전보건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이해 등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 사업단별 안전수칙, 사고발생 예방 요령 등	
직무교육	사업별 직무 내용 및 실습	사업별 직무내용 이해, 활동 및 근무관리의 이해 활동 직무 현장 실습 등	
기타교육	아동학대 예방 등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이해 등	

●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한 보수교육 실시

3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

- 재해발생 예방활동 강화
 - 수행기관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6시간 이상) 실시, 산업안전 보건관리 등「산업안전보건법」준수
 - 참여자 근무 전후 이동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전 안전교육 등 관리 철저
- 재해발생 시 처리방법
 - (근로계약시) 수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수행기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제출기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
 -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전자민원 등 ※ 미제출 시 1천5백만원 이하 과태료, 중대 재해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산재보험 신청을 한 경우 산재보험 승인/불승인 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노인일자리정보 시스템에 입력
 - (도급계약 시) 수행기관은 상해보험 의무 가입, 사고발생 시 가입된 상해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단,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및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택배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 참조)하여야 하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재해 발생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노인 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야외활동 및 작업 자제
 - 활동(근무) 중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u>사고발생일로부터</u> 7일(공휴일 포함) 이내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을 송부하고 조치계획 및 내용 등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입력

중대한 사고 기준

- ① 활동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② 활동 중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진단결과 4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③ 활동 중 사고로 인해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인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 의사의 임상적 판단 하에 진단·확인된 의식불명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 이 때 의식불명은 의식수준의 5단계 중 혼수(Coma) 상태
- ④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고
-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필요
 - ① 참여자 활동·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 ② 참여자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 ③ 위해요소 확인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소 개선 조치
 - ④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 마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인 및 안전조치 가능
 - ① 사망 또는 중증 상해 안전사고 발생 사업의 안전사고 유형·원인 및 경위
 - ② 안전사고 사전 예방·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대응조치에 대한 시의성·적절성에 관한 사항
 - ③ 참여자의 피해보상 청구 절차 준수 여부
 - ④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
 -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한 안전사고 등 확인 결과에 따라 참여자의 활동 중단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조치 가능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중점 관리
 - ※ 사업비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등 안전물품 교부 가능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세부 운영방안 별도 안내
-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위기 경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
- 야간근무(22시 이전)가 필요한 사업은 안전교육 실시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휴대용 랜턴 및 각종 식별장치 등 활용 가능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수행기관은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연 1회 1시간 이상) 등 「남녀고용평등법」주수

4 공동체사업단 전담 보조인력, 전문인력 관리

- 공동체사업단 전담 보조인력 운영
 - 공동체사업단 참여 노인 중 행정능력이 있는 노인을 선발하여 일반 사업 참여 노인의 임금과 근무시간을 적용받고, 공동체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배치 가능
 - 주요업무
 - 공동체사업단 행정지원 업무 및 참여 노인 관리
 - 기타 공동체사업단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 배치기관: 수행기관(사업 직접수행 시·군·구 포함)
 - 배치기준 : 참여자 10명 이하 1명, 11인~30인 이하 2명, 31인~50인 이하 3명, 51인~100인 이하 4명, 101인 이상 5명
 - 인원선발 및 예산지원 기준
 - 선발기준 : 해당 공동체사업단에 참여노인 중 행정관리 능력이 있는 자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당 사업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지자체 승인 후 참여)
 - 근무조건 : 공동체사업단 참여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해당 사업 기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 초과 지급 가능
 - ※ 초과근무수당 지급 인정 시간은 해당 사업 만근시간의 50% 이내
 - 에시 : 월 만근시간을 20시간으로 규정하여 근로하는 사업단의 경우 전담보조인력의 최대 초과근무 시간은 월 10시간까지이며 사업비 내에서 초과된 시간만큼 가산수당(시간급 150%)을 포함하여 지급
 - ※ 전담보조인력은 근무일지 별도 작성 및 비치 필수
- 전문인력 고용
 - 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또는 경력자 고용 가능

- 참여자격: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전문인력은 공동체사업단 참여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고용 가능
- 고용기준
 - (운영규정) 사업단 운영규정에 구체적 참여 기준 명시 및 참여노인 2/3 이상 서면 동의 필요
 - (승인규정)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업단은 운영규정을 충족한 후 해당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반드시 공문 기안하여야 하며, 승인 후 참여 가능)

5 사업단 관리

1 사업자 등록

- 신규사업단 : 사업승인 이후 예산지원시점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 모법인, 수행기관이나 사업단("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단위로 사업자 등록
 - 개인단위로 사업자등록 시 예산보조액에 해당하는 만큼 이행보증보험을 발급하거나, 수행기관의 보증확약서 구비
 - ※ 이행보증보험료는 보조금으로 납부 불가
- 계속사업단 : 사업자등록 의무화

관련서식 > [4-16호] 수행기관 보증확약서

2 운영규정

- 수행기관에서는 아래 필수규정을 포함하여 사업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등을 명시한 '사업단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필수규정: ① 참여자 업무 유형 및 세부내용 ② <u>사업단 총회 구성 및 운영</u> ③ 근무 체계 및 시간 ④ 임금지급 기준 ⑤ 수익금 관리기준 등

관련서식 ▶ [4-10호] 공동체사업단 운영규정

- '사업단 운영규정'은 사업개시 전 수행기관에서 초안을 작성(신규사업에 한함)하고,
 모든 사업단은 사업시작일 기준 15일 이내(신규사업) 또는 1월 이내(계속사업) 참여자 총회를 통해 사업단 운영규정을 확정함
- 수행기관은 '사업단 운영규정'의 최초 확정 및 변경 시 사전, 사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 수익금 관리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변경 시에는 참여노인 2/3 이상 동의 필요

3 자산 관리

- 자산 정의
 - 해당 사업단 운영을 위해 예산(보조금, 수익금 및 적립금)으로 지출하여 구입한 유형·무형의 재산(가구, 사무기기, 기계장비, 유가 증권 등)
- 자산대장 작성
 - 수행기관은 자산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함
 - ※ 자산 미보유 시 작성 제외
 - 자산대장의 변동내역은 분기별로 기관장의 공식 확인(결재) 받음

관련서식 > [4-13호] 공동체사업단 자산대장

- 자산 처리
 - 사업단 중단 또는 종료 시 해당 사업단의 자산대장상 구입 연도로부터 3년차 미만 자산은 지자체로 반환을 원칙, 해당 지자체는 반환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역 내 타 공동체사업단에 이전 처리(3년차 이상 자산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원재료, 자산 중 계약에 따른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은 매각 또는 계약 해지 후 현금화하여 정산
 - ※ 사업시작 연도에 관계없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사업단에 소급 적용
 - 지자체는 반환 자산을 지역 내 타 공동체사업단에 이전·이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우선권 부여
 - 지자체는 타 사업단 이전 및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한해서는 타 지역 지원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해당기관에 처리를 일임

-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조례)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처리

● 불용품의 처리

- 수행기관의 장은 자산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함
- 위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사업단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함

4 예산 관리

• 사업비 관리

- (집행 가능 항목) 참여자 인건비, 참여자 사회보험료, 팀장 수당, 전담보조인력수당,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전문인력 인건비,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비품구입비, 회의비, 피복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참여자교육비, 교육참가비,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참여자 유류비 보조, 홍보비, 공공요금, 사업단 보험료, 세금, 사업진행비, 사업단 임차료 등
- (집행 불가 항목) 기관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관운영성 경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기관장 출장비, 참여자 교통비, 기관 차량보험료 및 수리비 등
 - ※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지급 가능
 -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항목에 한하여 타 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부대 경비 통합사용 가능. 단, 공동체사업단 간 통합사용 불가

〈 공동체사업단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항목	세부 기준
참여자 인건비	• 공동체사업단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사업단별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정부보조금은 월 25만원, 연 250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
참여자 사회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도급계약)상해보험료 등 집행 ※ 4대 보험료 참여자 개인부담금에 대해 사업단에서 대신 납부 가능 ※ 근로계약의 경우, 산재보험 외 상해보험 등 추가 가입 시 보조금 집행 불가
팀장 수당	• 월 4만원 이내,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조정지급 가능 ※ 팀장수당, 전담보조인력 수당은 중복지급 불가
전담보조인력수당	• 월 만근시간의 50%까지 초과근무 수당 지급
전문인력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용한 전문인력 인건비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집행
재료비	•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료나 완제품 구입
시설투자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 시설 등
장비구입비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 구입 ※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사용 가능 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지자체 재산으로 사업단에서 관리하며,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함
비품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해당 사업단 사업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 ※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은 사업진행비에 해당 ※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사업계획서에 미반영하였거나 승인된 사업계획 외 추가적인 비품구입 시 변경심사 또는 지자체 승인
피복비	 소속감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한 참여자 활동복, 조끼, 모자 등 구입에 집행 가능 마스크 등 참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용품 구입에 집행 가능 ※ 피복비 구매물품의 경우 수행기관 보관 및 관리가 원칙이나, 안전확보를 위한 용품의 경우 참여자에게 배부가능
교육비 (참여자)	참여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강사료, 대관료, 현수막구입, 문구 및 교육진행을 위한 물품구입 등 집행 가능 ※ 보수가 지급되는 교육 진행 시 식비 편성 불가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 집행 가능
회의비	• 참여자 및 수요처 간담회, 지자체 및 수행기관 간담회, 사업 평가회 등에 집행 가능하며 회의 1회당 참석자(참여자, 수요처, 노인일자리 실무자 및 담당 부 서장, 노인일자리 담당자, 기관장) 1인당 20,000원 이내에서 지출

항목	세부 기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현수막, 문구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 가능 ※ 대관료는 실비 별도 집행 ※ 동일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시간을 구분・운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 집행가능* * 단, 급여가 지급되는 교육 또는 회의 운영 시회의비 내식비 편성 불기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 집행 가능	
문화활동비	•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노인일자리 관련 행사(노인일자리 주간 등)를 위하여 참여자 및 노인일자리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 기관장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체험비, 진행물품(현수막, 구급약 등) 등 6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참여자 인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문화활동에 동행하는 기관의 일반직원, 자원봉사자 등 편성 가능	
홍보비	• 제품 포장, 간판 제작 등 사업단 홍보 또는 수요처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홍보비 집행 가능 ※ 기관 홍보비 집행 불가	
사업단 임차료	• 사업단이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보증금 및 권리금 집행 불가	
출장비	• 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 개발 방문 시, 또는 동 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선진지 견학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참석 시 집행 가능 ※ 출장비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함 ※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출장 시 해당 금액과 출장비의 중복지급 불가함 ※ 출장비 집행 가능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 및 부서장, 노인 일자리 담당자임(기관장 제외).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지급 가능	
교육참가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교육 참가비로 집행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 단, 교육을 포함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과정, 예산집행계획(강사료, 대관료, 교육진행비 등)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교육 총괄 부서와 협의·승인 후 집행 가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15만원이내에서 집행 가능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환수조치) 단순 취미교육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교육에 참가하거나, 교육미수료 시에는 환수조치 가능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동 사업을 위해 기관차량 이용시 예산범위 내 집행 가능 ※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 비치 ※ 유류비 지출 세부 사항은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0

항목	세부 기준		
참여자 유류비 보조	• 전담보조인력 또는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 (전용카드 사용, 전담보조인력 수당 또는 팀장수당과 중복수혜 가능) ※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전담보조인력 및 팀장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 ※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개인차량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교통비)로 지급		
공공요금 (해당 사업단)	• 사업단이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되어 사업단-기관의 공공요금을 명확히 구분 납부 가능한 경우, 공공요금 집행 가능 ※ 사업단이 기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되어 공공요금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화요금에 한해 사업비 내 탄력 집행 가능		
사업단 보험료	• 사업단 화재보험, 차량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개별가입 및 집행 ※ 차량보험은 사업단 자산대장상 등록된 차량에 한함(기관 차량 불가)		
세금	•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 사업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은 납부 불가 ※ 사업단 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집행 불가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공동체사업단 사업비 총액 중 인당 2.829천원(확정내시 인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에 한해 지급 가능 그 외 연 267만원 중 인건비로 사용 가능한 상한액(연 250만원)을 제한, 17만원의 5% 이내로 활용 ※ 사회보험료 부족분, <u>경력수당*,</u> 연차수당, 기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2025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안) 경력 신규 ~ 2년 미만 2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경력수당(안)) 중 3연수당(안)) ※ 소행기관의 장은 기관에산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경력수당 		
사업진행비	집행 가능(단, 해당 수행기관에서의 연속된 경력에 한해 산정) •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회계감사 비용,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등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수익금 관리

- 수익금 집행은 보조금 집행 원칙을 준용하며, 사업단 운영규정에 사용기준을 명시 해야 함
- 수익금은 참여노인 배분(인건비)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비·재료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개선비(단, 참여노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로 사용할 수 있음
 -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비 연 2회 지급가능(각 월 급여의 20% 이내)
- 참여노인에 대한 기념품(명절 선물 등) 지급 시 1인당 연 10만원 이내로 사용
- 기관차량을 사업단 전용차량으로 운영규정 등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경우(단, 참여 노인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에 한해 기관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집행 가능
- 발생 수익금은 사업단 별로 독립된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야 함
- 재투자를 위한 자립준비 적립금은 필요 한도 내에서 최소화하고, 계속사업 추진 시 이월적립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 계획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 지자체에 보고
- 사업 중단 시 적립금(수익금)은 해당 적립(수익발생) 연도의 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함 ※ 노인친화기업·기관 전환으로 인한 사업 종결 시 초기투자비로 사용 가능

5 성과관리

- 월별 실적 관리
 - 수행기관은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서를 매달 10일에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관련서식 > [4-12호] 공동체사업단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

- 분기별 정산보고
 - 수행기관은 분기별 1회 시·군·구로 사업단 정산보고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 사업 종결 보고
 - 수행기관은 사업중단(폐업) 전 사전신고(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입력) 및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확인을 통해 종결 진행

-0

- 수행기관은 사업단의 중단 또는 연 사업 종료 1개월 내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매출대장, 자산대장 등)와 함께 지자체에 보고
 - ※ 사업 중단 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내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사업 기간 수정 및 중단 사유 입력 필수
- 지자체는 보고서 내 보조금 및 수익금 등의 정산내역, 적립금의 발생 및 처리내역, 자산 및 재고 현황 등을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수행기관은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1월 말)

● 성과 관리

- 평균임금, 참여기간 등 사업단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수행기관은 인센티브 지원, 부진 사업단(3년차 이상)은 예산지원 중단 검토
- 노인친화기업·기관 설립
 - 공동체사업단으로 운영하던 사업단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노인친화기업·기관의 별도 지침에 따름

6 수요처 관리 및 유의사항

- 수행기관은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수요처가 있는 경우 수요처 정보를 노인일자리정보
 시스템에 입력 필수
 - ※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가
- 대면서비스가 진행되는 사업 수행기관은 수요처와 협의 후 사업 참여자별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및 비치
-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관대상 지역 내 사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등 사업홍보 추진
 - 정기적 간담회 실시, 만족도 조사 및 담당자 유선 연락 등을 활용해 서비스 내용, 참여자 인권보호(수요처 행동강령 준수)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의견수렴 등)하고 개선 필요 사항은 사업 운영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 (학교 및 아동, 장애인 대상 사업 유의사항)
 -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침 준용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추진단계별 절차 〉

단 계	운영 방법	운영 주체
사업시행 공고	□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활용하여 사업 시행 공고 • 공고 내용: 사업개요,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량, 수행기관 신청 절차 및 내용, 수행기관 선정 심사계획 등	시·군·구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 시·군·구는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수행기관별 사업량 배정	시·군·구 →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 수행기관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준비후 심사 신청 •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심사·승인	수행기관 → 지자체, 보건복지부
참여자 등 모집 공고	□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공고	수행기관
취업상담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취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수행기관은 상담 실시	참여자 → 수행기관
지역자원 조사	□ 수행기관은 구인처 발굴을 위해 지역의 일자리 직종 및 구인현황 파악(유선조사, 방문조사 등)	수행기관
구직자·구인처 관리	□ 수행기관은 취업 지원 신청서 및 구인신청서를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에 등록	수행기관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 수행기관은 동행면접 등 알선을 실시하고, 취업연계 후 고용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수행기관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민간보조)은 민간보조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운영안내 참조

1 목적 및 정의

- (목적)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정의)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구직자)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60세 이상인 자
 - (구인처)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참여자) 구직자 중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인 자
 - (참여기업) 구인처 중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등
- (유영 주체별 역할)
 - (수행기관)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 관리, 사업운영계획서 수립 및 시행, 참여자 교육 실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참여자 및 참여기업 사후관리 및 결과보고 등
 - (참여기업)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및 근태관리, 급여 지급, 사회보험 가입 및 관리, 근로자 보호 및 산업안전관리 시행 등

2 운영개요

- 1 운영기간 및 근무시간
- (운영기간) 연중
- (참여자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간에 따름

2 예산지원 기준

- 예사지원 기준
 - 1인당 연간 15만원, 수행기관별 사업물량은 최소 100자리 이상
 - 지자체별 미배정 물량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배정 가능
 - ※ 단,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100자리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
 - ※ 예산집행 기준: 1인당 연중 10일 이상 취업 또는 1인당 연중 50만원 이상 급여 발생 시 15만원 집행, 1인당 연중 10일 미만 취업 및 1인당 연중 50만원 미만 급여 발생 시 5만원 집행
 - ※ <u>1년 이상 동일기업 내 장기취업유지자의 경우 위탁운영비 50%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예산</u> 등으로 지원 가능
 - ※ 사업예산 별도 통장으로 구분계리

3 주요 직종분류

•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에 따름

부록 4 ▶ 한국고용직업분류

3 운영방법

1 취업상담

- 참여자격: 60세 이상자로 취업상담 후 취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한 자
 - 기본상담: 수행기관은 경청의 태도로 구직자와 라포* 형성
 - * 라포(rapport):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함 또는 신뢰관계
 - 심층상담: 수행기관은 구직자의 구직희망 정보를 파악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구인처 정보제공 및 연계
- 수행기관은 참여희망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건강상태, 적성 및 희망 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 실시
 - 수행기관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중복 참여(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 시 중도 탈락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2 구직자 관리

- 수행기관은 취업 지원 신청서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
 - 수행기관은 취업 지원 신청서의 필수사항 등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
 - 취업 지원 신청서는 매년 작성·제출 및 구직자 취업 시 취업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참여자가 다른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중복 참여 금지
 - 일시적·간헐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참여자가 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근무일이 겹치지 않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과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중복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한 의사 파악 후 해당사업에는 계속 참여 토록 하는 대신 중복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된 다른 사업 참여는 중단 조치
 - ※ 중단대상 사업이 다른 기관 소관 사업인 경우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통보

관련서식 [5-2호] 취업 지원 신청서 [5-3호] 취업 지원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현재 취업 중이나 이직을 원하는 경우에도 취업 지원 신청 가능
- 구직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수행기관 변경 시 변경 후 수행기관은 변경 전 기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고,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으로 이관 승인 조치

3 지역자원 조사

- 기본조사:수행기관은 구인처 발굴을 위해 지역의 일자리 직종 및 구인현황 파악
- 현장조사: 수행기관은 기본조사를 토대로 유선조사, 방문조사 및 적절한 사업홍보를
 실시

4 구인처 관리

- 구인을 원하는 기업이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 수행기관은 직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청 및 근로 환경 특성 등 파악
 - 수행기관은 기업에 참여자의 취업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요청 및 취업확인을 위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선 조사(랜덤)" 실시 안내
 -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참여자와 참여기업은 타부처 또는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
 - 수행기관은 수요처에게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 참여 및 참여 제한 요건 등에 대해 안내

관련서식 > [5-4호]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구인신청서

- 수행기관 담당자는 구인신청서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기업명, 사업자번호
 등 등록
 - 구인등록 기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 구인등록 시 반드시 신청기업의 구인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접수하여 보관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수요처도 일부 직종*에 한해 가능
 - 단, 수행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참여노인과 확약서 작성 필수 및 필요시 상해 보험 가입으로 안전조치 마련
 - * 지역일손도우미, 가사·육아·간병도우미, 예식·혼례 및 장례종사자

관련서식

[5-5호]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취업 확인서(수요처용)

[5-6호]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취업 확약서(수행기관-구직자간)

5 취업연계

- 취업기준 : 해당 취업처에서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취업으로 인정(단, 증빙자료 필수)
 - 근무개시일(출근일)에 근무 확인. 상담내용을 기록한 후 취업처리
 - ※ 동일인이 동일 수행기관의 알선으로 인해 서로 다른 기업에 연내 10일 이상 취업을 2회 한 경우에 2명까지 실적 인정
 - ※ 단, 동일인의 취업실적을 2명까지 인정하더라도,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지자체보조) 부대경비 집행은 1인 15만원에 한함
 - 동일 참여자가 각각 다른 수행기관에 의해 취업을 한 경우에 각 수행기관별 실적으로 인정
 - 이전년도에 취업알선하여 동일기업에 고용유지하고 있는 참여자 중 12·24·36· 48개월 이상 근무 중인 참여자는 장기취업유지자로 실적 인정(상담내용 기록한 후 취업(장기취업유지자) 처리원칙)
 - ※ <u>장기취업유지자의 실적기준일(12, 24, 36, 48개월 등 경과시점) 이후 등록 가능하며 1인당 위탁</u> 운영비 50%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예산 등으로 집행가능

제4장

- ※ <u>장기취업유지자 실적은 2024년 이후 참여자에 한하며, 4대보험 가입사업장 참여자 중 참여</u>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해 참여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취업자의 실적 증빙은 4대보험 기업사업장의 경우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는 것이 워칙이며, 불가한 사업장의 경우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별도증빙 등록 가능
 - ※ <u>근로계약서, 기업 취업확인서 또는 공문, 급여명세서(대표직인), 취업노인 통장사본 등 취업 및 보수를</u> 확인 가능한 근거자료 1개
 - ※ 사후 확인이 가능토록 정확한 취업처명, 해당 취업처 연락처 확보
- 수행기관이 구직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실적 인정 불가

관련서식 ▶ [5-5호]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취업 확인서(수요처용)

- 취업자 사후관리: 수행기관은 취업연계 후 월 1회 이상 사후관리(고용유지 확인, 취업자보수, 참여자 사고발생 현황 등)를 실시하고, 사업비 집행 실적 입력 후 월 마감 실시
 - 취업자의 성공요인을 파악하여 타 구직자에게 성공사례에 대한 경험을 제공

6 기타관리

- 참여자 교육:수행기관이 필요시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가능
 - *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수요처에 취업 알선된 참여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사업비 집행
 - (집행 가능 항목) 피복비, 교육비, 홍보비, 회의비, 출장비, 교육참가비,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비품구입비, 상해보험료, 사업진행비,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문화활동비,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 ※ 상해보험료는 비사업자 수요처 필요시 집행
 - (집행 불가 항목) 기관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관운영성 경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기관장 출장비, 참여자 교통비, 기관차량보험료 및 수리비 등 ※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집행 가능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지자체보조) 사업비 집행시 유의사항 〉

항목	유의사항
피복비	• 소속감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한 참여자 활동복, 조끼, 모자 등 구입에 집행 가능 • 마스크 등 참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용품 구입에 집행 가능 ※ 피복비 구매물품의 경우 수행기관 보관 및 관리가 원칙이나, 안전 확보를 위한 용품의 경우 참여자에게 배부가능
회의비	 참여자 및 수요처 간담회, 지자체 및 수행기관 간담회, 사업 평가회 등에 집행가능하며 회의 1회당 참석자(참여자, 수요처, 노인일자리 실무자 및 담당 부서장, 노인일자리 담당자, 기관장) 1인당 20,000원 이내에서 지출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현수막, 문구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가능 ※ 동일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시간을 구분·운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 집행가능* ※ 대관료는 실비 별도 집행 * 단, 급여가 지급되는 교육 또는 회의 운영 시 회의비 내 식비 편성 불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 집행가능
교육비 (참여자)	• 참여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강사료, 대관료, 현수막 구입, 문구 및 교육집행을 위한 물품구입 등 집행 가능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 집행 가능
홍보비	• 구인처(기업) 및 구직자 풀(pool)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홍보물품 구입 또는 제작 전 집행 계획서(지급처, 지급규모 명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 작성 ※ 결과보고 내 구입 또는 제작 물품사진 첨부, 상시로 지급하는 홍보물품의 경우 지급처 대장 구비(지급처 대장: 물품명, 일자, 지급처, 지급 개수, 지급한 자 명시)
문화활동비	•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등을 위하여 참여자 및 담당자, 기관장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체험비 및 진행물품(현수막, 구급약 등) 등 6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담당자: 기관의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자, 담당부서장 ※ 사업담당자 외 기관의 일반직원, 자원봉사자 등 편성 불가 ※ 참여자 인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문화활동에 동행하는 기관의 일반직원, 자원봉사자 등 편성 가능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비 총액 중 인당 2,829천원(확정내시 인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에 한해 지급 가능 그 외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항목	유의사항
	※ 사회보험료 부족분, <u>경력수당*</u> ,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u>2025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안)</u>
	경력 신규 ~ 2년 미만 2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경력수당(안) - 50천원 이내/월 100천원 이내/월
	※ <u>수행기관의 장은 기관예산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u> <u>경력수당 집행 가능(단, 해당 수행기관에서의 연속된 경력에 한해 산정)</u>
출장비	사업참여자의 근무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개발 방문 시, 혹은 동 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등에 참석 시 지급 가능 출장비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출장 시 해당 금액과 출장비의 중복지급 불가 출장비는 기관의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자, 담당 부서장에 해당(기관장 제외).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지급 기능
비품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사업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승인 후 집행 ※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사업계획서에 미반영하였거나 승인된 사업계획 외 추가적인 비품구입 시 변경심사 또는 지자체 승인
교육참가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교육 참가비로 집행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 단, 교육을 포함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과정, 예산집행계획(강사료, 대관료, 교육진행비 등)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교육 총괄 부서와 협의·승인후 집행 가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15만원이내에서 집행 가능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환수조치) 단순 취미교육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교육에 참가하거나, 교육 미수료시에는 환수조치 가능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 기관 부대경비 범위 내에서 연중 탄력적으로 집행
상해보험료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수요처 필요시 집행
사업 진행비	•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및 기업 발굴을 위한 물품 구입비, 회계감사 비용,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 동 사업을 위해 기관차량을 이용 시 예산 범위 내 집행 가능 ※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 비치 ※ 유류비 지출 세부 사항은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 기타 자산관리 등은 공동체 사업단 지침 준용

관련서식 [5-7호]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자산대장 [5-8호]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참여자 교육 관리대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Ⅰ. 추진 개요

Ⅱ.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

Ⅲ.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위탁

Ⅳ.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

V. 기타 사항



추진 개요

1 목적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법적 근거

- 노인일자리법 제9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 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해야 함

3 사업주체별 주요 업무 및 역할

- 보건복지부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활성화 관련 추진방향 마련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또는 운영에 따른 예산 및 행정 지원
 - 기관 운영관련 지도·점검 및 평가
- 노인일자리지워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

1 기본방향

●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동 안내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본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를 따름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 명칭사용
 - 지역명칭을 시니어클럽 앞에 사용 또는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는 명칭 사용 가능 예시 DD 시니어클럽. (서울)종로시니어클럽 등
- 시설 기준
 - 가. 시설의 종류
 - 1) 사무실 : 1실 이상
 - 2) 상담실 : 1실 이상
 - 3) 교육실 : 1실 이상
 - 4)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1개 이상
 - 나. 시설의 규모: 가목 1) 및 3)의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노인 일자리 사업 배정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인력 기준

- 가. 인력배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 일자리 사업 배정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위탁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위탁

- 법적 근거 : 노인일자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 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단체 등을 선정할 때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없는 경우 유사실적), 사업의 구체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위탁사무,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 경과규정

- 노인일자리법 시행('24.11.1)일로부터 기존 시니어클럽 등 지자체로부터 위탁· 선정된 기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봄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결과, 최근 2년 연속 60점 이하의 기관은 지정 취소 가능

2 신청자격 및 운영위탁 절차 등

1 신청자격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2 신청방법 및 서류

- 사업예정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해당 과에 신청서류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별 세부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른 서류

관련서식

[6-1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신청서 [6-2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업계획서

- 기타 지자체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등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회칙(단체)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대표자(운영책임자) 및 인력운영 계획서 등

3 위탁권자

-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05년 지방이양 이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니어클럽의 경우, 당해 연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이후의 운영 및 관리, 지정 취소 등 권한은 지자체로 위임

4 위탁절차

①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② 시·도(또는 시·군·구)에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 (위원구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가(학계, 현장전문가), 해당 공무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 (단, 외부 위원이 과반 이상을 넘어야 함)
- (위원장) 선정된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탁 여부를 결정
 - (심사절차) (1차) 서류 (2차) 면접으로 진행 (필요시 현장실사 가능)
 - (심사기준) 해당 지자체는 아래의 항목을 순서대로 포함하여 위탁심사 세부기준, 심사표 등을 조례 등 자체규정으로 정하되, 지역에서의 기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니어클럽 등) 운영 여부 및 노인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 내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 필요시 [6-3]호 현장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 ① 별도 사무실, 강의실(모임 및 강의), 작업장 확보 여부
 - ② 사업프로그램
 - 사업 유형의 기관 운영 목적·취지와의 적합성 여부
 -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중복성 여부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특성에의 적합성(물품의 제작·판매, 유통 등) 여부
 -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노동 수요 및 물품 수요 등 제공 능력
 - 사업의 구체성 및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전망 가능성 여부
 - 참여인원의 연령 분포 및 참여 인원수
 - ③ 사업운영능력
 - 사업수행 경험 및 그간의 실적 평가
 - 종사 인력의 경험 및 능력
 - 기관 책임자의 업무전념 여건 등
 - 종사 인력의 회계 문제 발생 시 신청인(법인, 단체)의 책임 능력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벌칙 이력 등 사업수행의 투명성 및 적합성 여부
 - ④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등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운영 방향

5 위탁계약의 체결

- 위탁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함
-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위탁지정서를 교부, 해당 지정서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로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

관련서식 ▶ [6-4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위탁 지정서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지정권자가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재공모 절차를 생략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 가능
 - 갱신된 계약기간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년으로 함

3 운영위탁의 효과

- 운영위탁 받은 기관은 사업 수행내용에 따라 법 제9조에 의거 지역노인일자리전담 기관을 유영하는 기관으로 봄
 - 에시 재화의 직접생산·판매 등을 담당하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해당 법인의 경우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으로 봄
- 지정된 기관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연도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4 운영위탁의 취소

1 사 유

-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지자체 등이 부과하는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경우

- ※ 이행조건이란 지정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한 조건 외 법인이 시·군·구 또는 시·도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위탁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이행각서, 약정서 등 제반 내용을 포함한다.
-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격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거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판단하는 경우

2 취소권자

-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위탁궈자가 취소
 - 시·군·구 위탁일 경우 시·군·구에서 위탁 취소
 - 시·도 위탁일 경우 시·군·구 요청에 의한 경우와 시·도에 의한 직권 상정에 의한 취소 가능

3 절 차

- 취소 절차는 위탁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취소심사위원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당해 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취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서면으로 소명 가능)
- 시·도(또는 시·군·구)는 취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취소 여부를 결정
 - 취소 심사위원회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가(학계, 기타 협회관계자 등), 해당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반드시 외부위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함)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 시·도(또는 시·군·구)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과 관련된지정취소 내용을 통보하고, 기존에 교부된 지정서를 회수, 변동사항을 기록한 뒤해당 내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로 취소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
 ※ 시·군·구에서 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통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

1 기본방향

-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본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에 준하여 처리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단, 동 지침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함)

2 기관의 장 및 종사자

- 1) 기관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자체규정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 상근하여야 함
- 2)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자체규정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 시설장의 경우

법 제35조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9조제1항

- 1. 미성년자
-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 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형법」제28장·제40장 (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

- * 기존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 범죄로 일괄 규정(적용대상: 시행일(2019.6.12.) 이후 최초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
-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주의) * 법률 제14884호(2017.12.20. 시행) 부칙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주의「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 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1차 감독기관인 시군구와 그 지도감독을 받는 기초지자체 관할 사회복지 시설 간 업무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조항인 바,
-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시설에 재취업 후 전 소속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종사자의 경우

법 제35조의2제2항

-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인사 및 보수 관리

1 기본원칙

- 직제 및 보수 규정 등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하며,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 두어야 함. 다만,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 일자리 사업 배정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보수는 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권장

2 인사 및 보수기준

1) 인사기준

- (공개모집) 기관에 종사하는 기관장 및 종사자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 모집 워칙
 - 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직급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직급별 자격 기준을 정하여야 함
 -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 후 법인 및 시설 내규에 의해 채용
- (인사권의 독립) 직원의 인사권자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관장이며, 직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 법인 또는 단체 등과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

- 특별한 사유없이 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한 경우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겪직 금지
- (경력 인정) 직원의 경력 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경력 인정 기준을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름
 - 단,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력은 100% 반영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무관)

2) 보수기준

- 직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사회복지 관련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및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은 재정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 가능

4 사업운영관리

1 기본원칙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규칙을 따름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 제출할 때에, 아래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있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관련서식 > [6-5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세부사업계획서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보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등), 법인 전입금, 사업 수익금, 후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함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매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6-6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서식 ▶ [6-6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관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소속 모법인(또는 단체)로부터 운영보조금 관리에 대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보조금 외에 사업비(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등)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함 ※ 유영 보조금을 별도 시행 사업비로 지출하거나 별도 기관사업비로의 지출을 금함
 - 단,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취득한 자산(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여 별도 공동체 사업단(고유 공동체사업단)운영하는 경우 자산운용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 가능
- 임대료는 사업 공간 마련을 위해 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편성·지출 가능

3 예산의 집행

@ 예산지출원칙(202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11.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지출.
- ※ 단,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입금 활용

● 세부 집행기준

-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 후생경비로 편성·지출함

- 운영비는 여비, 일반수용비 및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사업운영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회비, 종사자 교육비, 기타운영비 등으로 편성·지출할 수 있음
- 사업비는 공동체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차량, 소규모 장비, 시설비 및 자제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소모품을 제외한 차량 및 시설·장비 등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귀속됨
-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는 공동체사업단(고유사업단)의 참여자에 대한 각종 보험료 등의 경비는 수익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공동체사업단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함

4 사업운영 결산 및 성과 보고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 제출 시 아래의 사업성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있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관련서식 > [6-7호] 사업성과보고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31일까지

5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운영

1 공동체사업단 관리

- 사업단 운영은 사업단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반드시 마련·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노인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사업단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사업단은 참여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 지원과 주인의식 강화를 통해 자립 및
 독립 운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

- 사업단의 독립 또는 사업 종결 시에는 관장 및 직원 대표, 참여노인 대표, 2인 이상의 노인일자리 외부 전문가 등으로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 또는 종결 여부를 결정
 - ※ 공동체사업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 실시

2 수익금 관련 사항

- 수익금의 정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발생한 모든 직·간접적인 수익금을 말함
 -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판매 및 제공의 대가를 현금으로 환산한 것임
 - 현금으로 화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 자체를 수익금의 형태로 별도 관리
- 수행기관
 - (수익금의 별도 계정 및 관리 등) 수익금에 대한 회계 및 관리는 공동체사업단별로 별도 계정(통장)으로 관리
 - ※ 통장관리는 수익금을 ① 예산지원 사업추진경비用(인건비 및 사업운영비)과 ② 적립·사용경비用 등으로 구분 관리
 - (수익금 관리 내역 보고) 공동체사업단별로 수익금 관리내역을 매 분기 첫 번째 월 10일까지 별도 양식([서식 6-8호] 수익금 관리현황 등 보고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시·군·구)에 보고

관련서식 > [6-8호] 수익금 관리현황 등 보고서식

- (수익금의 사용) 참여노인에 가급적 배분될 수 있도록 권장, 수익금이 발생한 공동체 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단 재투자비 등으로 사용 가능 (사업참여자 대표와 매년 적립금 사용에 대한 협의 필요)
 - ※ 당해 연도 수익금의 20%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금액은 다음 연도 수익금과 함께 지자체에 필수 보고

● 시·도 및 시·군·구

- (관리·감독의무) 수익금 및 적립현황, 사용내역 등을 관리, 감독하여 공동체사업단 활성화 및 참여노인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공동체사업단 지원) 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 추진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및 창업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추진
- (수익금 관리현황보고) 시·군·구는 분기별로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익금 관리 현황을 검토하여 시·도에 분기의 첫 번째 월 20일까지 제출



기타 사항

1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 중앙정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기관관계자 교육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보조금¹⁾외에 일자리 수행 규모와 사업성과, 내용, 사업개발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개발비²⁾ 추가 또는 감액 지원 가능
 - 1) 운영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4억 원 이상 지원 권장, 다만, 관리 대상 사업단 및 일자리수를 고려하여 지원액 증감 가능
 - 2) 사업개발비는 공동체 사업단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 사업추진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사업장임대비용 등 제비용
 -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장 및 교육장 등 시설 지원
 -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 일자리 사업 배정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2 점검 및 평가

- 지도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소관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의 재무·회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해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시·군·구 1회, 시·도 1회 등 연 2회 이상 실시)

-0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부사업별 성과진단(평가)을 진행한다.
 - 관할 지자체도 사업 실적·운영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수 있다.

3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실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하·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따라 실시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는 반드시 확인·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식



서식

공통서식

[서식	1-1회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서	153
[서식	1-2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56
[서식	1-3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용)	157
[서식	1-4호]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예시)	158
[서식	1-5호] 사업 위탁관리 계약서(공익활동·역량활용·취업 지원(취업알선형))(예시)	159
[서식	1-6호] 사업 위탁관리 계약서(공동체사업단)(예시)	162
[서식	1-7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예시)	166
[서식	1-8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예시)	170
[서식	1-9호]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예시)	172
[서식	1-10호] 사용자 권한 신청서	173
[서식	1-11호] 노인일자리 담당자 근로계약서	174
[서식	1-12호] 노인일자리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u>176</u>
[서식	1-13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신청서(참여자용)	177
[서식	1-14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84
[서식	1-15호]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	186
[서식	1-16호] 참여자 중도포기 확인서(예시)	187
	1-17회 현금 지급 현황 보고 양식(예시)	

노인공익활동사업

[서식	2-1호]	2025년 노인 일자	라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	업(노인공익횔	동사업)	사업계획서 …	 189
[서식	2-2호]	<u>노인공익활동사업</u>	서비스 이용	<u> 신청서 및</u>	개인정보 동	의서(수요	자용)	 <u> 194</u>
[서식	2-3호]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이용	용 신청서(수)	요처용)			 196
[서식	2-4호]	노인공익활동사업	협약서(예시)				 197

[서식 2-5호]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198
[서식 2-6호]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일지(예시)199
[서식 2-7호] 노인공익활동사업 안전점검 회의록(예시)200
[<u>서식 2-8호</u>] 노인공익활동사업 연장활동 동의서(예시) ····································
[<u>서식 2-9호</u>] 지역봉사지도원증 ····································
[서식 2-10호]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u>서식 2-11호</u>] 노인공익활동사업 사업운영 결과보고서(예시)····································
노인역량활용사업
[서식 3-1호]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사업계획서 ······· 207
[서식 3-2호] 노인역량활용사업 선발기준표 및 지표별 세부 내용212
[서식 3-3호] 노인역량활용사업 근로계약서(예시)214
[서식 3-4호] 노인역량활용사업 서비스 신청서(수요처용)217
[서식 3-5호] 노인역량활용사업 월별 참여자 출근부(예시)
[서식 3-6호] 노인역량활용사업 근무스케줄표(예시)219
[서식 3-7호] <u>월별 임금지급대장(예시) ·······220</u>
[서식 3-8호] 노인역량활용사업 급여명세서(예시)21
[서식 3-9호] 대체근로 동의서(예시)222
[서식 3-10호] 노인역량활용사업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23
[서식 3-11호] 노인역량활용사업 사업운영 결과보고서(예시)
공동체사업단
33 WARE
[서식 4-1호]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
- [서식 4-3호] <u>공동체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235</u>
[서식 4-4호] 공동체사업단 근로계약서(예시)····································
[서식 4-5호] 공동체사업단 도급계약서(예시)····································
[서식 4-6호] 웤볔 참여자 축구 부(예시)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서식 6-1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신청서	280
[서식 6-2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업계획서(지정신청기관)	282
[서식 6-3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조사의견서	284
[서식 6-4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위탁 지정서	285
[서식 6-5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세부사업계획서	287
[서식 6-6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289
[서식 6-7호] 사업성과보고서	290
[서식 6-8호] 수익금 관리현황 등 보고서식	291
부록	
1. 수요처 행동강령 ····································	292
2. 참여자 활동자세	295
3. 참여자 모집 홍보 가이드라인	296
4.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298

서식 1-1호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서

2025년 (지자체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서

- 지자체 작성용 -

1. 전년도(2024년) 사업추진 결과

가. 전년도 예산집행현황

(단위: 처원)

구분	계	국비	Τ.	기방비	기타	비고
	711	- 누미	시·도비	시·군·구비	714	
합계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나. 사업량 달성현황

7 🗆	'24	ul¬	
구분	목표량	추진실적	비고
합계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시업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다. 노인일자리 지도점검 주요결과

2. 지역 현황분석

가. 지역 노인인구 및 취약노인 현황

○ 지역 노인인구수, 수행기관 현황, 취약노인 현황 등

제6장

나. 지역 내 일자리 수요 및 사업배정

○ 기관별 수요조사량 및 시·군·구 내시사업량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대기자			신청(희망)사업량				
구분	<u> </u>	참여	노인공익	노인역량	공동체	노인공익	노인역량	공동체	취업 지원	비고
		인원	활동	활용	사업단	활동	활용	사업단	(취업알선형)	
합기	1									
기존										
수행										
기관										
신규수행기관 배정예정물량										
	〈참고	고〉시·군	・구 내시人	l업량(계)						

- 기존수행기관 사업량 조정운영절차
- 최종 조정결과 ※ 계획서 작성시점 미결 시 확정 이후 보완 작성 가능

		최종배정량				
구분		노인공익 활동	노인역량활 용	공동체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비고
	합계					
刀太						
기존 수행기관						
구엥기관						
신규수행기관 배정예정물량						
시·군·	구 내시사업량(계)					

3.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 신규 수행기관 선정목표 및 배정량

(단위 : 명. 천원)

(211.6, 22)								
활동유형		소 요 예 산						
		배정량	계	국비	지 방 비		자부담	비고
					시·도비	시·군·구비	(민 간)	
====== 총 계								
노인공익활동	소 계							
노인역량활용	소 계							
공동체사업단	소 계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소 계							
노인일자리 담당자								

- 신규수행기관 공모절차 및 일정
- 최종 선정결과 ※ 계획서 작성시점 미결 시 확정 이후 보완 작성 가능

4. 사업관리방안

- 수행기관 담당자 및 전담인력 교육계획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계획
- 사업홍보 및 지역자원연계 방안

5. 사업평가방안

- 노인일자리 평가지표 향상 대응방안
- 시군구 자체 노인일자리 활동평가 방안

6. 주요추진사항

○ 시·군·구 노인일자리 관련 현안 및 주요사항(담당자 변경 등 업무이관 시 참고할 사항)

※ 본 양식은 지자체 작성용입니다. ※

제6장

서식 1-2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민간위탁 기관용(지자체 제외) -

-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신청기관의 주요한 연혁 간략히 작성(조직 mission과 vision 있는 경우 기입)
- 2. 조직 및 직원체계(조직도 및 현황표로 제시)
 - 조직은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조직표로 작성
 - 직원현황은 직위, 인원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표로 작성
- 3. 주요사업 내용
 - 기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가략하게 정리하여 주요 내용 기술

사업부분	사업내용			

-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경험(최근 3년간)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경험이 있을 경우,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기업

년도	사업유형	사업명	배정인원(명)	배정예산(원)	주요성과
2024					
2023					
2022					

- ※ 주요성과는 일자리 창출실적, 해당 연도 만족도조사결과 및 주요 평가내용 등 간략 기술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추진실적이 전무한 신규기관은 유사사업 수행결과 기술
- 5. 기관 약도
 - 주변의 큰 건물을 중심. 교통편 기록

서식 1-3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용 -

	기 관	명			고 유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			팩	스		
신청	전 주	소						
기관	홈 페 C	시						
정보	기 관 위		① 지자체 ④ 노인복지관 ② 노인복지센터 ⑩ 문화원) 시니어클럽) 장애인복지) 지자체 출연) 기타 (관	③ 대한노인회 ⑥ 사회(종합)복지관 ⑨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법인(단계	테)명			대	표 자		
법인	전	화			팩	스		
또는	주	소						
도는 단체 정보	운영주체	성격	① 사단법인 ④ 사회복지법인 ⑦ 기타 (재단법인의료법인)		3 학교법인 ⑥ 지방자치단체	
	사업유형	걘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예산액	
	합 경			개		명		천원
신청	① 노인공익활	동사업						
사업	② 노인역량활	용사업						
	③ 공동체사업단							
	④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기타	노인일자리 수	담당자		명		다리 담당자 1건비		천원
714	담당자 성	성명				번호(기관) ail(기관)		

위와 같이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대표자* (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1-4호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예시)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예시)

- 시·군·구용 -

【시·군·구: , 신청기관 :

분류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점 수 합 계	100점	
소해기과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존 수행기관 작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활동실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사용 실적 자체 점검결과 및 외부기관 평가결과 등 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취업알선형)사업은 전년도 사업평가점수 우선활용 	30	
사업 위탁 적합성 (30%)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 가장 함께 가장 가장 함께 가장 가장 함께 가장 가장 함께 가장	30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존 수행기관		- 참여 대상 및 수혜 대상 선정의 적절성	20	
	20			
전년	도 사업운영	- 기관 경고(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운영안내 위반으로 개선이 어려운 사항)	-10 -20	
2	스시걸박	, , , , , , , , , , , , , , , , ,	-50 -50	
사업계획 타당성 (40%) 시업계획 구체성 (기존기관) 전년도 사업운영 조치결과			30	

심사일자: 년 월 일

심사자소속: 직위(직책):

성 명 (서명, 인)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1-5호 사업 위탁관리 계약서(공익활동·역량활용·취업 지원(취업알선형))(예시)

○○사업 위탁관리 계약서(예시)

(지방자치단체) 은(가) *(수행기관)* 에게『○○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계약상 『○○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량,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평가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 변경 및 축소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수행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① 위탁사업은 (사업내용) 하는 사업으로 한다.
- ② 대상 사업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변경이나 필요시 재조정할 수 있으며. "수행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참여대상은 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주 일 활동하며, 활동시간은 매일 까지 시간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사업』 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수행기관"은 법 제 조에 의거, 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업비를 ○○사업 운영비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비용은 ○○사업 참여 노인의 활동비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다.
- ③ ○○사업 참여 활동비(급여)는 1일 (활동비 지급기준 등 제시) 원으로 한다. (*노인공익활동사업*만 해당*)

제5조(장부 등의 비치) "수행기관"은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① (노인공익활동사업) 사업신청 제반 서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신청서(참여 자용), 상담의견서, 참여자 명부 및 활동비 입금 계좌내역, 활동비 대장명부, 사업현황 보고, 활동일지, 금전 출납부, 지출 증빙서류 등
- ② (노인역량활용사업) 사업신청 제반 서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 신청서(참여자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 명부 및 임금 입금 계좌내역, 임금대장 명부, 사업현황 보고, 참여자 출근부, 금전 출납부, 지출 증빙서류 등
- ③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신청 제반서류, 구직 신청서, 구인 신청서, 취업확인서, 금전출납부, 지출 증빙서류 등

제6조(사고책임) ※ 지자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 제7조(지도·감독·조치) ① 『〇〇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u>"지방자치단체"가</u>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수시 『○○사업』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 ③ <u>"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u>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당해 연도 계약체결 해지, 익년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수행기관" 은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각종 교육 등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사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 참여 및 이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해약) ① <u>"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u>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u>지방자치단체가</u>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u>"수행기관"</u>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u>"수행기관"</u>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u>"지방자치단체"</u>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충실하게 『○○사업』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u>"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이</u> 협의 결정 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u>"지방자치단체"와</u> "수행기관"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주 소: ○○시 ○○구 ○○로 주 소: ○○시 ○○구 ○○로

지자체명: ○○시(○○구) 기관명:

대 표 자 : <u>지방자치단체명</u> 기재 (인) 대표자 : <u>수행기관명</u> 기재 (인)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1-6호 사업 위탁관리 계약서(공동체사업단)(예시)

공동체사업단 위탁관리 계약서(예시)

- 사업단별 작성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방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계약상 『○○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위탁사업 개요
 - 가. (위탁)사업명:
 - 나. (위탁)사업내용:
 - 다. (위탁)사업기간:
 - 라. (위탁)사업비: 천원
 - 마. (위탁)사업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 바. 계약당사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명: 대표자: "수행기관" 기 관 명: 대표자:

- ② 사업수행범위
 - ※ 참여자 세부 업무 유형 및 내용, 사업추진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 서술

제2조(사업의 목표)

※ 사업의 취지와 목적, 세부 목표 기재

-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별첨1)와 '사업단 운영규정'(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행기관'은 참여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사업단 운영규정에 일임 시 조항 생략 가능).

(식품 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기타)

가. 참여자 근무관리 기준 : 근무일자(시간), 장소, 방법

나. 참여자 임금지급 기준 :

(운송)

가. 참여자 도급보수 기준 :

- ③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단 운영규정'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사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④ <u>"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u>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⑤ "수행기관"은 본 계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u>"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u>에게 다음과 같이 0000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계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 2025년 00월 00일, 천원 나. 제2차: 2025년 00월 00일, 천원 다. 제3차: 2025년 00월 00일, 천원 라. 제4차: 2025년 00월 00일, 천원

제5조(권한과 의무)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가. "수행기관"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 다. 연 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 라. 사업비와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 마. 참여자, 노인일자리 담당자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 ② "수행기관"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 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 다. <u>"지방자치단체"</u>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 시 제출·보고 의무
-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근로계약서, 참여자명부 및 임금 입금계좌내역, 임금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임금 관리대장, 참여자 출근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정보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 <u>"수행기관"</u>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u>"수행기관"</u>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의 변경) <u>"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u>은 협의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별첨2의 '사업단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의 위반 및 해약) ① <u>"지방자치단체"는</u> 본 계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u>"수행기관"</u>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u>"수행기관"</u>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u>"지방자치단체"</u>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본 계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사업착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작예정일을 넘겨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 마. 본 계약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를 위반하여 <u>"지방자치단체"로</u>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④ <u>"수행기관"</u>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u>"지방자치단체"</u>의 동의를 받아 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⑤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u>"수행기관"</u>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u>"지</u>방자치단체"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이 협의 결정 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u>"지방자치단체"와 "수행</u>기관"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다.

20 년 00월 00일

주 소:00시 00구 00로 주 소:00시 00구 00로

지자체명: ○○시(○○구) 기관명:

대 표 자 : <u>지방자치단체명</u> 기재 (인) 대표자 : <u>수행기관명</u> 기재 (인)

별첨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단 운영규정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1-7호 기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예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지자체-수행기관 간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예시)

<u>"지방자치단체"</u>(이하 "위탁자"라 한다)<u>와 "수행기관"</u>(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 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 1.
 - 2.
- 제4조(위탁의 기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하다.2)
 - 1. 위탁기간: 2000.00.00 ~ 2000.00.00까지

¹⁾ 업무 예시: 참여자 모집 및 관리, 참여자 교육, 활동비·급여 지급, 참여자 자격변동,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등

²⁾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u>같은 법 시행령,「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u>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u>「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u>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u>"위탁자"</u>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 3.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회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다.3)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 "위탁자"는 "수탁자"과 협의하여 시행하다.
-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제11조 (가명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② 가명정보가 재색별되는 등 위험이 발생하여 "위탁자"가 가명정보의 처리 중지 및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u>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u>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정보는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공간에는 다른 정보를 보관 등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 ⑥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수탁자"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즉시 그 처리를 중단한 후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고'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3) &}lt;u>「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및 「개인정보 보호법」</u>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과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주 소: ○○시 ○○구 ○○로 주 소: ○○시 ○○구 ○○로

지자체명: ○○시(○○구) 기관명:

대 표 자 : *지방자치단체명* 기재 (인) 대표자 : <u>수행기관명</u> 기재 (인)

서식 1-8호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예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예시)

본인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쁜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규정을 주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1. 나는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기관내부 정보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 기관 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PC, 노트북 등을 포함한다)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 6. 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 7.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기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0

상기 시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서약서의 보안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인 정보 보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 작성하고 수행기관 및 지자체에서 이를 보관함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1-9호 기인정보 파기 관리대장(예시)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예시)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 담당자	처리 부서장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1-10호 사용자 권한 신청서

사용자 권한 신청서 (□ 생성, □ 변경)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권한(정보시스템 가입 및 사업관리 등) 신청 시 작성 -

소 속	기 관					
부 서 명						
신 청	가			직 급		
전 화	번 호	(0)	-	이메일		
		□ 노인공익활 공동체사업	동시업·노인역량활용/ 1단	·업·	노인자원봉사	
요청	요청 사업	□ 노인친화기	□ 노인친화기업·기관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사항		□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교육지원	
		□ 노인역량횥	할용 선도모델	-		
	권한 구분	□ 생성	□ 읽기	□ 정정	□ 삭제	
신 청	사 유	<i>(예시)</i> 노인공익	활동사업 참여자 활동	비 지급 등 예절	산집행 사항 관리	
위와	위와 같이 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의 🗆 생성,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부서책임자 :		(인) 또는 (인) 또는		

[※] 본 권한신청서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신청자의 소속부서에서 보관 및 관리합니다.

[※] 담당자 업무 변경, 퇴사 등 권한 사항 변경 시 부서책임자가 지체 없이 사용자 권한 변경/회수합니다.

서식 1-11호 ▶ 노인일자리 담당자 근로계약서

노인일자리 담당자 근로계약서

(이하 "사용자"라 함)과(오	中) (9	이하 "근로지	나"라 함)은 다음	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약	일부터 닉	년 월 <u>일</u>	<u>일</u> 까지	
2. 근 무 장 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 : 매주 월□ 화□ 수□ 목(주휴일 : 매주 토□ 일□ 요일	□ 금□ 요일	근무		
- <u>1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u> 다른 요일로 변경 가능)	<u>우 1일의 유급</u>	휴일(o요일)	부여 (단, 사업장	사정에 따라
-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u>함</u>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u> 요일 제외) </u>	및 대체공휴일은 -	유급휴일로 함
※ 단,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유급휴일에 관한
6. 임 급				
- 월(일, 시간)급:	원			
- 상여금: 있음 ()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 없음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일 ~ 일까지 인 전일 지급)]금을 매월(매·	주 또는 매일	일(휴(무	-)일의 경우는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	자 명의 예급	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0	사회보험	길이어버
Ŏ.	^r외보유	식공연구

- 관련 법령의 정함에 따라 결정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 이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정함에 의함

년 월 일

(사용자) 기 관 명 : (전화 :)

주 소: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연 락 처 :

성 명: (서명)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1-12호 > 노인일자리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본	인	휴대폰번호*		성별*	
		최종학력		사회복지사등급	

노인일자리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항 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필수정보 번호 <u>, 사업연도(근무년도), 근로</u> 계약기간, 고용형태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담당자 운영 및 관리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5년 •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 10년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 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기간
선택정보	최종학력, 사회복자사등급, 임금. 실제 퇴사일, 퇴사사유, 무기 계약직 전환일자, 이전업무경력, 교육이수내역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5년 •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 10년

[※] 위의 선택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일자리 시업 참여에 불이익은 없으나, 일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식 1-13호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신청서

※ 법정서식으로 내용, 글꼴크기, 쪽 여백 조정, 칸 추가 등 양식 임의수정 불가

※ 별도 안내된 시행규칙 서식 활용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일반신청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기관(수행기관)		처리기간	15일
					(30일의 범	위에서 연장)
	성명	_		연락처		
	주민등록번	፟		주소 		
	참여	공동체 사업단	①		2	
	희망	노인공익 활동사업	①		2	
필수 기재	사업	노인역량 활용사업	1		2	
사항	사무역량 (컴퓨터 활용, 정보검색 능력 등)		[] 상	[]중		[]하
	세대구성 (주민등록 기준)		[] 노인 독신 [] 노인 부부 [] 경제력 없는 [] 경제력 있는			
선택 기재 사항	비상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최종 학력	[] 초졸 ([] 전문대] 고졸] 대학원	이상

(3쪽 중 2쪽)

				X = 3.	O 2 17	
		[외부교육	이수사항]			
		교육 과정명	①	2	[]	
		교육기간	①	2	해당 없음	
		교육기관	①	2		
		[경력사항(증빙서류)]			
선택	선발 시 배점 반영	직장명	0	2	[] 해당 없음	
기재		활동기간	①	2		
사항		담당업무	0	2		
		[자격증 및 면허증]				
		자격증 (면허증)	①	2		
		취득기관	•	2	[] 해당	
		취득연도	0	2	없음	

[상담자 의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역량활 용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상담자(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귀하

(3쪽 중 3쪽)

1. 주민등록표 등본	T
2.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	<u>5</u> H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И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퇀
신청인 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	1
제출서류 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	사 수수료
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격
량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	위
만 해당합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7
업무 담당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사항 3. 국가유공자확인서(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11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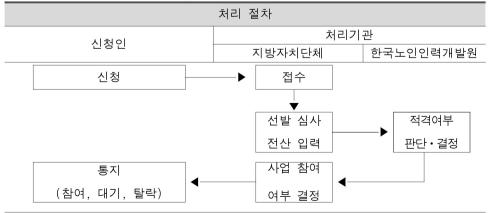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여부 (참여, 대기, 탈락 등)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 중 자격 변동,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 중단 조치 및 활동비(또는 임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동체사업단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신청서(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기관(수행기관)		처리기간 15일				
비니건조			u 1712(18712)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30일의 범취에서 연장)	
	성명				연락처			
		_			— .			
	주민등록번	호			주소			
	지어어그 스	- J A H / = I	¬	u fiol)	기 ㅈ ᆗ 취			
	직역연금 수				거주현황			
	(배우자의 경우			,	[] 자가 [] 전세 [] 월세			
	[] 예 [] 0	·나오	[]기타()		
					주택(자가)	공시가 또는 전월세	보증금	
					(원)	
					,			
	직역연금 4	누급자 본인	여부		연간 소득금	극액		
	[]	본인	[] 배우자		(원)	
필수 기재	참여 희망	공동체 사업단	1			2		
사항		노인공익 활동사업	1			2		
	사업(단)	노인역량 활용사업	1			2		
	사무	역량	гі	사	[]중	[] 하		
	(컴퓨터	활용,	[] 상		[] 6	[] 01		
	정보검색	능력 등)						
	세대 (주민등	구성 록 기준)	[]	노인 독신 노인 부부 경제력 없는 경제력 있는 기타				

	비상	신청인과의	의 관계		연락처	
선택	연락처					
기재	최종	[]초졸	이하	[] 중졸	[]고졸	
사항	학력	[]전문	대졸	[] 대졸	[] 대학원 이상	
		[외부교육	이수사항]			
		교육 과정명	1		2	[]
		교육기간	1		2	해당
선택	선발 시 배점 반영	교육기관	1		2	없음
		[경력사항(증빙서류)]			
		직장명	1		2	[]
기재		활동기간	1		2	해당
사항		담당업무	1		2	없음
		[자격증 및	면허증]			
		자격증	1		2	
		(면허증)				[]
		취득기관	1		2	해당
		취득연도	1		2	없음

[상담자 의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역량활 용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상담자(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제6장

人

(4쪽 중 3쪽)

	· · · · · · · · · · · · · · · · · · ·	
	1. 주민등록표 등본 2.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이등급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로 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액을 받는 사람(이하 "직역연금 수급자"라 한다)의 급여액에 관한 증명자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주민등록지의 거주 형태에 따른 증명자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 없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사항 	3. 국가유공자확인서(공동체사업단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해저저 보 고도이오 도이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여부 (참여, 대기, 탈락 등)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연도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전년도에 조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 중 자격 변동,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 중단 조치 및 활동비(또는 임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1. 직역연금 수급자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을 받는 사람인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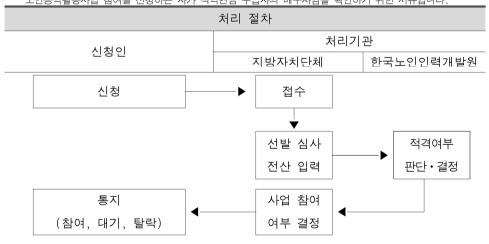
[제출서류의 유형과 목적]

-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액 에 관한 증명자료
 - 직역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2) 주민등록지의 거주 형태에 따른 증명자료
 - 가) 거주 형태가 자가인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별주택가 격 확인(신청)서
 - 나) 거주 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2. 직역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기준 이하인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유형과 목적]

-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액 에 관한 증명자료
 - 직역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준액 이하인 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2) 주민등록지의 거주 형태에 따른 증명자료
 - 가) 거주 형태가 자가인 경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주택가 격 확인(신청)서
 - 나) 거주 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3)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서식 1-14호 기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동체사업단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통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라 함)」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에 정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추가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700 0600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근거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노인일자리법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u>제14조</u>	성명, 연락처, 주소, 나이 건강보험직장기입 해당 유무, 기초 생계 해당 유무, 기초연금 수급 여부, 차상위 계층 여부, 세대 구성, 장기요양 등급판정 여부, 장애 유무 해당하는 자에 한함 (직역연금 수급 여부, 수급자 본인 여부, 거주현황, 주택 공시가 또는 전월세 보증금, 연간 소득 금액)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자원 사업 참여신청 및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 (부적격·부정수급), 맞춤 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자원 사업 연구 수행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시업 종료 후 5년까지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동의여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및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 동의 비상연락처. 최종학력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맞춤형 일자리 □ 미동의 사업종료 후 5년까지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데이터: 시업종료 후 10년까지 외부교육 이수사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업 참여 □ 동의 경력사항, 자격증 및 면허증 신청, 참여자 선발 점수 부여 □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선택)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선택)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연락처	노인 알지리 및 사후 등 지원시업 관련 뉴스, 이벤트 정보, 신규 서비스 안내,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문자 발송	신청서 및 관련서류: 사업종료 후 5년까지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사업종료 후 10년까지					

에 마케팅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자원사업 관련 뉴스, 이벤트 정보 등 다양한 제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활용을 위해 문자메시지로 수신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u>「노인일자리법 시행령」제14조</u>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처리 항목	처리 목적	처리 근거
주민등 록 번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및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u>「노인일자리법</u> 시행령」제14조

「노인일자리법」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노인일자리법 시행령」제15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자리참여(신청)정보를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합니다.

	참여자 선발: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한국사회보장	차상위계층 여부, 장애 유무
정보원	활동 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차상위계층 여부 변동, 장기요양
	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해외 출·입국
한국고용정보원	참여자 선발: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인국고등장도면	활동 관리: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활동 관리 :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및 변동사항(가입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서식 1-15호 >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

※ 법정서식으로 내용, 글꼴크기, 쪽 여백 조정, 칸 추가 등 양식 임의수정 불가

※ 별도 안내된 시행규칙 서식 활용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고 발생 현황보고서

	시고 들이 단장	
	시・도	시・군・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명	사업 수행기관 연락처
수행기관 정보		
10 12 0-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성명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직위
	사고가 발생한 참여자 성명	사업유형
		1.2
	사고가 발생한 참여자 주민등록번호	사업명
	사고가 결정한 점에서 구인등득반호	ALTER STATE OF THE
사건		
개요	사고가 발생한 참여자 전화번호(휴대전화)	사업번호
-,-		
	사고 발생일	사고가 발생한 참여자의 사업 참여 시작일
		사고가 빌생한 참어자의 사업 참어 종료일
	① 사고 발생 경위	
	② 조치사항	
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		
	③ 향후 계획(사고가 발생한 참여자에 대힌	· 보상에 관한 사항 포함)

참여자 중도포기 확인서(예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수	행 기 관	명	
사	업	명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상기 본인은 ()에 의한 사정으로 20○○년 ○○월 ○○일 부로 중도포기 하고자, 이에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수행기관명) ○ ○ ○ ○ ○ ○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식 1-17호 > 현금 지급 현황 보고 양식(예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금 지급 현황

수행기관명				사업유	형				
사업단명	○○○사업			사업코	사업코드 <i>※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i>				
담당자	담당자				호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००년 ○○월 현금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예시)	◆ 주요 내용- (예시) 현금지급자 전월 대비 10명 감소하여, 총 70명- (예시) ○○○사업 참여자 윤 ○ ○ 신규 현금 지급								
참여자(성명)	생년월일	i	금융거래 불	가 사유		비고(변경사항)		
홍 (0	1950,06,30.	<i>∆l</i> ફ	<i>불량으로</i>	<i>통장</i> 입	屌	○○월 중도포기		
윤 0	0	1945.07.10.	통장거래 중지				○○월 신규 현금 지급자		
합계							총 ○○명		
20 년 월 일									
	(수행기관명) ○○○○								

(지방자치단체) ○○○○ 귀하

수행기관

담당자 서명

메모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2-1호 >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사업계획서

7	분	□ 계속(최초 시작	2000년)	→ (선년도 사	업번호 2024 -(00000)
	正	□ 신규					
0	줘	□ 노노케어	□ 취약계층	지원	사업	□(시작일) 202	25.00.00.
유 형		□ 공공시설 봉사	□ 경륜전수	활동	기간	□(종료일) 202	25.00.00.
분류	루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기관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25년 노인공익활동사업 계획서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 시 첨부 -

1. 활동개요

사	업	명			총 액	 천원
사업 기간	시 작	일	2025.00.00.	예 산		
	종 료 일		2025.00.00.	(단위:	활동비	천원
	운 영 개 월		개월	천 원)	Lieusii ii	=101
참	여 대	상			부대경비	천원
нН	정	량	во		동 비 월 기준)	원
활	동 시	간	주 회	/ 일 시긴	· / 월 시	간
주 내	요 활 용 요	동 약	0			

2. 사업타당성 분석

- 환경분석
 - 지역적 특성 및 인구조건 등
- 활동필요성
 - 수요처, 수요자 예측자료, 욕구조사 내용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등
 - 수요처 및 수요자 욕구조사 내용 등

- 서비스 제공방안
 - 지역 내 관련사업 추진기관, 서비스 차별화 및 지역자원 동원계획 등
-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활동평가 결과의 반영내용 (계속활동일 경우)

작성 방법 • 활동대상 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노인인구 비율 및 지역의 욕구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

3. 활동목표

ルネワㅠ		илоп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산출목표	<u> </u>	성과목표	성과지표	근거자료			
<i>작성</i> 방법	(예시 : 이상의 • 성과목: (예시 : 만족도 • 산출목화 · 동일하 • 성과지: - 성과 - 제시 (예)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표 :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 건강체조 사업은 추진 시 결과 등) 표와 성과목표를 분리하여 거나 성과목표 작성이 어 표 : 성과를 측정할 수 있 가지표는 변화량, 빈도, 수 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시 : 수혜자 소외감 감소울	참여 시 2인 1조, 최대 취약5 나는 효과 또는 변화 수혜자 건강증진 향상, 노노카 작성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려울 경우 산출목표만 작성 '는 지표나 측정도구 등	따라 산출목표와 성과목표가 1 가능 수 있어야 함. 등)			

4. 세부사업 내용

가. 활동 매칭 및 주요활동 내용

활동팀	활동인원(명)	알↑츤/└┞└┠/ TICA	주요 활동내용			
	결승인편(당)	활동(담당)지역	대구분	활동내용		
 합계						

수혜자 등이 될 수도 있고 기록물이 될 수도 있음

나. 활동관리

- 활동 매칭 방안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인원수, 수요처 월간 활동현장 방문요청 횟수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 매칭 혐의
- 수요처 개발 및 관리방안
 -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개발방안(기관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업홍보 방안 등)
- 서비스 수요처(수혜자)확보 및 관리방안
 - 서비스 수혜자 대상범위, 선정방법 및 선정인원 등
- 기타사항
 - 활동준비 기간, 활동중간 휴무기간 등

다. 교육 및 등 사업관리 계획

구분	주요활동	주요내용 및 방법	운영 시기	운영 인력	참여 인원	시행횟수 (시간)	비고
70	소양교육						
교육	안전교육						
 간담회							
평가회							

[※] 교육, 발대식, 문화활동, 만족도조사 등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재

라. 월별 추진 계획

월별 주요활동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작 성 방 법 • 활동배치 및 주요 활동내용 : 활동을 대구분으로 작성 후 간략한 활동 소개를 작성 정서지원, 환경정리, 동행 등 주요활동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함

5. 소요예산 세부내역

	산출근거	ΗΙЭ			
	총계 (단위 : 위			-	비고
활	동 비	소 계			
	부대경비 힡	i계			
	상 해 보 험	소 계			
	피 복 비	소 계			
	홍 보 비	소 계			
활 동	회 의 비	소 계			
관	교 육 비	소 계			
리 비	팀 장 수 당	소 계			
	활 동 진 행 비	소 계			
	비품 구입비	소계			
	문화활동비	소계			
	공공요금 중 전 화 요 금	소계			
	출 장 비	소계			
활	유류비 보조	소계			
동 운	교육참가비	소계			
년 80 비		소 계			
	노인일자리 담 당 자 제 수 당			경력수당 0원 x 0명 = 0원 기족수당 0원 x 0명 = 0원 연차수당 0원 x 0명 = 0원 사회보험료 부족분 0원	

작성 방법

-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중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은 부대경비 총액 중 인당 <u>2.829</u>천원 범위 내에서 산정
-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수당 중 사회보험료 부족분, <u>경력수당</u>,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부대경비 총액의 5%내에서 산정 연차수당 계산 : {(2,097천원÷209시간)×8시간,×연차일수

6. 향후 운영계획

 \bigcirc

 \bigcirc

작성 방법

- 활동종료 후 활동지속성에 대한 자구노력 및 계획 정도
- 활동종료 후 참여자 욕구 재조사 후 지속 및 확대계획 등 중장기 발전전략
- 차기 연도 참여자 및 예산 등

신청자명

서식 2-2호 >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수요자용)

(앞면)

□ 남성 □ 여성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서 (수요자용)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수요자 해당 -생년월일

성 별

T	연락처			주 소				
필수	보호구분	□ 기초생활보장대상	자 ㄷ] 차상위 [] 일반			
기재 사항		요청횟수			주	회		
~10	방문주기	제공기간				~ .		
		요청시간] 오전		□ 오후	[그 기타()
	ارمحرا	□ 노인돌봄서비스		□ 노노	케어	_ 5	E시락배달	
	이용중인 서비스	□ 재가보훈실무관(보	훈부)	□ 노인	장기요양보험		밑반찬배달	
eu	۸۱ <u>۱۱۲۰</u>	□ 방문요양서비스		□ 경로	식당	□ 7	건강음료배달	
선택	세대구성	□ 노인독신		□ 노인	노인부부 🗆 경제		능력 있는 가족 동거	
기재 항목	(가족구성)	□ 경제능력 없는 가	족동거		□ 기타			
07	생활환경	□ 양호		□ 보통		□ 미흡	<u>5</u>	
	건강상태 [*]	의사소통가능정도	□ 온	^난 전가능	□ 경미 불편		□ 심각 불	편
	1684I	거동가능정도	□ 온	난전자립	□ 부분도움(!	도구이용 등)	□ 완전도욷	2
(생활 ㅇ 본인 이를 ㅇ 본인 합니	알정보제공및교육/ 은 노인공익활동/ 어길시 노인공약 은 노인공익활동/ 다.	(홀로사는노인에대한자 지원) 등에 따라 노인된 사업 서비스가 도움요 I활동사업 서비스 제공 사업 서비스와 제공 내 I활동사업 서비스 제공	공익활동 청 범위 당이 중단 용이 유	사업 서비스를 내에서 활동 단될 수 있음을 사하여 중복 (를 제공받기 위한 참여자와 협의(을 확인합니다. 이용이 불가능 /	해 위와 같이 / 협약서 등)에 ! 사항에 대해 충	신청합니다. 의해 제공됨을 분히 숙지하였음	확인하며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u>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u> 귀하							
* 1	담당자 의견				=	수행기관명		
(보호	필요 내용 등)					담당자명		
* 별표(*)	는 해당 기관 담당	당자 또는 신청서 접수기	나가 기자	CH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필수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방문주기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제공서비스 내용 협의 및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후 5년까지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사업종료 후 10년까지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 정보	이용증인 서비스, 가 족구 성형태, 생활환경, 건강상태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제공서비스 내용 협의 및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후 5년까지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사업종료 후 10년까지

[※] 위의 선택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건강상태 (와)소통 가능정도, 거동가능정도)	제공 서비스 협의 및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후 5년까지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사업종료 후 10년까지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서식 2-3호 >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서(수요처용)

노인공익활동사업 서비스 신청서(수요처용)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수요처 해당 -

신청기관	* 해당시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 해당시					
신청자(대표)		전화번호							
주소									
활동요구분이	:								
활동희망인원									
	년 월 일		□ 주3회	□ 주2회					
활동희망 기간	· 년 월 일	활동희망 주기	□ 주1회	□기타()				
	(개월)		│ │ □ 오전 □] 오후 🗌 기	타()				
	□ 이용하지 않음(신규신청)	,	0101171	□ 2024년	□ 2023년				
서 비 스 이용현황	□ 당해기관 서비스 이용(사업명 : □ 타기관 서비스 이용 (기관명 : , 사업명 :)	이용시기 (중복체크)	□ 2022년	□ 2021년				
위와 집	위와 같이 노인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서비스 이용(제공)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00000000 신 청 인	(인 또는	- 서명)						

수행기관명

담당자

종합 의견

서식 2-4호 노인공익활동사업 협약서(예시)

	함)은 다음과				"참여자"라 함),(이하 , 네공에 합의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
1. 활동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웜	일까지로 한다.
자원봉사의 나 참여자는 활동 지원사업 노업 수행한다. 수요처(수요자) 수행기관에 저 본 협약서에 명 않을 시에는 ※ 수요처 관계	사업 수요처(용과 장소 기간 내에 = 인공익활동시 는 참여노인(출할 수 있 경시되지 아니 서비스 제한 자는 해당	(수요자)는 수요차 등을 수행기관, 수요처(수요자)에 나업 운영안내의 의 활동내역을 확 (도록 지원한다.	처 행동3 참여자2 서 제공하 내용을 인하고, 참 처와 참여 요청할 = 불가	남령을 준식 사 성실히 하는 활동 벗어나기 참여자가 함 하다의 협약 수 있다.	수하며, 참여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협의한다. 장소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 않은 범위에서 활동을 성실히 열 1회 이상 활동내역(활동일지 등)을 막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① 성 명: 연락처: ② 성 명: 연락처: ③ 성 명: 연락처:	참 여 자) ~				= =/

※ 기타 상황(추경사업 추진 등)에 의해 협약기간은 변동 가능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2-5호

▶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I		<u>합계</u>	100(110)				
			<u>0원</u> 0원 초과~5만원 이하	65 55	1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5	1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35	1			
		단독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25				
			20만원 초과~25만원 이하	20		_		
		' '	25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5				
			30만원 초과~35만원 이하	10				
			35만원 초과~40만원 이하	5				
	소득		40만원 초과~ 0워	0 65				
가	으로 인정액		0원 초과~10만원 이하	55	1			
	1794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5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35				
		부부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25		_		
		가구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0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15	-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10 5	-			
			80만원 초과~	0	1			
						*기초연금 미수급자이면서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u> 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u>	0		<u>일괄 0점 부여</u>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_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동거하는 노인가구	5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1.01511717				① (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작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 (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작계비속과 세대를		
			노인독신가구	3		② (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장애인) 참여신청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세대		노인부부가구(2명)	1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9	구성		TUTT/11(26)	'		시상·군수·구정상이 근로능력이 없나고 판성한 사람과 세대르 간이하는 겨오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중에만) 참면신청사가 '상에인고분족신 및 식업세월입,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에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11 전 7주의 민법 제779조의 가족 (고민화장 및 함께 11 전 11 전 12 전 12 전 12 전 12 전 12 전 12		
		·	동거하는 노인가구	0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중 65세 이상인 자가 건강보험		
			<u> </u>		1	(식세달속 및 영제사배 등) 중 65세 이상인 사가 건강모범 직장미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기준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노인부부가구로 배점하며, 직계활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활족·배우자의 형제자배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갈이하여야 한		
		/JIK	<u>71</u> 5	0		지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는		
		(7)等(<u>이 아닌 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u>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여야 함		
				15 12	-			
		ㅂ해	양호	9	1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모앵		1	나갈 때를 보고 판단		
		능력 미흡		6				
다	활동			0		*지팡이 및 실버카트 등 보행 보조도구 사용		
9	역량			15				
		의사	양호	12	1			
			₹	9	-	*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이 원활한지를 보고 판단		
		소통 미흡		3	1			
				0	1			
	참여경력		신규참여자	5		*2024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가점)		해당없음	0				
	60~64세		차상위 계층 해당	60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 차상위 계층이 이닌 경우 노인공약활동사업 참여 불가		
마	차상위	해당의	었음(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불가)	0		게용이 이런 경우 도인용약활용사업 참여 돌기 *다만, 참여자 선발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		
	자격	91101				(배우자 포함) 중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폐지수집		<u>폐지수집 노인</u>	<u>5</u>		<u>*'24년 자자체에서 실시한 폐자수집 노인 전수조사 명단에 포함된 폐자노인</u>		
바	보(기점)		 해당없음	0		기준, 수행기관에서 자체 발굴한 경우 지자체 보고 후 전수조사 명단에 등록하여 가점 부여		
-X: 60°		네츠이 사		_	ᄾᅩᄀ(베ᄋ	<u>중독이어 가입 무어</u> PAT 포함)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만 서박 가능		

^{※ 60-64}세 차성위 계층의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나,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직역연금수급(배우자 포함)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선발 가능 ※ 활동역량 선발점수 중 보행능력, 의사소통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0점인 경우, 참여제한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1순위, 활동역량 〉 2순위, 세대구성 〉 3순위, 소득인정액)

서식 2-6호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일지(예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일지(예시)

기관명	참여사업명	
참여자 서명	수요처명(서비스대상자명)	

확인자(수요처(자)) 서명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유무 (사고내용, 조치내용)			마/야	-예시) 출근 중 교통사고, 병원이송,	환동비감영	- 예시) 활동 중념어짐, 응급조치 후	활동지속	마/야	0
활동장소									
ያ የከያ መ									
	幸れた	71.0							
활동시간	叫	(00:00)							
	차 ~	(00:00)							
다 다 등									
얞							- 5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

<路 8 8 売>

① 참여자는 반드시 자핍보 서명하되. 위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 오픈슨 엄지 지장으로 대체 가능

② 확인자는 서명 또는 남인, 지장 가능

② 활동시간과 참여자서명, 확인자시명 부분외에는 사육운영 현황등을 고려하여 변경활용 가능

서식 2-7호 ▶ 노인공익활동사업 안전점검 회의록(예시)

① 小업任場		년0 인	역미 HO	월) 노인공익활동사업 안전점검 회의록	사업단팀장	古	기관장
(2) 활동장소	△ 1 弘贄·인사 2 보호귀조川· 모가 등 확인 사업단 팀장, 참여자 → 팀장→참여자, 참여자간	UN 등	1	3 당열활동 및 위험시항 전달 위험예지, 사고 및 아저사고 전파 → 안전구호 3회 복장	不是 外部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小型 内田
() () () () ()	শ্রু এবদাঞ্চ						
4.	④ 위험요인(위험요인예측, 실제사고, 아차사고 등)	⑤ 위험도 (해당사항 V)	きから	③ 위험방지대책(조치예정일)		② 이행확인 (조치한 경우 V)	(사 수원 제수 시)
		\$\psi_{\psi_{\psi}}	16			사업단팀장	다음과
1주차							
2주录 (~)							
3주차	7/7	Till I	4				
4주차							

□ 작성방법

〈 일반사항 〉

- 1. 노인공익활동사업 안전점검 회의록은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공원·놀이터 지원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 활동장소가 실외활동인 사업은 필수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실내 활동 사업에도 활용 가능
- 2. 사업단 팀장은 안전회의를 활동 전 매번 실시하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점검 회의록을 주단위로 작성
- ※ 사업단 팀장, 참여자 전원 참여 필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즉시 연락
- 3. 수행기관 담당자는 안전점검 회의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관련 서류 보관
- 4. 안전점검 회의록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안전점검 회의 진행 순서 〉

- 1 집합·인사
 - 사업단 팀장, 참여자
- 2 보호구(조끼, 모자, 신발 등) 확인 팀장→참여자, 참여자간
- 3 당일활동 및 위험사항 전달 위험예지, 사고 및 아차사고 전파
- 4 위험 확인 모든 참여자 안전구호 3회 복창

〈 세부항목별 작성방법 〉

- ① 사업단명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단명으로 표기
- ② 활동장소 : 참여자가 실제로 활동하는 장소를 표기(둘 이상의 장소인 경우 모두 표기)
- ③ (○○)월 활동 예정내용 : (작성예시) ○○ 공원 환경개선 진행. ○○ 학교 앞 교통지도
- ④ 위험요인 : 해당 활동장소에 대한 위험요인 뿐 아니라, 실제사고, 아차사고(사고가 일어날 뻔하였으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 등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사고에 대한 위험요인도 모두 기술
- ※ (작성예시) 공원 진입로 보도블록 파손으로 이동 중 발에 걸려 낙상사고 발생 위험(위험요인 예측) 잡초 제거 중 손으로 무리하게 잡초를 잡아당기다 뒤로 넘어지면서 요추 골절 사고 발생(실제사고) 공영 주차장 청소 중 주차 스토퍼에 걸려 넘어졌으나 부상은 없음(아차사고)
- ⑤ 위험도 : (상)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중)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 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하) 활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이 예상되는 경우
- ⑥ 위험방지대책 :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방지대책, 조치예정일 등을 작성
- ※ (작성예시) 파손된 보도블록 반경 내 주의 표지판 설치 및 참여자 이동 시 접근금지(신호수 배치 등) 00월 00일 조치 예정, 해충에 의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해충 기피제 지급(00월 00일 조치예정)
- ⑦ 이행확인 : 조치한 경우 체크를 하고 조치완료일을 표시

서식 2-8호 노인공익활동사업 연장활동 동의서(예시)

노인공익활동사업 연장활동 동의서

수행기	관명				사업단명				
연장활 해당		_	월		연장활동 : 인원(명)			명	
노인공익활	인공익활동사업 연장활동을 위해 아래와 같이 동의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활동연장 동의내용(작성예시) - (현행) 월 최대 30시간, 1일 최대 3시간 → (연장) 월 최대 42시간, 1일 최대 4시간 ※ 위 사항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월 30시간까지 활동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여	자(성명)		생년월일			참여자	서명	
			20 년	월 월	! 일				
			(수행기관명 보건복지부(한)			
메모					담당	자 서명			

서식 2-9호 ▶ 지역봉사지도원증

제 호 지역봉사지도원증 성 명: 사진 생년월일 : $(2.5 \text{cm} \times 3 \text{cm})$ 주 소: 위 사람은「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월 일 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m²]

서식 2-10호 >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 사 업 단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지 급 장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년 월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공익 활동사업 활동비 일금 원정을 예:금융거래 불가 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인)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2-11호 ▶ 노인공익활동사업 사업운영 결과보고서(예시)

노인공익활동사업 사업운영 결과보고서(예시)

대 유 형	□ 노노케어 □ 공공시설 봉사	□ 취약계층 지원 □ 경륜전수 활동
사업코드		※ 분류코드 참조

1. 사업개요

활 동 명 (사 업 명)	o							
활동기간 (사업기간)	0							
활동인원	• 참여인원		명	• 중도포기	度	ļ		
주요내용	0							
총 예 산		원	집행예산		원	집행율	%	6

2. 자체평가 결과 (목표달성도)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추진실적**

- *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는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 ** 추진실적 : 산출목표 및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 작성

3. 노인일자리 담당자 현황

(단위 : 명)

배정인원			채용인원		
(A+B)	본예산(A)	추경(B)	(C+D)	본예산(C)	추경(D)

- * 사업단이 여러 개인 경우 1개 사업단의 결과보고서에만 담당자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외의 사업단은 배정인원, 채용인원란에 「운영중인 ○○○사업단 결과보고서에 기작성」으로 표기
- * 배정된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없는 경우 배정인원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4.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항목)	계획예산*	집행액	차액
총계(A+B)				
칟	남여자 활동비 계(A)			
	부대경비 계(B)			
 부	상해보험			
대 경	피복비			
비 비 세	홍보비			
^// 부 내	회의비			
년 역	교육비 			

^{*} 계획예산 :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세부내역 작성

5. 사업평가

사업성과	•
주요문제* (애로사항)	•
향후계획**	•

* 주요문제 :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미흡하였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재 ** 향후계획 : 주요문제로 작성한 사항에 대한 차년도 개선 방향 등 기재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3-1호 ▶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사업계획서

구 분	□ 계속(최초 시작 20○○ 년) → (전년도 사업번호 2024-○○○○)
구 분	□ 2025년도 신규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유 형	□ 공공 전문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기타
사업기간	□(시작일) 2025.○○.○○. □(종료일) 2025.○○.○○.
분류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25년 노인역량활용사업 계획서

(※ 정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 시 첨부용)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 기간	시 작 일	2025.00.00.		총 계	천원	
	종 료 일	2025.00.00.	· 예 산	인 건 비	천원	
	운영개월	개월	(단위:천원)	주 휴 및 연 차 수 당	 천원	
 참여대상				부 대 경 비	천원	
배 정 량		명 임금수준(월)				
근무시간 주			회 / 일	시간 / 월 시	l간	
주.	요사업	0				
내	용요약	0				

[※]사업명은 아이템 내용을 대표하고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축약하여 기입하되, 기관에서 작명한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괄호 안 표기

2. 사업타당성 분석

- 환경분석
 - 지역적 특성 및 인구조건 등

○ 활동필요성

- 수요처. 수요자 예측자료. 욕구조사 내용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등
- 수요처 및 수요자 욕구조사 내용 등
- 서비스 제공방안
 - 지역 내 관련사업 추진기관. 서비스 차별화 및 지역자원 동원계획 등
-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평가 결과의 반영내용 (계속활동일 경우)

작성 방법 • 참여대상 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노인인구 비율 및 지역의 욕구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

3. 사업목표

산출목표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근거자료		

작성

• 산출목표 : 근무를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예시 : 지역아동센터에 20명의 노인 참여 시 2인 1조, 최대 10개 지역아동센터 지원)

• 산출목표와 성과목표를 분리하여 작성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산출목표와 성과목표가

- 성과목표 : 근무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 (예시 : 지역아동센터 근무 후 수요처의 만족도 결과 등)
- 동일하거나 성과목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산출목표만 작성 가능
 - 성과지표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측정도구 등
 - 성과지표는 변화량, 빈도, 수 혹은 % 등으로 제시
 - 제시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정도(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근거자료: 해당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항목으로, 근거자료는 참여자 및 서비스 수요자 등이 될 수도 있고 기록물이 될 수도 있음

4. 세부사업 내용

가. 근무 연계 및 주요활동 내용

근무팀	참여인원(명)	근무(담당)지역	주요 근무내용			
			대구분	근무내용		
합계						

- 근무 연계 방안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인원수, 수요처 월간 근무현장 방문요청 횟수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 연계 협의
- 수요처 개발 및 관리방안
 - 근무를 위해 필요한 기관 개발방안(기관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업홍보 방안 등)
- 서비스 수요처(수요자) 확보 및 관리방안
 - 서비스 수요자 대상범위, 선정방법 및 선정인원 등
- 기타사항
 - 준비 기간, 중간 휴무기간 등

다. 교육 및 기타 근무 내용

구분	주요 근무	근무내용 및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횟수, 시간
	소양교육					
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					
기타						
기다						

[※] 교육은 기본교육 등. 기타는 발대식, 정기간담회, 활동평가회, 만족도조사 등 기재

라. 월별 추진 계획

월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작 성 • 근무배치 및 주요 근무내용 : 근무를 대구분으로 작성 후 간략한 근무 소개를 작성 방 법 정서지원, 환경정리, 동행 등 주요근무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함

5. 소요예산 세부내역

	 구 분		계(단위:원)	산출근거	¬
	총계(단위:원)			-	비고
	인건비	소 계			
	부대경비 합계			-	
	주휴수당	소 계			
	연차수당	소 계			
	피복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교육비 (참여자)	소 계			
	팀장수당	소 계			
	문화활동비	소 계			
	출장비	소 계			
	비품 구입비	소 계			
	교육참가비	소 계			
부대 경비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소 계			
	참여자	소 계			
	유류비 보조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소 계			
	참여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소 계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소 계		경력수당 0원 x 0명 = 0원 기족수당 0원 x 0명 = 0원 연차수당 0원 x 0명 = 0원 사회보험료 부족분 0원	
	사업진행비	소 계			
	배상책임보험료	소 계			
	홍보비	소 계			

작성 방법

-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중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은 부대경비 총액 중 인당 <u>2,829</u>천원 범위 내에서 산정
-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중 사회보험료 부족분, <u>경력수당</u>,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부대경비 총액의 5%내에서 산정 연차수당 계산 : {(2,097천원÷209시간)×8시간(×연차일수

6. 향후 운영계획

 \bigcirc

 \bigcirc

작성 방법

- 참여종료 후 참여자 욕구 재조사 후 지속 및 확대계획 등 중장기 발전전략
- 차기 연도 참여자 및 예산 등

서식 3-2호 ▶ 노인역량활용사업 선발기준표 및 지표별 세부 내용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선발기준표

	고려:	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의사전달능력 (상)		10	
			의사전달능력 (중)		5	
		01111 = 0171	의사전달능력 (하)		0	
		의사소통역량	경청능력 (상)	10		
			경청능력 (중)	5		
71	황도성라		경청능력 (하)		0	
가 (필수)	활동역량 (50점)		①보행능력, ②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3가지 충족	20	
(2T)	(30 🖹)	신체활동능력	5회 연속, ③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2가지 충족	10	
		2 1200 1	것에 손 뻗쳐 닿기	 1가지 충족	0	
			컴퓨터 및 정보화능력 (상)	17171 07	10	
		사무역량	컴퓨터 및 정보화능력 (중)		5	
		ATTO	컴퓨터 및 정보화능력 (하)		0	
		공적수급 여부	- '김규니 및 정도와당박 (이) - 차상위계층 자격 有		15	
					0	
		(60세~64세)	차상위계층 자격 無			
		공적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0원		15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0원 초과		10	
	TIO =		기초연금 미수급	17	0	
나	필요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기	<u>'H</u>	10	
(필수)	(30점)		노인독신가구		8	
		세대구성	노인부부가구(2명)	5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가하는 노인 가구		0	
			기타(가족이 아닌 자와 동가하는 경우 등)		<u>0</u>	
		노인일자리 신규참여	신규 해당		5	
			신규 미해당		0	
			사업이해도 (상)		5	
		적극성	사업이해도 (하)		0	
	인성역량	770	목표의식/지원동기 명확		5	
	(20점)		목표의식/지원동기 불명확		0	
	(201)		면접태도 (상)		10	
다		친절	면접태도 (중)		5	
(선택/			면접태도 (하)		0	
택1)			협조적 관계 (상)		10	
	EIIOI 21 34	협조적 단계	협조적 관계 (중)		5	
	대인관계		협조적 관계 (하)		0	
	역량 (20전)		갈등해결 능력 (상)		10	
	(20점)	갈등해결 능력	갈등해결 능력 (중)		5	
			갈등해결 능력 (하)		0	
라	유관자격증 가점	H/10전)	자격증 유		10	
(가점)	유민사건당 가심	(10日)	자격증 무		0	
마	지어져 거하다.	T-1/C T-1)	직업적 경험 유		5	
(가점)	직업적 경험 가	当(3名)	직업적 경험 무		0	
바	장애인 채용 가	저(5저)	<u>장애인</u>		<u>5</u>	
(가점)	경에진 제공 기	□(√ä)	<u>해당없음</u>		<u>0</u>	
산			취업지원 대상자		<u>10</u>	
스 (가점)	취업지원 대상지	<u> 가점(최대10점)</u>			<u>5</u>	
			해당없음		0	
<u>0</u> +	폐지수집 노인 :	<u>가점(5점)</u>	폐지수집 노인		<u>5</u>	
<u>(가점)</u>			<u>해당없음</u>		0	
		합	계		100	
					<u>(130)</u>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비율에 따라 10점, 5점 부여하되,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만 적용(최대 10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 \times 전국화 사업 선발기준은 별도 안내에 따름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선발기준 지표별 세부내용

선발기준	비고
의사소통역량	■ 면접과정에서 확인 - (의사전달)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조리있게 표현하는가 - (경청능력) 면접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하는가
신체활동능력	■ ① 보행능력*, ②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5회 연속, ③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에 손 뻗쳐 닿기 평가 *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사무역량	■ 전산관련 자격증(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등) 보유시 '상'에 해당 ■ 자격증이 없는 경우 현장에서 간단한 질문 또는 컴퓨터 실습을 통해 <u>'중' 또는 '하' 부여</u>
적극성	■ 면접을 통해 판단
 친절	■ 면접(태도)을 통해 판단
대인관계 역량	■ 역량중심행동면접 질문 중 선택, 면접관 판단으로 배점 영역 절문 한무도 때문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처리해야 했던 경험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사용(갈등)을 해결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어떻게 응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과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관자격증	 ● 관련분야 국가자격(전문, 기술) 보유: 자격증 제출 -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사회복지사 2급 등), 돌봄 영역 자격(간호사, 간호 조무사 등)은 관련 자격으로 모두 인정 - 운전면허, 원동기면허증 등의 자격이 근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자격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 국가전문자격제도 * 국가기술자격이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인 반면 국가자격은 주로 전문서비스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남 - 민간자격증은 불인정 ■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하는 직업훈련 이수(수료)증 인정 - 구직자 또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수료)한 경우 확인증 (이수증, 수료증 등) 제출 * (교육목록 확인)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내 직업훈련정보
직업적 경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회적 경험 보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제출 - 지원한 노인일자리 직무와 관련된 경력(노인일자리 경력 포함)은 모두 인정
장애인 채용	■ 장애 보유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u>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상이 등급 1~7급을 받은 자)</u> 등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장애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장애인 증명서, 복자카드 사본, <u>국가유공자 사본</u> 등)시 모두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비율이 확인되는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등) 증명서 제출 <u>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등록증 등 유사서류 인정불가</u>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선발된 참여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불가
폐지수집 노인	* '24년 지자체에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명단에 포함된 폐지노인 기준, 수행기관에서 자체 발굴한 경우 지자체 보고 후 전수조사 명단에 등록하여 가점 부여
기타사항	■ 동점자 발생시,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1순위, 활동역량 > 2순위, 필요도 > 3순위, 인성역량·대인관계역량 > 4순위, 직업적 경험 > 5순위, 유관자격증)

서식 3-3호 노인역량활용사업 근로계약서(예시)

(단시간 근로자) 근 로 계 약 서

사용자	기	관 명	0000000 (대표자 :)
(갑)	소	재 지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을)	주	소	

제 1 조 (목 적)

"을"은 "갑"이 지정한 업무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갑"은 이에 대해 "을"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근로계약기간) *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작성요망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담당 업무 및 근로 장소)

① "을"의 담당 업무는 (

)으로 한다.

② "을"이 근무하는 근무 장소는 (

)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담당 업무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① "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이내(1주 근로시간은 15시간 이내)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1. 근무스케줄표 및 임금산정 기준]에 따른다.
- ② "갑"은 "을"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휴일 및 휴가)

- 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휴일(매주 요일, 단 업무상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함),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기타 참여자의 구체적인 휴일 및 휴가에 관한 내용은 [첨부1. 근무스케줄표 및 임금산정기준]에 따른다.

제 6 조 (임금)

- ① "을"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첨부1. 근무스케줄표 및 임금산정 기준]을 따른다.
 - 시급 : 10.570원
 - 지급일 :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매월 ()일에 지급 [단,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의 아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 ※ 예금주명 :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 7 조 (성실이행의무)

- ① "을"은 계약기간 중 "갑" 또는 "갑의 업무를 위임받아 지휘하는 자"로부터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을"이 계약기간 중 "갑" 등으로부터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업무부적합, 근태 불량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기타)

- ① 이 계약에서 정한 바 이외의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노인 일자리사업 지침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당해 연도 노인역량활용사업 조기소진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사용자) 기관명 : (근로자) 성 명 : (인)

대표자: (인) 연락처:

소재지: 주 소:

서식 3-4호 ▶ 노인역량활용사업 서비스 신청서(수요처용)

노인역량활용사업 서비스 신청서(수요처용)

사업자번호

신정기관 		(고유번호)	
신청자(대표)		전화번호	
주소			
요구분야			
희망인원			
÷In.	년 월 일 희망주기	□ 주5회	□ 주3회
희망 기간	(주 소정근로	□ 주2회	□기타()
710	년 월 일 15시간 기준)	□ 오전	□ 오후 □ 기타()
	□ 이용하지 않음(신규신청)	이용시기	□ 2023년 □ 2024년
│ │ 서 비 스	│ │□ 당해기관 서비스 이용		□ 최초
이용현황	(사업명:)	수요처 안	전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 타기관 서비스 이용 (기관명: , 사업명:)	위험성평7 실시여부	<u> □ 실시</u> □ 미실시
 ㅇ 본 기관	은 "수요처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흑	확인합니다.	
 ㅇ 본 기관	은 위와 같이 노인역량활용사업 서비스 이용(R	이는 음(되	변.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			
 ㅇ 본 기관	은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	사고발생 시 피해조사 및
	지 대책 수립 등 지원에 관해 적극 협조할 ·		
	년 월	일	
		2	
	신청기관 00000000	(OL 55	1 1104/
	신 청 인	(인 또	는 서명)
종합		수행기	기관명
의견		담당	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여부는 안전실태조사를 위한 단순 설문으로, 서비스 신청과는 무관

서식 3-5호 > 노인역량활용사업 월별 참여자 출근부(예시)

노인역량활용사업 월별 참여자 출근부(월) (예시)

사업단명 :				참여자 성명:					
01	출	근		÷LOJTI	월	출	근		FLOATI
월일	근무시작 시간	근무종료 시간	결근	결근 참여자 서명		근무시작 시간	근무종료 시간	결근	참여자 서명
3 2	10:00	13:00							
근무	출근(/	시간)	Ç	일(시간)	5lOITL	· *!MTL 70	111010 āl01	등 의 1 등	:/ ///#
결과	결·	근	,	일	· 확인자:참여자 근무내역을 확인 후 월 1회 서명			4 48	
특이		관계자(확인자 / : 0000년			을 정기 방		문 일시 작성, <u>무자</u> : 홍길동		
사항 	ㅇ 참여자 관	관련 특이사형	, 근무 특	특이사항 기	록				

※ 작성요령 :

- 근무일자와 근무시작시간, 근무종료시간 작성
- 출근 시 참여자는 참여자 서명란에 서명(서명 예시 : 홍길동, 홍, 지장 가능 / 단, 도장은 불가)
- 지각·조퇴 시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 명시
- 결근은 결근란에 표시
- 수행기관 확인자는 참여자 근무내역 확인 후 월 1회 서명(서명 예시 : 홍길동, 홍, 지장 또는 도장)
- ※ 수행기관 및 사업단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단. 일일단위 참여자 서명란과 월 1회 확인자 서명란은 필수 삽입)
-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_			_		_			_	_		_	_		_
		후그등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유무일	
Ш	0	근무일		0	근무일		0	근무일		0	근무일		0	급급등	
		휴그등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유무일	
110	0	근무일		0	급무일		0	근무일		0	근무일		0	급급금	
nle		휴무의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유무일	
и	0	근무일		0	급무일		0	근무일		0	근무일		0	급급금	
4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7	0	근무일		0	근무일		0	근무일		0	근무일		0	급급등	
<u></u>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유무일	
101	0	근무일		0	급급근		0	근무일		0	근무일		0	ቬ士근	
7501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ቬ금쁒	
Ohn	0	근무일		0	ቬ士근		0	ቬ士근		0	ቬ士근		0	ቬ士근	
-n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투급부	
Qin	0	근무일		0	급급		0	급남하		0	급급		0	급급금	
	9 점 수 ^무 가	일 월 화 수 목 금 0 0 0 0 0	의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일 本 本 本 本 本 本 本 本 本 本 本 本 本 本 上	의 한 하는 이 하는	2 4	1	1日	1	대域 (元) (日本) (日本)	4	- 日本	1	1	1

(근로자) 성명

<u>ල</u>

(년)

대표자 :

(사용자) 기관명

1일 소정근로시간 : (

시업시간 (

..

κŀ

) 시 ※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종업시간 (휴계시간 (

소재지 :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 부여

서식 3-7호 > 월별 임금지급대장(예시)

()월 분 임금지급대장(예시)**

〈 사업단명 : , 수행기관명: 〉

ш=	ИП	생년	<u>고용</u>	종사	근무	주휴			금액(원)			온라인	금융	임금 이체	
번호	성명	생년 월일	<u>월일</u>	종사 업무	일수 (시간)	주휴 일수 (시간)	기본 급	주휴 수당	연차 수당*	<u>팀장</u> 수당*	<u>공제</u> 액	입금 일자	<u>금융</u> <u>기관명</u>	<u>임금 이체</u> <u>계좌번호</u>	비고
															_

^{*} 해당 시에만 기재

^{**} 유사한 형태로 정보시스템 자료 대체 가능(출력 후 보관)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3-8호 노인역량활용사업 급여명세서(예시)

0월급여명세서

지급일 : 20 .00.00.

성명 소속

생년월일

세부 내역

7	급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기본급		건강보험	
주휴수당		장기요양보험	
<u>연차수당</u>		고용보험	
<u>기타수당</u>		산재보험	
<u>팀장수당</u>		소득세	
		지방세	
지급액 계 (A)		공제액 계 (B)	
		실 수령액 (A-B)	

시급	<u>총</u> 근	<u>무시간</u>	주휴시간	7151.7.0.1171	
시티	<u>실제근무시간</u>	<u>연차사용시간</u>	구유시간	기니는구시인	
10,570원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기본급	총 근무시간(실제근무시간 + 연차사용시간) x 시급				
주휴수당	주휴시간 x 시급				
<u>연차수당</u>	연차미사용시간 × 시급				
<u>기타수당</u>	<u>기타근무시간 x 시급 x 1.5</u>				

※ 상기 임금명세서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 본 양식은 기관 사정에 맞게 변경가능

서식 3-9호 > 대체근로 동의서(예시)

대체근로동의서

사업명:

성명:

아래와 같이 근로일과 휴무일을 변경하여 년 월 일(요일)근로하고, 년 월 일(요일)을 휴무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원래 휴무일	변경된 휴무일	
원래 근무일	변경된 근무일	

년 월 일

사용자(고용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참여자) (서명 또는 인)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3-10호 > 노인역량활용사업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 사 업 단 명:
- ○성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u>○ 지 급 장 소 :</u>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년 월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 역량활용사업 임금 일금 원정을 예:금융거래 불가 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참여자) (인)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3-11호 ▶ 노인역량활용사업 사업운영 결과보고서(예시)

노인역량활용사업 사업운영 결과보고서(예시)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대 유 형	□ 공공 전문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 기타	
사업코드	※ 분류코드 참조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참여인원	o <i>j</i>	함여인원	명	॰ 중드	도포기	명	
주요내용							
총 예 산	원	집행예산		원	집행율		%

2. 자체평가 결과 (목표달성도)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추진실적**

^{*}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는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3. 노인일자리 담당자 현황

(단위 : 명)

배정인원		채용인원				
(A+B)	본예산(A) 추경(B)		(C+D) 본예산(C)		추경(D)	

^{*} 사업단이 여러 개인 경우 1개 사업단의 결과보고서에만 담당자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외의 사업단은 배정인원, 채용인원란에 「운영중인 ○○○사업단 결과보고서에 기작성」으로 표기

^{**} 추진실적 : 산출목표 및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 작성

^{*} 배정된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없는 경우 배정인원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4.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항목)	계획예산*	집행액	차액
	총계(A+B)			
	참여자 인건비 계(A)			
	부대경비 계(B)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부 대	사회보험료			
· 경비세부내역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1	교육비 			

^{*} 계획예산 :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세부내역 작성

5. 사업평가

사업성과	
주요문제*	
(애로사항)	
향후계획**	

* 주요문제 :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미흡하였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재

** 향후계획 : 주요문제로 작성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등 기재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4-1호 > 공동체사업단 지원 신청서

※ 법정서식으로 내용, 글꼴크기, 쪽 여백 조정, 칸 추가 등 양식 임의수정 불가 ※ 별도 안내된 시행규칙 서식 활용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역수번호	기관 코드			처리기간 15일	
	[법인 정보(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			
	법인명		법인등록	먼 호	
	[기관 정보]				
	기관(기업)명		대표자 성	성명	
	사업자등록번호(고	구번 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 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총괄책임자 성	병	사업총괄	책임자 직위	
	사업총괄책임자 면	라처	사업총괄	책임자 전자우편	주소
	[전년도 사업 참여 이	[부]			
		[] 전년도 사업	참여 []전(년도 사업 미참여	
	나리 및 사회활동 지원 당동체사업단 지원을		12조제1항 및 김	上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리
					년 월 일
		신칭	성인(대표자) 성명	l	(서명 또는 인)
			하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업무 답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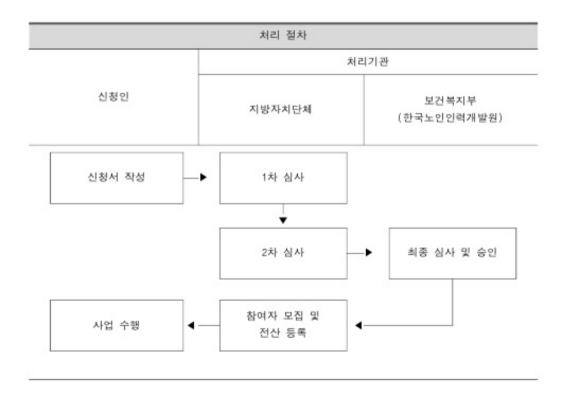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며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농이용을 통하여 신정인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2호 ▶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동체사업단) 사업계획서

2025년 공동체사업단 사업계획서

(※ 정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 시 첨부용)

사업코드	※ 분류코드표 참	조하여 기입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자등록 형태	□ 개인	□ 법인	□ 수행기관		
'25년 배정인원		명			
계속사업만 기입	사업개시 연도	년	'24년 배정인원	円の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기관장)			담당자		

- ※ 공동체사업단 사업계획서 별첨 서류: 사업단 운영규정, 사업자등록증
- ※ 정보시스템 사업계획서 등록 시 사업자번호 전산입력 및 사업자등록증 파일 필수 첨부(변동사항 발생 시 상시 업데이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명은 아이템 내용을 대표하고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축약하여 기입하되, 기관에서 작명한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괄호 안 표기 : (예시) 커피 제조·판매(커피마스터)
- 사업기간:
- 배 정 량:
- 개시 연도 이후 실적(계속사업단의 경우 해당)

(단위:원,개,개월)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배정량						
사업예산						
연간 매출액						
사업기간(개월수)						
월	월평균 참여인원수					
참여자	1인당 연평균 인건비					
<u>인건비</u>	1인당 월평균 인건비					
 적립금(누적)						

- 1인당 연평균 인건비는 보조금 및 사업수입 포함하여 개인이 받은 활동비 총액을 의미
-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연간 전체 참여자 보수의 총액을 전체 참여자에게 지급한 개월수의 합으로 나눈 금액
- '24년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

- 기관 인프라 현황
 -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을 볼 수 있는 인적자원 현황 기재(기관장, 담당자, 참여노인 인력풀 등)
 - 사업장, 시설, 장비 등 구비 여건 기재
 - 지역 내 시장 및 수요 형성 등 기재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유사 일자리 창출 사업, 수익사업 진행경험 기재

3. 사업 타당성(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당사업단을 운영하는 목적·취지 등 기재
- 환경분석
- 표적(target)시장 규모
 - 생산된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주요 거래처 등 기재
- 경쟁상품 현황
 - 표적시장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종 또는 유관 상품 현황 등 기재
- 생산품 경쟁력
 - 생산된 상품이 동종 또는 유관 상품에 비해 표적시장에서 안정적 판매가 가능한 사유 등 기재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 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상품 현황, ③ 생산품 경쟁력
- 서비스업: ① 환경 분석 및 사업 필요성, ② 경쟁 서비스 현황, ③ 서비스 경쟁력
- 영농업 : 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농작물 현황, ③ 생산 농작물 경쟁력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4. 입지선정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시확인을 위해 관련서류를 사업계획서 하단 붙임 권고)

- 생산지 확보 방안
 - 모법인 지원, 지역자원 동원 등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방안 등 기입
- 생산지 위치 및 규모
 - 생산지 주소, 면적(m²) 등 기입
- 생산지 위치의 적절성
 - 생산지 주변환경(주택가, 학교·학원가, 번화가, 사무실 밀집지역, 역주변, 시장, 유원지 등), 상권특성, 주변 교통여건 등이 생산품 판매에 적합한지 여부 등 기입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 ① 생산지 확보 방안. ② 생산지 위치 및 규모. ③ 생산지 위치의 적절성
- 서비스업: ① 입지 확보 방안, ② 입지 위치 및 규모, ③ 입지 위치의 적절성 또는 ① 수요처 발굴 방안 ② 확정된 수요처(근무지) 위치
- 영농업: ① 농지 확보 방안, ② 농지 위치 및 규모, ③ 농지 규모의 적절성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5. 생산(서비스)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원재료 구입 방안
 - 주요 원재료의 구입처 및 구입량 등 기재(향후 공동구매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 공정
 - 주요 공정별 업무내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공정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품 규격 및 가격
 - 생산품별 규격, 가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브랜드 도입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 ① 원재료 구입 방안, ② 생산 공정, ③ 생산품 규격 및 가격
- 서비스업 : ① 판매 상품 내용, ② 판매 상품별 가격 또는 ①수요처 관리 방안 ② 주요 업무 내용
- 영농업: ① 생산물 내용, ② 생산물 가격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6. 판매(홍보)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유통경로 확보 방안
 - 사업타당성 분석 시 표적(target)시장으로 정한 주요 거래처와 안정적 관계 유지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판매망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홍보 방안
 - 주요 거래처를 포함하여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홍보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2025년 추정 매출액

(단위:개,원)

품 명	단 가 (A)	일판매량 (B)	일매출액 (C=A×B)	월매출액 (D=C×영업일)	연매출액 (E=D×사업기간)
 총 계					

• 서비스업의 경우 품명은 제공서비스, 일 판매량은 서비스 제공 횟수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기타업종의 경우도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 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5년 추정 매출액
- 서비스업: ① 판매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5년 추정 매출액 또는 ① 홍보 방안 ② 사업 목적 및 목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③ 수요처 만족도 제고 방안 ④ 2025년 추정 매출액
- 영농업 : 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5년 추정 매출액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O

7. 인력운용 계획

- 참여자 근무조건
 - 근무시간, 배치방법, 근무내용, 급여수준(보조금, 사업수입), 시간당 최저임금 등(도급계약은 도급내용, 도급단가 지급기준 등)
- 월별 참여자 수

(단위 :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참여자 수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연중참여 원칙

○ 참여자 교육

구 분	교육주체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내용
소양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8. 예산운용 계획

○ 예산수입

(단위 : 원)

총 계	수익금(적립금 포함) * 계속사업	보조금	'25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 적립금 및 예상수익금은 해당 시 입력

○ 예산지출 (단위 : 원)

구 분	총 계	수익금 (적립금 포함) * 계속사업	보조금	'25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총 계					
<u>참여자</u> 인건비					
<u>수당(팀장,</u> <u>전담보조인력)</u>					
<u>전문인력(인건비,</u> <u>사회보험료)</u>					
참여자 사회보험료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u>비품구입비</u>					
<u>피복비</u>					
교육/회의/간담회					
문화활동비					
홍보비					
사업단 임차료					
<u>출장비</u>					
<u>노인일자리 담당자</u> <u>제수당</u>					
사업진행비*					

- 수입과 지출 총계는 동일하게 작성
- 자체부담금은 법인 별도 지원금을 의미함

^{* (}시업진행비) 공공요금·세금, 사업단 보험료, 교육참가비,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참여자 유류비 보조, 기타 사업진행비 항목 해당

9. 소요예산 세부내역(보조금)

(단위 : 원)

	구 분		계	산출근거	비고
	총 계			-	
	<u></u>	소 계			
	참여자 인건비			※ 월 25만원, 연 250만원 이내	
	팀장 수당	소 계			
				※ 월 4만원 이내	
	전담보조	소 계			
	인력수당				
	합	계		-	
	<u>전문인력</u>	소 계			
	<u>인건비</u>				
	<u>전문인력</u>	소 계			
	<u>사회보험료</u>				
	참여자 사회보험료	소 계			
사업비	재료비	소 계			
	시설투자비	소 계			
	712171-1				
	장비구입비	소 계			
	0-11-6-1				
	 <u> 비품구입비</u>	소 계			
	<u> 피복비</u>	소 계			
	교육비	소 계			
	\$101U1	소 계			
	회의비				
			1		

문화활동비	소 계		
<u> </u>			
홍보비	소 계		
<u> 동보미</u>			
사업단 임차료	소 계		
시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u>출장비</u>	소 계		
201			
	소 계		
<u>노인일자리</u>		<u> 경력수당 0원 x 0명 = 0원</u>	
<u> 포인물시니</u> <u> 담당자</u>		<u> 가족수당 0원 x 0명 = 0원</u>	
제수당		<u> 연치수당 0원 x 0명 = 0원</u>	
<u> </u>		<u> 사회보험료 부족분 0원</u>	
		<u></u>	
사업진행비	소 계		
VIECON			

10. 월별 사업추진 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상기한 업무 외 발대식, 정기간담회, 사업평가회, 만족도조사 등을 기입

서식 4-3호

▶ 공동체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

공동체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근로)11 <u>5</u> (도급)110		
가	경력 <u>(35점)</u>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지 교육 이수자 해당없음 7년 이상 관련분야 3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5 0 25 20 15		※ 관련분야 자격증, 교육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해당 사업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1년 미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10		<u>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u>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세대구성	독거노인가구	8		①(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마만의 작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나	(<u>10점)</u> (주민등록	노인부부가구(2명)	5		③(장애인) 참여신청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 능력 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등본 기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0		(4)(노부모 및 배우자 외 민법장 가족) 민법 제779조의 가족(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중 65세 이상인 자가 건강보험직장미가인자인 경우 ※ 주민등록기준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노인부부
		<u>기타</u> (가족이 아닌 자와 동거하는 경우	<u>. =)</u> <u>0</u>		가구로 배점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여야 함
	774 710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0원'	20		
다	공적 지원 수급 여부	기조한 <u>소득인정액 '0원 초</u> 미수급	과' 10 0	-	
7	<u>(20점)</u>	60~64세 중 차상위계층 자격 있는 경우			
	활동역량	참여 적극성 (책임감, 협동심, 참여 의욕 등	<u>=</u>) 10		
라	(<u>30</u> A)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무 이해력 등			
	117	신체활동능력	10		
마	신규 참여자(5점)	신규참여자 해당없음	5	-	* '24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바	장애인 채용 가점 <u>(5점)</u>	장애인 해당없음	5 0	-	* 증빙 서류: 장애인 증명서, 복지 카드 사본, <u>국가유공자</u> 사본 등)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사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최대10점)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없음	10 5 0		※ 도급사업단 참여신청자 해당 없음
	폐지수집 노인	폐지수집 노인	<u>5</u>		* '24년 지자체에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명단에
<u></u>	<u>가점(5점)</u>	<u>해당없음</u>	<u>0</u>		포함된 폐지노인 기준, 수행기관에서 자체 발굴한 경우 지자체 보고 후 전수조사 명단에 등록하여 가점 부여

- 주 : 1) 선발점수가 동점인 경우, 신규참여자를 우선 선발
 - 2) 활동역량 중 수행능력과 신체활동능력의 점수가 0점인 경우 사업참여 제한 가능
 - 3) 공동체사업단 중 "도급"계약으로 운영되는 사업단 신청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해당 없음
 - 4)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비율에 따라 10점, 5점 부여하되, 장애인 가점 중복 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만 적용 (최대 10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비율이 확인되는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등) 증명서 제출(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보훈등록증 등 유사서류 인정불가)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선발된 참여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불가

서식 4-4호 > 공동체사업단 근로계약서(예시)

공동체사업단 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 (이하 "참여노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2.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 장소 :
 - ※ 주된 근무 장소 포괄적 작성 가능(예시. ○○시 ○구 ○○작업장)
- 업무내용: 조리 및 배식지원, 환경정리 등
 - ※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 3.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 4. 근로일 및 휴(무)일
- 근로일: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휴무일: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근무일 및 휴무일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휴 일

- 1주 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o요일) 부여 (단,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변경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함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u>일요일 제외</u>)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함
 - ※ 단,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 제외)

○ 휴 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 제외)

워

5. 임금

○ 월(일. 시간)급:

※ 기본급 외 다른 임금항목이 있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임금구성항목, 금액 명시

- ※ 상여금 : 있음 ()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 원, 원
- 지 급 일 : 일 ~ 일까지 임금을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참여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 예금주명 : 계좌번호(금융기관명)
 - ※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일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명시 예. 매월 1일 ~ 말일까지 급여를 익월 5일에 지급

6. 기 타

- 사업주는 참여노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참여하거나, 본인의 이름으로 참여한 뒤 타인을 대리 참여시키는 등,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가하였을 경우 위의 항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와의 합의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조치할 수 있음
- 참여 자격요건 변동으로 참여제외 조건에 해당 시,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이 해지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등 사회보험별 법상 적용 제외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 필수
-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취업규칙 및 사업단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계약체결(변경)일 년 월 일

(사업주) 사업단명: 전화:

주 소: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참여노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서명 또는 인)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4-5호 ▶ 공동체사업단 도급계약서(예시)

공동체사업단 도급계약서(예시)

도급인 000수행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의 ○○○업무 도급계약에 따른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한 권리와 의무 및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 ① "○○○업무"란 "갑"이 판매하고자 하는 ○○○을 "을"이 제작, 납품, 배송하는 등 제반 행위를 말하다.
- ② "도급보수"는 본 계약 또는 별도의 견적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이 도급업무를 완수한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도급업무의 수행)

- ① "을"은 "갑"이 위탁한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을"의 출퇴근이나 업무수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는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의 원활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업무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4. (도급보수 지급)

① "을"은 "갑"의 제품인 ○○○의 제작, 납품, 배송을 "을"에게 위탁하고, 납품 또는 배송된 제품의 도급보수로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납품량(월)	도급보수(월)	기타(월)

- ② 제1항에서 정한 도급보수와 경비는 매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익월 일 "을"의 통장에 입금한다.
- ③ "갑"은 제1항의 도급보수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5. (정부보조금 지원)

① "을"이 매월 시간 이상을 활동할 경우 "갑"은 정부보조금 원을 "을"에게 매월 지원할 수 있다(단, 최소 활동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실제 활동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의 일부 지급 가능).

6.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사항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재하도급할 수 없다.

7. (신의성실 및 기밀유지)

-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호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기밀 또는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서면동의 없이 위임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8. (기타)

- ① "을"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참여하거나, 본인의 이름으로 참여한 뒤 타인을 대리 참여시키는 등,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가하였을 경우 "갑"은 "을"과의 합의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다.
- ② 참여 자격요건 변동으로 참여제외 조건에 해당 시.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이 해지된다.

9. (해석)

본 도급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유효기간)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합의로 별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관할법원)

본 도급계약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에 관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위임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변경)일 년 월 일

(도급인) 사업장명: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

(수급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주 소: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4-6호 ▶ 월별 참여자 출근부(예시)

월별 참여자 출근부(예시)

사업단명 :					참여자 성명:						
월		74 7	확	인	월		74 7	확	인		
일	출근	결근	참여자	담당자	일	출근	결근	참여자	담당자		
근무	출근(시간)	일(/	시간)							
결과	결	근	일		담당자 :						

 [%] 작성요령 : 출근 시 확인란 참여자, 담당자 서명, 지각·조퇴 시에는 근무시간 명시, 결근은 / 표시

[※] 수행기관 및 사업단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단, 일일단위 참여자 및 주 1회 담당자 서명란 필수 삽입)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월 분 임금지급대장(예시)

〈 사업단명 : , 수행기관명: \rangle

uı=	LJ DJ	생년	고용	종사	근무	주휴			금액(원)			온라인	금융	임금 이체	
번호	성명	생년 월일	<u>고용</u> <u>월일</u>	종사 업무	근무 일수 (시간)	주휴 일수 (시간)	기본 급	주휴 수당*	연차 수당	<u>팀장</u> <u>수당</u>	<u>공제</u> 액	입금 일자	<u>금융</u> <u>기관명</u>	<u>임금 이체</u> <u>계좌번호</u>	비고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 주휴<u>일 및 연차수당</u>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삭제 가능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4-8호 > 월별 도급보수 지급대장(예시)

()월 분 도급보수 지급대장(예시)

〈 사업단명 : , 수행기관명: 〉

번호	성 명	근무일수 (시간)	납품량 (또는 배송량)	금 액(원)	온 라 인 입금일자	임금 이체 계좌번호	금융 기관명	비고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4-9호 ▶ 공동체사업단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동체사업단 임금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 사 업 단 명 :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지 급 장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년 월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동체사업단 임금 일금 원정을 예:금융거래 불가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참여자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서식 4-10호 > 공동체사업단 운영규정(예시)

공동체사업단 운영규정(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사업단의 명칭은 '○○○○사업'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참여자로 구성된 회원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소득 및 복지증진과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인 업무로 한다.

- ① ○○카페 운영을 위한 음료 제조 등 업무 수행
- ②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자율적 운영구조 확립
- ③ 사업단의 홍보 및 참여자 관리

제4조(사무실 및 사업장) 사업단의 사무실 및 사업장은 ○○○○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작업장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 제5조(회원) ① 본 사업단의 회원은 기관의 참여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참여자로 선발, 확정되어 근로(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 ② 회원의 자격은 회원개인의 별도의 참여포기 의사가 있기 전까지는 사업단 운영기간 내 유지된다.
- 제6조(조직) 본 사업단은 단장(참여자대표), 팀장(참여자), 회원,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 ① 단장은 본 사업단 회원 중 회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득한 대표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수행기관 담당자, 사업단 팀장 등으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② 본 사업단은 3개 팀으로 구성하며, 1팀당 10명의 회원들로 구성하여 각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다.
- ③ 팀장은 소속 팀의 출근부 관리, 작업환경 관리, 회원 연락 등을 주 업무로 하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사업단의 총회 및 간담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본 사업단의 운영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③ 회원의 관리 및 운영은 수행기관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에 근거한다.
- 제8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단 운영과정에 필요한 총회 및 간담회, 각종 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수행기관 담당자 또는 팀장 등의 업무관련 지휘,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단 총회

- 제9조(총회의 구성)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다.
 - ② 총회는 본 사업단의 모든 회원과 수행기관 담당자로 구성한다.
- 제10조(총회의 운영) ① 총회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 시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 ② 사업단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계획 및 본 규정에 대한 의결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임시회는 회원 1/3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개최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개최 내용 및 장소와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개최)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단의 예산, 정산 및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 2. 사업단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단의 해산 및 잔여 적립금 처분에 관한 사항
- 4. 사업단장의 선출, 해임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6.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단장이나 운영위원회는 수행기관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운영 및 수익금 관리

- 제12조(사업단 운영) ① 사업단의 운영은 1년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상 사업운영기간 동안 지속되다.
 - ② 위탁 지자체의 사업중단 조치 시 사업단은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한다.
- 제13조(근무 형태 및 시간) ① 회원 개인의 전체 활동시간이 주 00일(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위 조항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수행기관 담당자를 통해 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수익금 관리 및 배당) ① 사업단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사업단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한다.
 - ② 수익금은 회원들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지출되며, 사업비는 전체 발생 매출의 최대 00%까지만 지출할 수 있다.
 - ③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기 총회 시 수행기관으로부터 지출내역을 제출받아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적립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 방법 및 규모 등은 회원들의 동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제15조(임금과 수당) ①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회원들의 기본급은 00일(또는 00시간) 활동 시 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기본 활동시간외 추가 활동을 통한 수익의 00%는 회원들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0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

- ④ 회원들의 임금은 업체와 계약된 작업 단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작업단가 조정 시모든 회원들에게 반드시 공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⑤ 팀장에 한해 팀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 4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제16조(적립금)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기금으로 사용한다.

- 1. 사업확충 및 일반회계
- 2. 결손에 대한 보존금
- 3. 회원들의 복지후생기금
- 4. 기타 총회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
- ② 운영위원회는 반기별(분기별 또는 연 1회 등) 사업정산을 실시하여 적립금을 확정하고 별도 계좌를 두어 관리한다.
- 제17조(포상의 실시) 회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우수 회원은 회원들 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인세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및 교육

- 제18조(정기회의 및 간담회) 본 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회의 및 팀장간담회 및 참여자 간담회를 갖는다.
 - ① 필요에 따라 업무회의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팀장간담회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의견수렴 및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 ② 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한다.
- 제19조(교육) 노인 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에 명시된 기본 소양 및 직무 교육 외 본 사업단의 목적 실현 및 능력개발을 위해 추가 심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사업단의 2025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2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전체 총회에서 의결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 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 제3조 사업단 운영규정의 확정을 위하여 총회를 거쳐 의결하고 회원들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 제4조 ○○사업 참여자들의 본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선발 확정 전 반드시 이 규정을 개인들에게 사본을 제공한다.
- ※ 본 예시규정은 운영규정 마련 시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임
-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공동체사업단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예시)

○성 명:

○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OL TI	МППО	확	인
일 자	업무내용	본인	담당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사업단명

서식 4-12호 ▶ 공동체사업단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

공동체사업단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0월 0일 기준)

(본 보고서 양식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양식 활용 가능)

담당자

□ 수입(매	출) 현황				
연번	날짜	수입항목(매출처)		금액	비고
□ 지출(보	조금+매출) 호	현황			
항되	<u></u> 국구분	세부내역	날짜	금액	비고
총	계				
인건비					
	소계				
재료비					
	소계				
시설투자	4				
	소계				
장비구입년	4				
	소계				
운영비					
	소계				

공동체사업단 자산대장

(본 보고서 양식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양식 활용 가능)

	연번 자산명	<u>-</u>	구입정보		ובוק	확인	
연번		일자	금액 (원)	관련 문서번호	관리 사업단	담당자	책임자
1		yy.mm.dd					
2							
3							
4							
5							
6							

서식 4-14호 > 공동체사업단 분기별 정산보고서

)분기 공동체사업단 정산보고서

(본 보고서 양식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양식 활용 가능)

사 업 명		최초 사업년도	년
배정량	명	당해 연도 사업비(보조금)	원
근무형태	※ 격일제, 주 1~5일 자유홀	농제, 매일 파트타임제 등	
주요사업	0		
내용요약	0		

○ 분기 입금액

(단위 : 원)

사업비(보조금)	
매출액	
자체부담금	

[※] 사업비: 해당분기 동안 지급받은 보조금, 매출액: 해당분기 동안 벌어들인 매출총액

○ 분기 지출액

(단위 : 원)

구 분	총 계	사업비 (보조금)	매출액 (적립금 포함)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운영비				

- 수익금 잔액 현황(적립금 포함) : 총 000,000원

위와 같이 OOO 사업단의 O/4분기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1/4분기: 1~3월 실적, 2/4분기: 4~6월 실적, 3/4분기: 7~9월 실적, 4/4분기: 10~12월 실적만 입력

0000년 0월 00일 0000 기관장 (인)

1. 관리계좌내역

(기준:00월 00일, 단위:원)

연번	은행	계좌번호	명의	개설일	용 도	잔액
1				yyyy.mm.dd	보조금/수익금/적립금	
2						
3						

2. 예산정산내역

- ※ 수행기관별 기관 자체 양식 첨부 제출 가능
- ※ 관련 계좌(보조금, 수익금, 적립금) 사본 필수 첨부 제출

〈사업비 정산내역서〉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금액	잔액	예산항목	내 역	지급처
1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매출액(수익금) 정산내역서〉

(단위 : 원)

						(611.6)
연번	지출일자	지출금액	잔액	예산항목	내 역	지급처
1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적립금 정산내역서〉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금액	잔액	예산항목	내 역	지급처
1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 적립금 계좌관리 기관에 한함

3. 자산 구입 현황

연번	자산명	단위	수량	단가(원)	총액(원)	취득 일자	관련 문서번호
1							

4. 자산 처리 결과(중단사업에 한함)

		처리결과(계획)					
연번	자산명	처리유형	매각금액	이전기관 (사업단)	처리일자		
1		매각/이전			yy.mm.dd		

[※] 위 항목 중 자산구입현황이 없을 시 생략

서식 4-15호 > 공동체사업단 사업운영(종결)보고서

공동체사업단 사업운영(종결)보고서

(본 보고서 양식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양식 활용 가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최초 사업년도	년		
배정량	во	사업비(보조금)	원		
근무형태	※ 격일제, 주 1~5일 자유활동제, 매일 파트타임제 등				
주요사업 내용요약	0				

2. 추진경과

월	추진 내용	비고
2월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dd일 ~ dd일, dd일간) - 참여자 선발 완료(dd일, 총 00명)	
 3월	- 사업단 발대식 겸 참여자총회 개최(dd일, 장소)	
4월	- 00업체와 제품(서비스) 공급계약 체결(dd일) - 제품 생산(00개) 및 판매(00개, 000원) - 00작업 00개 진행	
5월		

[※] 내부적인 사업진행 이력, 사업 변경(내용, 예산 등) 이력, 외부기관 점검 및 지원 내역 및 대응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진행 실적

○ 참여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HI크웨이 차에기가	중도	포기자	임금총액
~~~~~~~~~~~~~~~~~~~~~~~~~~~~~~~~~~~~~~	갱인물달	참여기간	기간 여부		(원)
김 00	YY.MM.DD	YY.MM.DD~ YY.MM.DD	해당	질병	0,000,000원

## ○ 수익(매출) 현황

연번	날짜	수익항목(매출처)	금액	비고
		합 계		

% 매출액이 일별로 발생할 경우, 날짜를 월 단위로 작성하고 별도의 매출대장 첨부로 대체 가능

### ○ 자산 구입 현황

		구입정보		
연번	자 산 명	일자 (yy.mm.dd)	금액(원)	관련 문서번호
		(yy.mm.dd)	,	문서번호

### 4. 사업정산

## ○ 관리계좌내역

(기준: 00월00일, 단위: 원)

연번	은행	계좌번호	명의	개설일	용 도	잔액
1				yyyy.mm.dd	보조금/수익금/적립금	

## ○ 예산정산내역

(단위:원)

구 분	총 계	공동체사업단 사업비 (보조금)	수익금 (적립금 포함)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진행비				

- 수익금 잔액 현황(적립금 포함) : 총 000,000원

※ 관련 계좌(보조금, 수익금, 적립금) 사본 필수 첨부

## ○ 수익금(적립금) 정산내역

구 분	적립금 사용 내역	'23년 누적 수익금(적립금)	'24년 누적 수익금(적립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원	원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운영비			

[※] 관련 계좌(적립금)사본 필수 첨부, 적립금이 없을 시 생략

## ○ 자산처리결과(중단사업에 한함)

			처리결과(계	리결과(계획)	
연번	자산명	처리유형	매각금액	이전기관 (사업단)	처리일자
1		매각/이전			yy.mm.dd

[※] 위 항목 중 자산구입현황이 없을 시 생략

# ○ 재고내역(해당 사업단만에 한함)

αш	пон	EF01	A = t	구되기에	처리계	획
연번	품목명	단위	수량	추정가액	처리유형	처리시한
1					판매/환불/불용	yy.mm.dd

# 5. 사업평가

평가 영역		주요 내용			
사업 목표 (배경과 의의)	0				
예상 현안					
사업 성과					
주요 문제 (애로 사항)	※ 문제에 따른 대응(조	※ 문제에 따른 대응(조치) 사례, 중단 시 주요 원인 등 서술			
담당자 총괄 의견					
작성일자	yyyy.mm.dd	작성자 (사업담당자)			
확인일자	yyyy.mm.dd	확인자 (사업책임자)			

서식 4-16호 > 수행기관 보증확약서(예시)

# 수행기관 보증확약서(예시)

보증인(수행기관): 〇〇수행기관(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표자명)

피보증인(사업단): OO사업단(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보증건명: 2025년 OO사업단의 공동체사업단 사업 보증

OO수행기관은 OO사업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공동체사업단 사업을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OO사업단의 사업 운영상 고의·과실로 민·형사상 책임 및 보조금 환수 건 발생 시 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첨부서류: 수행기관 법인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

2025. . .

수행기관 (인)

0000 시·군·구청장 귀하

# 서식 4-17호 ▶ 휴일 대체근로 동의서(예시)

# 휴일 대체근로 동의서(예시)

사업단명 :

성명:

아래와 같이 휴일을 변경하여 년 월 일( 요일) 근로하고, 년 월 일( 요일)을 주휴일 (또는 휴(무)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원래 휴(무)일	원래 근무일	
변경된 휴(무)일	변경된 근무일	

년 월 일

사용자(사업단) (서명 또는 인)

근로자(참여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5-1호 ▶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계획서

사업구분	□신규 □계속						
주요 수요처							
배정사업량/예산	/			원			
계속사업만 기입	최초 사업연도	□ 2020	) 이전	□ 2021	□ 2022	□ 2023	□ 2024
	'24년 취업자수	во					
기 관 명			담당지	ŀ		전화번호	

* 10월 기준으로 작성

# 2025년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계획서

(지자체보조에 한함)

### 1. 사업단명:

### 2. 사업개요:

사업내용	배정량	참여자 특성	활동조건	예상 수요처 현황
합계	50명			
(예시)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10명	예시) 대졸 이상 교직, 공무원, 출신 등 60세 이상	예시) 주간 6시간 시급(월급) 4천원 정규직, 4대보험 등	예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인적 자원부 중등교원시험 등

- 시장조사 현황 (인구분포, 산업분포 등)
  - 예시. 65세 이상 남녀인구 현황, 60세 이상 인구의 학력, 경제력 현황 및 제조업, 인력파견회사 현황 등
- 활용 가능 지역자원 현황
  - 예시. 모법인, 종교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사회단체, 시민단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신고한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사업단은 정보시스템 사업계획서 등록 시 신고번호 전산입력 및 증명서 파일 필수 첨부(변동사항 발생 시 상시 업데이트)

### 3. 세부사업내용

구분	주요업무	세부내용 및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기간
조사 사업	시장조사	수요처 및 참여예정자, 노인인력 활용 가능 영역 등 현황조사				
홍보 사업	모집 및 수요처 발굴	참여자 모집홍보 수요처 개발 홍보 등				
교육	기본교육	기본소양 및 안전사고 예방, 응급대처 교육 등				
사업	실무교육	직무관련 교육				
인력풀	인력풀구축	참여희망자 및 참여자, 교육수료자 등				
구축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수요처 사후관리 방안				
	만족도조사	참여자대상, 수요처대상 등				
기타 사업	간담회	직종별 수요처 및 참여노인 간담회, 지역네트워크구성				
	평가회	사업종료 후 평가 실시				

### 4. 수요처발굴 계획

 $\bigcirc$ 

### 5. 월별 사업추진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상기한 업무 외 정기간담회, 사업평가회, 만족도조사 등을 기입

### 6.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천원)	산출근거	비고
	총계(천원)			_	지원단가:
	교육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문화활동비	소 계			
	출장비	소 계			
	교육참가비	소 계			
사 업 비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소 계		경력수당 0원 x 0명 = 0원 기족수당 0원 x 0명 = 0원 연차수당 0원 x 0명 = 0원 사회보험료 부족분 0원	
	전화요금	소 계			
	비품구입비	소 계			
	상해보험료	소 계			
	사업진행비	소 계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소 계			

### 서식 5-2호 > 취업 지원 신청서

- ※ 법정서식으로 내용, 글꼴크기, 쪽 여백 조정, 칸 추가 등 양식 임의수정 불가
- ※ 별도 안내된 시행규칙 별도 서식 활용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취업 지원 신청서

※ []에는 ㅎ	배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신	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기	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기관(수행기관	+)	처리기간 7	7일	
[신청인 정	보1					
	성명		연락처			
필수 기재	주민등록번호					
사항	주소					
	희망 근무지역	시/도(	)	시/군/구(		)
	희망 직종명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희망 근로형태	[ ] 주5일 [ ] 종일제	[ ] 주3~4일 [ ] 격일제	[ ] 주3일 [ ] 시간제		관계 없음
	비상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세대 구성	Fig. 19 No. 19	[ ] 부부 는 가족과 동거		있는 가족	과 동거
	최종 학력		[ ] 중졸 [ ] 대졸		이상	
선택 기재	건강 상태	[ ] 매우 좋음 [ ] 나쁨	[] 좋 [] 매	음 [ 우 나쁨	] 보통	
사항		직장명	근무 기간		담당 업무	
	경력사항					
	신청 동기	[ ] 경제적 도 [ ] 시간활용	움 []자2 []건3			
	특이사항 (자격사항 등)					

(뒤쪽)

#### [상담자 의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 확인 사항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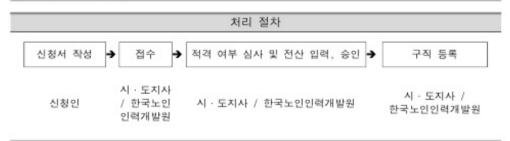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취업 시작일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근무·장기근무 기간 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68 •

#### 서식 5-3호 ▶ 취업 지원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취업 지원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라 함), 제10조, 제22조 및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하는 취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추가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근거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노인일자리법 제10조,	성명, 연락처,	구문, 참여사 근무관리(무석격무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후 5년까지
<u>제22조,</u> 노인일자리법 사행령 제6조	주소, 나이	수급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사업종료 후 10년까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비상연락처, 세대구성형태, 최종학력, 경력사항, 특이사항 (자격사항 및 상담자 의견)	취업 지원 신청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ul> <li>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후 5년까지</li> <li>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사업종료 후 10년까지</li> </ul>

- ※ 위의 개인정보(선택)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취업 지원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선택)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동의 여부
건강상태	취업 지원 신청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ul> <li>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후 5년까지</li> <li>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li> <li>: 사업종료 후 10년까지</li> </ul>	□ 동의 □ 미동의

※ 위의 **민감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취업 지원**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구인신청기업	취업 지원 신청 참여자 매칭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 채용여부 결정 후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취업 지원자** 매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구직신청기관 변경 동의(선택)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구직신청기관	취업 지원 신청 및 맞춤형 알지리 제공		<ul> <li>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후</li> <li>5년까지</li> <li>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li> <li>: 사업종료 후 10년까지</li> </ul>

- ※ 위의 구직신청기관 변경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타 취업알선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구직신청기관 변경에 동의하십니까?
-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 마케팅 정보 수신 (선택)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관련 뉴스, 이벤트 정보, 신규 서비스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후 5년까지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사업종료 후 10년까지

※ 위의 **마케팅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 뉴스, 이벤트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활용을 위해 **문자메시지로 수신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u>「노인일자리법 시행령」제14조</u>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처리항목	처리목적	처리근거
주민등록번호	취업 지원 신청 및 참여신청 제외자 구분, 참여자 근무관리 (부적격·부정수급),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인일자리법 시행령」제14조

「노인일자리법」제10조, 「노인일자리법 시행령」<u>제6조</u>, 제13조,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의5에 따라 **취업** 지원 신청 및 참여 제외자 구분, 참여자 근무관리(부적격부정수급)을 위해 타 공공기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자리참여정보를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 합니다.

	하므고요저버의	참여자 선발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한국고용정보원 		참여자 관리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근로복지공단,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사회보험 자격 정보(사회보험 취득사항,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상실일)

서식 5-4호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구인신청서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구인신청서

### ■ 기업기본정보

소속						
업체명						
사업자번호	(	-	_	)	대표자	
연락처					팩스번호	
담당자(직위)						

위와 같이 귀 기관에 구인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상담내용

상담일자		상담방법		
	사업장주소			
	구인개요	- 직무내용: - 고용형태:상용직,계약직,일용직,시간제		
상담내용		- 업종 : - 복리후생 :		
		- 4대보험 (가입, 미가입) 근무시간: 주00일, 00:00~00:00		
	세부내용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자등록증은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5-5호 기계 지원(취업알선형) 취업 확인서(수요처용)

# 취업 확인서

- 업체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기업 연락처):
- 기업 주소:
- 취업내용

취업자명 (근로자명)	주요직무	근무일수	월급여 (일급, 시간급)	계약기간 (근무시간)

본인은 상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구인수요처로서(구인요청자명)와 (구직자명) 간 발생할 수 있는 채용 전후의 문제(근로조건, 안전사고, 사회보험 관련 문제 등)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관련 직무 투입 시 안전교육 등 사전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5-6호 처업 지원(취업알선형) 확약서(수행기관-구직자간)

## 확 약 서(수행기관-구직자간)

본인은 (수행기관명)의 알선으로 (구인요청자명)에 채용됨에 있어 채용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근로조건, 안전사고, 사회보험 관련 문제 등) 등에 대해 (수행기관명)로부터 청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상기문제로 인해 (수행기관명)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관련 직무투입 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구인요청자명(비사업자)	
구직자명	
업무내용	
근무기간(시간)	
월급여(시간, 주급, 월급)	

년 월 일

구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수행기관명) 귀중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자산대장 서식

	자산명		구입정보		관리 사업단	확인	
연번		일자	금액 (원)	관련 문서번호		담당자	책임자
1		yy.mm.dd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5-8호 처업 지원(취업알선형) 참여자 교육 관리대장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참여자 교육 관리대장 서식

연번	참여자명	생년월일	교육명(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일자	참여자 서명
1		yy.mm.dd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서식 5-9호 처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운영보고서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운영보고서

(지자체보조 수행기관용)

###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2	20 ~ 20 .		
최초 사업연도				
주요수요처				
배정수/ 취업자수				
주요사업 내용요약				
사업예산	집행액		집행률	%

### 2. 추진현황

월	추진 내용	비고
1월		
2월		
3월		
•••		

### 3. 참여자현황

성명	생년월일	구인처	참여기간	임금총액(원)

### 4. 예산 정산 내역

### ○ 총괄현황

예산항목	총계(원)	비고
교육비(참여자)		
홍보비		
회의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교육참가비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전화요금		
비품구입비		
상해보험료		

### ○ 세부내역

연번	지출일자	지출금액(원)	예산항목	내 역	지급처
1					

[※] 관련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첨부

### ○ 자산 구입 현황

		구입정보		
연번	자 산 명	일자 (yy.mm.dd)	금액(원)	관련 문서번호

### 5. 사업평가

평가 영역	주요 내용
사업 목표 (배경과 의의)	0
사업 현안	
사업 성과	
주요 문제 (애로 사항)	※ 문제에 따른 대응(조치) 사례, 중단 시 주요 원인 등 서술
담당자 총괄 의견	

### 6. 취업자 실적 대비 예산집행 초과 여부

※ 초과집행 시만 작성(지지체담당자 및 협의결과/초과금액/사유기재)

작성일자	yyyy.mm.dd	작성자 (사업담당자)	
확인일자	yyyy.mm.dd	확인자 (사업책임자)	

### 서식 6-1호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신청서

(앞쪽)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신청서								
	명칭 등기등록번호							
	대표	 표번호			설립년원일			
신청	소	재지						
기관 •	사업 경험	노인일자리	유( )무( )		종시	사		
단체	시합성임	자활사업	유( )무( )		종시	자		
	기관	주사무실			규모	동산		
	현황	작업장			11 —	부동산		
	ć	성명			주민등	록번호		
대표자	전호	바번호			설립년	년원일 -		
	7	소						
	위탁업무명		예. 노인일	자리지원	기관 운	영 및 지역	사회 일자리 기	<b>배발 등</b>
		위와 같	이 노인일자리지원기	관 운영위	의탁을 신	신청합니다		
			년 월	Ç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또는 인)			
○○ 시·도지사 귀하 (또는 ○○ 시·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 단체는 고유번호증 및 회칙 등					없음			
1	2.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서 2부 3. 대표자의 이력·경력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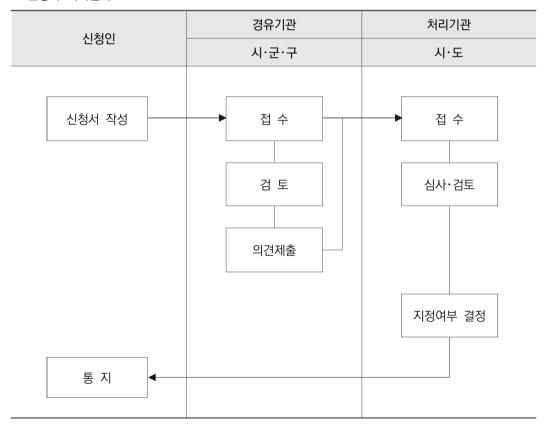
- "신청인의 기관명"란은 신청주체로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
- "종사자"란은 모기관에서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자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
- "기관현황"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운영할 경우 신청기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투입할 지원규모 및 지원액을 작성

#### ※ 신청안내

(뒷쪽)

신 청 자 격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단체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시·도지사에게 최종 접수됩니다.

#### ※ 신청서 처리절차



#### 서식 6-2호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업계획서(지정신청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업계획서

- 1. 현황분석
  - 지역 특성,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등
- 2. 기관개요
- 3. 신청자(법인) 관련사항
  - 고유목적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 운영책임자 및 실무 수행인력의 경력
  -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경험
    - 사업내용·결과와 현황 및 사업의 평가결과
    - 사업에 소요된 예산 및 동원방법과 사업진행과정
  - 기타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관련 실적
- 4. 기관 운영계획
  - 직원채용 및 시설(사무실, 강의실, 작업장 등) 확보계획
  - 신청한 법인(개인)이 운영중인 사업과의 독립성·연계성 등
  - 민간자원 동원계획(신청 법인 등의 기본자산 출연 등)
  - 관장 등 직원의 회계문제 발생시 모법인의 책임능력
  -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지원 연대망 구축계획
- 5. 연도별 사업계획(종합)
  - 연도별(향후 3년 이상) 사업계획서(소요예산 포함)
  - 사업계획의 특성(총괄)
    - 사업배경(입지조건 등), 사업내용, 생산 및 유통(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기대효과
    - 사업예산 재원조달 방안
      - ※ 사업별 세부계획서는 별도제출(붙임3)
  - 사업성과지표 (2개 이상)
    - 지자체 또는 해당 법인의 사업성과목표 및 달성계획
- 6. 세입세출 총괄예산서(사업별 세부계획 예산포함 별지 제출)
- 7. 다른 기관에 의한 지원사업(내용 및 예산)
- 8. 기타
  - ※ 사업계획서 제출시 요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	산출근거(단위 : 원)	구 분	예산(%)	산출근거(단위 : 원)
합 계	(100%)		합 계	(100%)	
보조금수입			인건비		
사업수익			운영비		
법인전입금			사업비		
후원금			기타		
잡수입					

[※] 인건비 : 봉급, 상여금, 제수당 등/ 운영비 : 업무추진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기타 후생경비 등/ 개별 사업수행을 위한 특별재산조성비는 사업비에 계상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운영비에 계상

### ■ 각목별 명세서 (재 신청하는 기관의 경우)

예산과목	예산액 (단위 : 원)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 출 내 역 (단위 : 원)
합 계				

[※] 과목은 예산항목을 관·항·목 등으로 분류하고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시도(시·군·구)에서 결정총괄표를 참조하여 시도(시·군·구)에서 결정

[※] 항목별 예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목별 예산비중을 고려하여 수치 기입

서식 6-3호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조사의견서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현장 조사의견서

연 번	신청기관명 (법인·단체명)	신청지역	시·군·구 의견

#### ※ 작성요령

- 시·군·구 의견은 'II. 시니어클럽 지정'에 제시된 사항을 고려, 현지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되
- 시니어클럽으로 신규 지정될 경우 지정된 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지원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지원계획 여부 적시)

### 서식 6-4호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위탁 지정서

제 호

# 지 정 서 (예시)

명 칭:○○시니어클럽

운영기관 : ○○○○법인

소 재 지:

위탁기간: '00,00,00~ '00,00,00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및 소득 활동 기회제공을 통하여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구현하고자 <u>노인일자리법 제9조, 동법 시행령</u> 제5조에 의거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구청장, 군수) ○○○

1. 변경사항					
번호	날짜	변경내용	기록자	서명(또는 인)	
		(명칭변경 등)			
2. 현장점검 사항					
점검일자	조치내용		기록자	서명(또는 인)	

#### 서식 6-5호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세부사업계획서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세부사업계획서

- ※ 추진예정 또는 추진 중인 사업단관련 계획서 모두 작성 필요
- 1. 총괄개요
- 사업운영현황 : 기관 내 추진 중인 전체 사업내용, 특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규모
  - (노인공익활동사업) 00명 ('OO년 기준 00명)
  - (노인역량활용사업) 00명 ('OO년 기준 00명)
  - (유형추가)
- 기관개요
  - (기관명칭)
  - (인력규모) 정원 0명, 현원 0명 (정규직0명, 계약직 0명)
- 2. 사 업 명 (유형)
- 사업유형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 사업추진규모 :
- 기간, 소요예산·관리인력, 재원조달 방안, 사업수행 체계 등
- 3. 일반현황
- 현황, 문제점, 사업의 목적·필요성, 기대효과 등
- 4. 사업추진 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참여인원 및 평균보수 등)
- 별도의 사업단으로 창업전망 및 수익금 전망
- 다른 사업단에의 파급 효과 및 별도 지원필요 등
- 5. 사업의 특성(지역성, 보편성, 전문성 등)
- 기존 법인(기관)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 지역의 다른 법인·단체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 사업참여 인력에 요구되는 능력(전문성, 건강 등) 및 연령 특성
- 6.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의 지원 요청사항 등

###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수지 예산서(예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비고	구 분	예 산	비고
총 계	(100%)		총 계	(100%)	

#### 1. ○○○ 사업(총계대비 예산 비율:%)

계	(100%)	계	(100%)	
보조금		설비 등 투자비용		
사업수익		급 여		
법인전입금		적립금		
후원금		기 타		
기 타				

### 2. ○○○ 사업 관련 (특이, 기타 사항 등)

[※] 비고란에는 산출내역 및 특이사항을 기입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음

## 서식 6-6호 ▶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u> </u>	보조사업의 소요경	4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	~				
사업계획서			첨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 **시·도 지사** 귀하

서식 6-7호 ▶ 사업성과보고서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예.00시니어클럽) 사업성과보고서

- 1. 사업운영 총괄 개요
- 사업운영현황
  - 해당 연도 추진한 전체 사업내용

〈OO년 추진실적 총괄〉

(기준 : 12월 말 / 단위 : 명, %)

	요약			세부내역				
구분	목표량 (A)	실적 (B)	<b>달성</b> 률 (B/A*100)	사업단수 (단위 : 개)	배정 일자리수	추진실적	누적 참여자수	중도 포기자수
합계								
노인공익활동사업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								
자체사업								

※ 작성 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통계시스템〉공익&역량활용&공동체〉추진실적 현황-추진실적 총괄 참고 (배정일자리 수) 배정받은 사업량

(추진실적) 시스템 상 수행 일자리 수

[노인공익활동사업] 누적참여자수-중도포기자 수 (시스템 통계 자동 반영)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 누적참여자수와 동일 (시스템 통계 자동 반영)

(누적참여자수)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 인원

(중도포기자수) 활동 중 중도포기한 인원

- 기관 개요 ※ 12월 말 기준
  - (기관명칭)
  - (인력규모)
- 2. 사업성과 분석
- 기관 우수성과
- 사업추진 효과와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기관 전체 사업 운영 측면에서 작성
- 대책 및 개선방안 ※ 자체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작성
- 3. ○○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 (세부내역은 시설회계 결산보고서로 갈음)
- 4. 기타 특이사항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서식 6-8호 > 수익금 관리현황 등 보고서식

# ( ) 분기 ( ) 기관 수익금 관리현황

### 1. 사업단별 수익금 관리현황

(단위 : 원)

사업단명	확정 수	:익금	사용 =	적금수익금	
	당분기발생액	누계금액	당분기사용액	사용액누계	(누계)

### 2. 수익금 적립현황

연번	사업단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계좌번호	적립액(원)	비고

### 3. 수익금 사용내역 및 통장사본 첨부



### 수요처 행동강령

#### □ 행동강령 검토

○ 수요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수요처는 참여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수요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도 시켜 서는 안 된다.
  - * 참여자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치 않음에도 청소, 조리 및 가사 등의 활동을 강요하거나 수요처장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행위 강요 등
  - **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수요처와 참여자 간 활동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양자 간 합의 실시
- 수요처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수요처의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수행기관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 신체적 학대(폭행, 구타, 구속 및 협박 등), 정서적 학대(폭언, 무시, 기피, 따돌림 등), 성적 학대(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경제적 학대(활동비 착취 등)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는 경우 회복과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수요처 재배정 및 서비스 제한 등

#### 2.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 수요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활동하는 환경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조정해야 한다.
  - * 안전교육 실시 필수 및 사업 시작 전 상해보험 가입 등

- 수요처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처 간담회 등 실시. 안전장비 구입·지급 등
- 수요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활동 중 재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개입해 병원에 동행해 치료를 받게 하고, 수행기관은 상해보험 수급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 수요처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혹한기·혹서기 등 활동이 힘든 시기에 노인의 건강상 안전을 고려하여 활동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월 <u>15시간</u> 이내 단축운영, 혹서기·혹한기 대비 참여노인 교육 등

#### 3. 사생활 보장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수요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활동 과정에서 얻은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찍지 않는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활동 중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4.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수요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수요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수요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5.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수요처 및 수행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 간담회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요처 및 수행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나 그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요처 및 수행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그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6.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수요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일률적인 헤어스타일 및 옷차림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 활동을 위한 유니폼 착용 제외
- 수요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물건이나 소지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수요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헌금, 공양, 후원금 및 기부금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참여자 활동자세

- 1. 활동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2. 동료들과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서로 배려합니다.
- 3. 활동 시 복장 및 소지품은 활동특성과 상황에 맞도록 준비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 4. 활동시작 전 미리 도착하여 활동 준비를 하고, 활동시간을 준수하며 책임감과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 5. 활동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활동합니다.
- 6. 활동 중 음식물 섭취, 흡연, 음주를 하지 않으며, 지나친 담소와 휴대폰 사용, 과도한 휴식을 자제합니다.
- 7.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원, 해외 출국 등) 수행기관에 즉시 보고합니다.
- 8. 활동과정 중 어떠한 경우라도 활동편의 등을 위하여 사례금 등의 금품을 절대 주고받지 않아야합니다.
- 9. 부정행위(활동일지 허위작성, 대리참여 등)를 하지 않으며, 부정사례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당수행기관에 신고합니다.
- 10. 활동하면서 어린이, 노인 등 지역사회 수요처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참여자 모집 홍보 가이드라인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관련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 제작 시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명 또는 로고 필수 명시

〈활용 예시〉

자체 로고
참여자 모집 포스터
모집기간: 00. 00.~00. 00. 접수처: 문의:

2.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홍보 ai 파일을 적극 활용(권장)



- 3.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ai 파일 활용 시 인쇄물 크기를 제외한 디자인 임의 변경 불가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문구 수정 및 추가는 가능
- 4.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ai 파일 활용 시 인쇄물 파일 전체를 웹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을 가능하나 인쇄물의 폰트 또는 이미지의 일부를 캡처하여 게시 불가
  - * 인쇄물의 폰트 또는 이미지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범위에서 벗어나는 2차 가공에 해당



###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관리직 (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 공무원 및 기업	0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고위임원	0112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 보험 관리자	0121	정부행정 관리자
						0122	경영지원 관리자
						0123	마케팅·광고·홍보 관리자
						0124	금융·보험 관리자
						0131	연구 관리자
						0132	교육 관리자
		01			전문서비스 관리자	0133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리자
				013		0134	보건·의료 관리자
						0135	사회복지 관리자
	70 UD					0136	예술·디자인·방송 관리자
0	경영·사무· 금융·					0137	정보통신 관리자
	보험직					0139	부동산·조사·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 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41	미용·여행·숙박·스포츠 관리자
						0142	음식서비스 관리자
						0143	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51	영업·판매 관리자
						0152	운송 관리자
						0159	기타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자
						0161	건설·채굴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 생산 관리자	0162	전기·가스·수도 관리자
						0163	제조·생산 관리자
						0169	기타 건설·전기 및 제조 관리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0293	통계사무원
						0294	비서
						0295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 보조원
						0299	기타 사무원
						0311	투자·신용 분석가
				001		0312	자산 운용가
					금융·보험 전문가	0313	보험·금융상품 개발자
				031		0314	증권·외환 딜러
						0315	손해사정사
						0319	기타 금융·보험 전문가
			금융·보험직		금융·보험 사무원	0321	은행 사무원
		03				0322	증권 사무원
				032		0323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032		0324	출납창구 사무원
						0325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0329	기타 금융 사무원
						0331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033	금융·보험 영업원	0332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11	인문·사회과학	110	인문·사회과학	1101	인문과학 연구원
		12	연구직	110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11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1	생명과학 연구원
1	연구직 및					1222	생명과학 시험원
ļ	공학 기술직					1223	농림어업 시험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 통신공학 기술자	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시임전	1542	화학공학 시험원
						1551	가스·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2	가스·에너지공학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4	환경공학시험원
						1555	보건위생·환경 검사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시됩년	1562	섬유공학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시험원	1572	식품공학 시험원	
				158		1581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소방·방재· 산업안전· 비파괴 기술자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83	소방공학시험원
						1584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1585	비파괴 검사원
					제도사 및 기타	1591	제도사
				159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99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11	대하 고스 미 가니	2111	대학 교수
	교육·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직 및 군인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12	대학 시간강사
2		21	70XI			2121	중·고등학교 교사
2		21	교육직	212	학교 교사	2122	초등학교 교사
				212	취표 표선	2123	특수교육 교사
						2129	기타 교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213	유치원 교사	2130	유치원 교사
					2141	문리・어학 강사
					2142	컴퓨터 강사
					2143	기술・기능계 강사
			214	문리·기술·	2144	예능 강사
				예능 강사	2145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21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151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152	대학 교육 조교 (연구 조교 포함)
					2153	교사보조 및 보육보조 서비스 종사원
		법률직	221	법률 전문가	2211	판사 및 검사
					2212	변호사
	22				2213	법무사 및 집행관
					2214	변리사
					2219	기타 법률 전문가
			222	법률 사무원	2220	법률 사무원
					2311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13	청소년 지도사
		11-11-11-1			2314	직업상담사
	23	사회복지· 종교직			2315	시민단체 활동가
		022 1	232	보육교사 및 기타	2321	보육교사
			232	사회복지 종사자	2329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233	성직자 및 기타	2331	성직자
			233	종교 종사자	2339	기타 종교 종사원
					2401	경찰관 및 수사관
	24	경찰·소방· 교도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2402	소방관
	24			교도관	2403	교도관 및 소년원학교 교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2501	영관급 이상 장교
		25	군인	250	701	2502	위관급장교
		25		250	군인	2503	부사관
						2509	기타 군인
						3011	전문 의사
				301	의사, 한의사 및	3012	일반 의사
				301	치과의사	3013	한의사
						3014	치과 의사
				302	수의사	3020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30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40	간호사
				305	영양사	3050	영양사
			O 보건·의료직			3061	임상병리사
				306	의료기사·치료사· 재활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	보건·의료직	30				3064	치과위생사
	'_ '					306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9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3071	응급구조사
						3072	위생사
						3073	안경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3074	의무기록사
						3075	간호조무사
						3076	안마사
						3079	기타 보건·의료 종사원
	예술·디자인					4111	작가
4	·방송·	41	예술·디자인· 방송직	411	작가·통번역가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스포츠직					4113	출판물 전문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4201	스포츠 감독 및 코치
						4202	직업 운동선수
			스포츠・		스포츠・	4203	경기 심판 및 경기 기록원
		42	레크리에이션직	420	레크리에이션 종사자	4204	스포츠강사,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4209	기타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 종사원
						5111	이용사
						5112	미용사
						5113	피부 및 체형 관리사
				511	미용 서비스원	5114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5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5119	기타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ELO (4÷11					5122	혼례 종사원
5	미용·여행· 숙박·음식· 경비·청소직					5123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
						5124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5129	기타 개인 생활 서비스원
						5211	여행상품 개발자
				521	여행 서비스원	5212	여행 사무원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52	여행·숙박· 오락 서비스직	522	항공기·선박·열차	5221	항공기 객실승무원
				522	객실승무원	5222	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30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240	오락시설 서비스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5311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5312	한식 조리사
					5313	중식 조리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14	양식 조리사
			551	구당성 및 포디지	5315	일식 조리사
					5316	바텐더
	53	음식 서비스직			5317	음료조리사
					5319	기타 조리사
					5321	패스트푸드 준비원
					5322	홀서빙원
			532	식당 서비스원	5323	주방 보조원
					5324	음식 배달원
					5329	기타 음식 서비스 종사원
		경호·경비직			5411	경호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12	청원경찰
	54				5413	시설·특수 경비원
					5419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542	경비원	5420	경비원 (건물 관리원)
	55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550		5501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55			돌봄 서비스 종사자	5502	육아 도우미
					5611	청소원
					561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5613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301	서비스원	5614	구두 미화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5	세탁원 (다림질원)
		-			5616	가사 도우미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5621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종사자	5622	자동판매기 관리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5623	주차 관리·안내원
						5624	검표원
						5629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10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1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CHOLOL FIL	6123	자동차 영업원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24	제품·광고 영업원
						6125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영업·판매직			6129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61		613	텔레마케터	6130	텔레마케터
	CHOL TIPIL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40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
6	영업·판매· 운전·운송직					6151	상점 판매원
						6152	통신 기기·서비스 판매원
						6153	온라인 판매원
				615	판매 종사자	6154	상품 대여원
						6155	노점 및 이동 판매원
						6156	방문 판매원
						6157	주유원 (가스충전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61	매장 계산원 및 요금 정산원
					메표면	6162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6171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017	단순 종사자	6179	기타 판매 단순 종사원

	пна		조브크		, H2		비 <u>브</u> 로 되어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011	세분류 직업명
						6211	항공기 조종사
					항공기·선박·철도	6212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621	조종사 및 관제사	6213	철도・전동차 기관사
						6214	관제사
						6219	기타 철도운송 종사원
						6221	택시 운전원
				622	자동차 운전원	6222	버스 운전원
				022	767 222	6223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6229	기타 자동차 운전원
		62	운전·운송직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 호이스트·지게차)	623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1	택배원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6242	우편물 집배원
				624		6243	선박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선박객실 승무원 제외)
						6244	하역·적재 종사원
						6249	기타 배달원
						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7012	경량철골공
						7013	철근공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	건설·채굴직	70	건설·채굴직			7016	건축 목공
•	"_ '					7017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7019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7021	미장공
						7022	방수공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026	건축 도장공
						7027	새시 조립·설치원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7031	건설 배관공
				703	배관공	7032	공업 배관공
						7039	기타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40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기타 건설 기능원	7051	광원, 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705	(채굴포함)	7052	철로설치・보수원
						7059	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7060	건설·채굴 단순 종사원
						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811		8113	물품이동장비 설치·정비원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8114	냉동·냉장·공조기 설치·정비원
					(운송장비 제외)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8	설치・정비・	81	기계 설치·정비·			8116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J	생산직		생산직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8121	항공기 정비원
						8122	선박 정비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23	철도기관차·전동차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원
						8129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010	금형원 및 공작기계	8131	금형원
			813	조작원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40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 산업용 로봇 조작원	8150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040	기계 조립원	8161	일반기계 조립원
			816	(운송장비 제외)	8162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8171	자동차 조립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73	운송장비 조립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8211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822		8221	판금원
				판금원 및 제관원	8222	판금기조작원
				민급권 및 제관권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조작원
					8231	단조원
		금속·재료	000	단조원 및 주조원	8232	단조기조작원
		설치·정비· 생산직	823		8233	주조원
	82	(판금・단조・			8234	주조기조작원
		주조·용접· 도장 등)	004	OHO	8241	용접원
		TO 0)	824	용접원	8242	용접기조작원
			ODE	도장원 및 도금원	8251	도장원(도장기조작원)
			825	노성현 및 노급현	8252	도금·금속분무기 조작원
		83			8261	유리·유리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2	점토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3	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제6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8264	광석·석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9	기타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11	산업 전기공
			831	전기공	8312	내선 전기공
					8313	외선 전기공
					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전기・전자			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	설치·정비· 생산직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8351	전기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52	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360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841	정보통신기기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0.4	정보통신		설치·수리원	8419	기타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	설치·정비직			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8422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설치·수리원	8423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화학・환경			8511	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85	설치·정비·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12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생산직			8519	기타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8722	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8723	식품·담배 등급원
						8729	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8731	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8732	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873	식품 가공 기계	8733	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조작원	8734	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8735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8739	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인쇄기계·사진현상	8811	인쇄기계 조작원
			인쇄·목재·공예	881	기 조작원	8812	사진 인화·현상기 조작원 (사진수정 포함)
				882		8821	목재 가공기계 조작원
					목재·펄프·종이	8822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생산기계 조작원	8823	종이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829	기타 목재·종이 기계 조작원
					-1	8831	가구 제조·수리원
		88	및 기타 설치·정비·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32	가구 조립원
			생산직			8833	목제품 제조원
				884	공예원 및	8841	공예원
				004	귀금속세공원	8842	귀금속·보석 세공원
						8851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
						8852	간판 제작·설치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853	유리기능, 복사, 수제 제본 등 기타 기능 종사원
						8859	주입·포장·상표부착기 및 기타 기계 조작원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8900	제조 단순 종사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9011	곡식작물 재배원
						9012	채소·특용작물 재배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13	과수작물 재배원
						9014	원예작물 재배원
						9015	조경원
						9021	낙농 종사원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22	가축 사육 종사원
9						9029	기타 사육 종사원
				903	이어 조니지	9031	조림·산림경영인 및 벌목원
					03 임업 종사자	9039	임산물 채취 및 기타 임업 종사원
				904	이어 조니지	9041	양식원
				904	어업 종사자	9042	어부 및 해녀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9050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10항목		35항목		136항목		450항목